#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2020, 1

송윤아·한성원



## 머리말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산업지형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관리 기법의 일환으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보험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2014년 기준 약 47조 원으로, 이 중 약 18조원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중간재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총 보험수요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8.4%로, 보험수요의 주체로서 산업의 비중이 2000년(24.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보험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기업성보험에 대한 정의조항과 통계집적 및 공시에 대한 근거조항은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야 「보험업법감독규정」에 신설되었다.

동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고, 비상장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파악한다. 더불어, 우리나라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과 보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분석한다.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과 동기를 이해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보험에 대한 정책과 경영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0년 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안 철 경

# "목차-

#### 요약 / 1

- I. 서론 / 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 6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9
- Ⅱ.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 11
  - 1. 기업보험 상품 현황 / 11
  - 2.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 20
  - 3. 산업별 보험수요 / 32
  - 4. 기업규모별 보험수요 / 50
  - 5. 소결 / 60
- Ⅲ.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 62
  - 1.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이론과 분석의 필요성 / 62
  - 2. 분석방법 / 71
  - 3. 추정결과 / 81
  - 4. 소결 / 89
- IV.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91
  - 1. 설문조사 개요 / 92
  - 2. 설문조사 결과 / 97
  - 3. 소결 / 121
- V. 결론 / 129
- | 참고문헌 | / 132
- | 부록 | / 136

# ■표 차례-

- 〈표 I-1〉 산업연관표로 살펴본 보험수요 / 5
- 〈표 Ⅱ-1〉 특종보험의 종류 / 15
- 〈표 Ⅱ-2〉 우리나라 공제 현황 / 16
- 〈표 Ⅱ-3〉 주무부처별 공제사업 현황 / 17
- 〈표 Ⅱ-4〉「기업경영분석」통계작성 대상기업 / 21
- 〈표 II-5〉 우리나라 활동기업 현황 / 21
- 〈표 Ⅱ-6〉 산업연관표 사용표 예시 / 23
- 〈표 Ⅱ-7〉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분석자료 / 25
- 〈표 Ⅱ-8〉 기업 관련 보험의 수입보험료 / 26
- 〈표 Ⅱ-9〉 기업의 총 보험수요: 기업경영분석 / 28
- 〈표 Ⅱ-10〉 기업의 총 보험수요: 사용표 / 30
- 〈표 Ⅱ-11〉 기업의 총 보험수요: 투입산출표 / 31
- 〈표 Ⅱ-12〉 산업구조 추이: 총 산출액 기준 / 33
- 〈표 Ⅱ-13〉 산업별 매출액 / 34
- 〈표 II-14〉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 35
- 〈표 Ⅱ-15〉 산업별 보험료 / 36
- 〈표 II-16〉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 37
- (표 II-17)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38
- 〈표 II-18〉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 40
- 〈표 Ⅱ-19〉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 42
- 〈표 II-20〉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3
- 〈표 Ⅱ-21〉 제조업의 생산물중량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5
- 〈표 II-22〉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7
- 〈표 II-23〉 제조업의 산업형태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8
- 〈표 Ⅱ-24〉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9
- 〈표 Ⅱ-25〉 기업규모별 보험료 / 50
- 〈표 Ⅱ-26〉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51
- 〈표 Ⅱ-27〉 대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 52

# ■표 차례 –

- 〈표 Ⅱ-28〉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 53
- 〈표 Ⅱ-29〉 대기업의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 55
- 〈표 Ⅱ-30〉 중소기업의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 56
- 〈표 Ⅱ-31〉 대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57
- 〈표 Ⅱ-32〉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59
- 〈표 Ⅲ-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 / 70
- 〈표 Ⅲ-2〉 변수 구성 및 정의 / 76
- 〈표 Ⅲ-3〉 분석자료의 기술통계량 / 77
- 〈표 Ⅲ-4〉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 84
- 〈표 Ⅲ-5〉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재무부실 확률 / 85
- 〈표 Ⅲ-6〉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산업별(1) / 87
- 〈표 Ⅲ-7〉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산업별(2) / 88
- 〈표 IV-1〉 10인 이상 기업 실사 표본집단 / 93
- 〈표 IV-2〉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보험·공제 이용에 대한 조사 세부내용 / 95
- 〈표 IV-3〉 실태조사 응답기업의 주요 기초통계량 / 97
- 〈표 IV-4〉 최고경영진의 인식 및 태도 / 99
- 〈표 IV-5〉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 99
- 〈표 IV-6〉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 101
- 〈표 IV-7〉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 101
- 〈표 IV-8〉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103
- 〈표 IV-9〉 향후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 / 103
- 〈표 IV-10〉 설문조사 대상 리스크유형 / 105
- 〈표 IV-11〉 리스크유형별 발생 가능성 / 107
- 〈표 IV-12〉 리스크유형별 영향도 / 109
- 〈표 IV-13〉 리스크유형별 고려수준 / 111
- 〈표 IV-14〉 리스크유형별 관리 기법 / 114
- 〈표 IV-15〉 리스크유형 및 수준별 보험·공제 이용 / 116
- 〈표 Ⅳ-16〉 리스크유형별 보험·공제의 적합성 / 116

# ■표 차례 ----

〈표 Ⅳ-17〉리스크유형·기업규모별 보험·공제 이용 / 118

〈표 Ⅳ-18〉 리스크유형·업력별 보험·공제 이용 / 118

〈표 Ⅳ-19〉리스크관리 인식·태도·경험별 보험·공제 이용 / 120

〈표 IV-20〉 세계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 126

〈표 IV-21〉 재산종합보험 실적 / 127

# ■그림 차례 –

- 〈그림 Ⅱ-1〉 기업의 총 보험수요: 기업경영분석 / 29
- 〈그림 Ⅱ-2〉 기업의 총 보험수요: 투입산출표 / 31
- 〈그림 Ⅱ-3〉 산업구조 추이: 총 산출액 기준 / 33
- 〈그림 Ⅱ-4〉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 35
- 〈그림 Ⅱ-5〉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 37
- 〈그림 Ⅱ-6〉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39
- 〈그림 Ⅱ-7〉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4
- 〈그림 Ⅱ-8〉 제조업의 산업특성별 보험료와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6
- 〈그림 Ⅱ-9〉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보험료와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49
- 〈그림 Ⅱ-10〉 기업규모별 보험료와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51
- 〈그림 II-11〉 기업규모별·산업별 매출액 구성비(2017년) / 54
- 〈그림 II-12〉 기업규모별·산업별 보험료 구성비(2017년) / 56
- 〈그림 Ⅱ-13〉 대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58
- 〈그림 Ⅱ-14〉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 60
- 〈그림 IV-1〉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 99
- 〈그림 Ⅳ-2〉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 101
- 〈그림 IV-3〉 향후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 / 104
- 〈그림 IV-4〉 리스크유형별 발생 가능성 / 107
- 〈그림 IV-5〉 리스크유형별 영향도 / 110
- 〈그림 IV-6〉 리스크유형별 고려수준 / 112
- 〈그림 IV-7〉 리스크유형별 보험·공제의 적합성 / 117
- 〈그림 IV-8〉 리스크관리 인식·태도·경험별 보험·공제 이용(1) / 120
- 〈그림 IV-9〉 리스크관리 인식·태도·경험별 보험·공제 이용(2) / 121
- 〈그림 IV-10〉 부보가능성의 범위 확대 / 128

# A Study on the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various types of risks a firm is exposed to and the corporate expenditures and incentives for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to hedge those risks. Specifically, in Chapter 2, We examine the corporate expenditures on insurance products in Korea by industry and by firm size using Use Tables, Input-Output Tables and Financial Statement Analyses, The aggregate corporate spending on insurance had increased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7.7% since 2011 and reached to 14.23 trillion won in 2017 which accounts for 0.82% of the GDP. The average insurance premium-to-sales ratio also increased from 0.28% in 2011 to 0.36% in 2017. According to the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while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s for 47.5% of the entire corporate sales and 34.2% of the insurance premium, the premium-to-sales ratio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only 0.26%.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6, the insurance premium paid by the small and the medium-sized firms grew at a much faster rate than that of the large and established firms (10.7% vs 2.3% per year). As a result, the small and the medium-sized firms occupy 70% of the total insurance spending in 2017. Similarly, the average premium-to-sales ratio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s 0.6%, which is three times greater than 0.19% of the large firms.

In Chapter 3, we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incentives for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by firms. Based on that,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expected bankruptcy costs, a convex tax function, investment incentives, and macroeconomic factors on corporate spending on insurance, using the data set consisting of 168,989 firm-year observations during the period 1999~2017. We find that the firm level factors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such as GDP

growth rate and the won-dollar variability, have econom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mand for insurance.

Chapter 4 presents the results of the risk perceptions and management survey conducted on 824 firms in 2019 in Q2. The survey highlights the shift of risk toward non-physical damage events beyond the physical perils like fire and natural catastrophes, and the growing inter-connectivity of risk faced by firms. Supply chain failure, which is ranked as fifth risk, is increasingly being caused by non-traditional risk exposures such as geopolitical uncertainties and cyber issues. Business interruption, which is ranked sixth, is influenced by several of the top five risks including supply chain failure and physical perils. Most perils related to supply chain failure and business interruption today are not covered by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s. As the gap between economic and insured losses continues to widen, the demand for insurance products changes. A range of new risks is emerging, beyond the perils of fire and natural catastrophes, and which require rethinking of current insurance coverage.

본 연구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기업이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조 2.324억 원으로 GDP의 0.82%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다.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불과하다. 마지막으로,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높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증가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도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보험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의 영역인 재물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

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였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재산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의 재물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보험 공급 현황 및 문제점을파악하고 부보가능범위 및 보상기법을 탐색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업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에 직면하게된다. 예기치 못한 손실의 발생은 조직활동의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계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기업은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에 내재된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소득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자산을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3%, 5년 생존율이 2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통계청 2018).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산업지형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활동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가중시킴으로써, 다양한 리스크의 원천이 되고 리스크의 특성 및 중요성 변화를 초래한다.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 전 지구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자연 재해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가 인력과 물자 이동에 민감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심각한 리스크요인으로 부상하였다. 기업의 경영자원이 과거에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등에 기반을 둔 제조업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정보통신이나컴퓨터공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시기에는 유형의 경영자원에서 발생하는 재물손해 등과 같은 리스크가 중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이버리스크 등이 기업경영의 주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1) Aon(2019)이 60개국 33개 업종의 1,843개 기업을 대상으

<sup>1)</sup>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18~2019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과 대규모 데이터 사기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5대 리스크 3~4위에 각각 선정되었음. 조사대상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업체당 연

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2007년에는 재물손해와 같은 전통적인 순수리스크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019년의 경우 경기침체, 평판리스크, 시장요소 변화, 기업휴지, 사이버리스크, 경쟁리스크 등이관리해야 할 주요 리스크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산업지형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S&P, Fitch사 등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는 ERM의 도입과 구축을 기업가치와 신용평가기준의 한 요소로 공표하였다.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관리 기법으로서 보험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2)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보험(재보험 포함)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2014년 기준 약 47조 원으로, 이 중 약 18조 원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중간재로 사용되었으며, 약 28조 원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비이다(〈표 I-1〉 참조). 우리나라 총 보험수요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8.4%로, 보험수요의주체로서 산업의 비중이 2000년(24.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보다는 비생명보험에 대한 산업의 중간재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2009~2014년 기간동안 비생명보험에 대한 산업의 중간재 수요는 연평균 약 13% 증가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리스크관리 기법의 일환으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기업성보험에 대한 정의조항3과 통계 집적 및 공시에 대한 근거조항4은 1962년 「보험업법」이

간 117만 파운드(약 17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

<sup>2)</sup> 본 보고서에서 보험은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국민소득계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손해 보험뿐만 아니라 공제와 공보험(사회보험 제외)을 포괄함

<sup>3) 「</sup>보험업법감독규정」제1-2조 (정의) 11. "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19.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2018년 11월 8일 신설). 20. "기업성보험"이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2018년 11월 8일 신설)

<sup>4) 「</sup>보험업법감독규정」제9-5조의4 (기업성보험 리스크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법 제176조 제5항 및 제7-79의3 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보험 통계 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제정된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야 「보험업법감독규정」에 신설되었다.

〈표 Ⅰ-1〉 산업연관표로 살펴본 보험수요

(단위: 백억 원, %)

구분		총수요		산업의 중간재수요		
T <del>正</del>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계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계
2009년	1,866	1,412	3,278	8	971	979
2010년	2,145	1,615	3,760	9	1,364	1,373
2011년	2,259	1,866	4,125	9	1,554	1,563
2012년	2,441	2,175	4,616	10	1,826	1,836
2013년	2,412	2,148	4,560	4	1,793	1,798
2014년	2,428	2,207	4,635	7	1,802	1,809
CAGR	5.4	9.3	7.2	-4.3	13.2	13.1

주: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연평균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 각 연도

국민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가계보험과 달리, 기업보험은 비교적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 간 거래로, 기업보험의 국가경제에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정책당국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관리 및 감독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손해보험산업 내에서도 기업보험이차지하는 비율이 수입보험료 기준 약 15%에 불과하여 기업보험 운영 및 관리를 위한자원의 배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험업법」의 적용을받는 손해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및 준거법률이 상이한 수많은 공제조합이 기업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구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없이는, 기업보험에 대한 정책 및 경영전략수립에 한계가 있다.

공시할 수 있다.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 7-79조의3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보험리스크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8년 11월 8일 본조 신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기업경영분석통계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구입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과 보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과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실증분석,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및 보험이용에 대한 실태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 가.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기업의 총 보험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구입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에서는 2018 년 11월에 기업성보험에 대한 정의조항과 통계 집적 및 공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보험업법감독규정」에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손해보험 내에서 기업보험의 수입보험료를 명확히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또한 기업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의 본질을 공유하는 공제와 공보험에 일부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보험수요는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공제와 공보험을 포함하여 파악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보험 측면에서 기업의 보험수요를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나.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이론연구는 많지만,5) 개별 기업의 보험계약자료에 접근하

<sup>5)</sup>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연구는 Ⅲ장 1절에서 검토함

기 어려워 실증연구는 제한적이다. Hoyt and Khang(2000)은 1989년 기준 18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부채비율,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 소유규조, 기업규 모 등 기업 특성변수가 기업의 재물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분석을 통해 검 증하였다. Regan and Hur(2007)는 1990~2001년 기간 동안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401개(기업-연도 관측치 총 4.812개)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특성변수의 영향을 검증하는 횡단면분석을 수행하였다. 허연·허성수(2003)는 Regan and Hur(2007)와 마 찬가지로 비금융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 워가에 포함된 보험료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Michael-Kerjan et al.(2015)은 2007년 미국에 본사를 두 141개 기업의 테러보험과 재물보험 계약자료 및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테러보험과 재물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기업 특성변수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목한 반면, 기업이 직면한 산업의 특성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6 Liu and Jung(2011)과 송윤아(2019)는 기업의 전략적 보험수요 를 규명하는 차워에서, 산업경쟁도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Liu and Jung(2011)은 산업경쟁도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보험자료를 얻을 수 없어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자료를 이용하여, 원 수보험회사의 재보험수요를 검증하였다. 송윤아(2019)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이하 'KSIC'라 함)의 제조업부문 세세분류 439개 산업에 속하는 10.908개 기업의 2007~2015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경쟁도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추가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기업의 재무자료를

<sup>6)</sup>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특정 산업의 성장이 동 산업의 기업보험 원수보험료의 증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연구가 있음. 이현복 외 2인(2009)은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은 행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상업 손해보험산업 내 기업성보험 전체 원수보험료 및 지급보험 금과 산업별 성장률 및 어음부도율 간의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분석과 분산분석(VAR) 을 실시하였고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있어서 기업보험 성장과 개별산업의 성장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음. 이와 유사한 연구로, 허연·송재두(2014)는 1982년부터 2012 년까지 농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수도·가스업, 서비스업 등 개별 산업의 매출액 성장률과 화재보험, 해상보험,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각 기업보험종목의 성장률 간의 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이용하여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세율의 누진성,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던 선행연구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분석대상을 비상장기업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윤아(201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산업경쟁도나 기업 특성변수들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코스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이미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규모, 경영성과,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로, 자본 및 부채조달능력이나 리스크관리를 비롯한 재무전략이 비상장기업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전체 기업 보험료의약 70%를 차지하며 이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다. 기이를 감안하면, 코스피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Michel-Kerjan et al.(2015)이 분석모형에서 산업효과를 통제하고 테러보험과 재물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검증한 것을 제외하면, 기업의 보험수요를 산업별로 분석하거나 산업효과를 통제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수준이나 리스크유형은 산업별로 이질적이다.8)

셋째, 세율구조 누진성의 보험수요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세율구조의 볼록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보험료의 손비처리에 의한 절세가능성이 기업의 보험수요를 야기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Regan and Hur 2007; 송윤아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율구조의 누진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세율구조 누진성과 보험수요의 관계를 검증한다.

넷째, 거시경제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거시경제환경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형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관련 변수와 기업의 보험수요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가 크다.

<sup>7)</sup> 상세는 본 보고서의 Ⅱ장에서 논의함

<sup>8)</sup> 상세는 본 보고서의 Ⅱ장에서 논의함

#### 다.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관리와 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는 드물다. 이경룡(1995)은 1994년도 우리나라 건설기업 57개를 대상으로 우편, 팩스, 방문으로 방법을 통하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건설업의 핵심적 리스크분야, 산업재해 리스크관리, 부실공사와 리스크관리, 관련법 체계에 대한 견해, 리스크관리 실무관리 등에 조사하였다. 이경룡·김사용(2007)은 87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리스크관리 대상리스크에 대한 관리수준, 리스크관리 업무추진 상황,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그리고 리스크행정의 5가지 범주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의 설문조사가 실시된 2007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수준이나 유형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선행연구의 경우 건설기업과 제조업 등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한 리스크의 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리스크관리 방법은 기업의 생산물 및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보험수요를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년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IV 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고려수준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보험에 대한 인식·태도·경험 등을 조사한다. V장에서는 기업보 험에 대한 정책 및 경영전략 측면의 제언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보험은 운영주체 및 근거법률에 상관없이 기업이 계약의 당사자인 모든 보험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조합 또는 민 간단체가 운영하는 공제,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의 감독 하에 민간기구에 대행하여 운영하는 공보험을 포괄한다.

# Ⅱ.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본 장에서는 기업보험상품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및 동향을 살펴본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한 리스크의 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는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3절과 4절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를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본다.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보험구입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즉 보험회사 관점에서는 수입보험료가 통상 기업의 보험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또는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와 함께, 국민소득계정에서 사용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산출의 개념을 보험수요의 또 다른 지표로 사용한다.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료로 의제하여 이를 보험서비스의 총산출로 간주하고, 국민경제 내 각 산업은 보험업에서 산출한 보험서비스를 중간 재로 수요한다.

# 1. 기업보험 상품 현황

보험은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기업은 경영활동에 잠재하는 순수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가한다. 최근에는 기업의 손비처리, 혹은 임원의 퇴직금 재 원마련과 가지급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생명보험의 정기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활용 되기도 하지만,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의 비생명보험이 기업보험의 주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손해보험상품은 리스크의 종류만큼 다양 하다. 9) 전통적으로 기업보험은 재산손실리스크, 인적 손실리스크, 간접손실리스크 배 상책임리스크 등으로 구분되는 순수리스크를 보장한다. 간접손실이란 재산손실에서 파생되는 제2차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창고의 화재 손실 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생산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정비용은 계속 투입되어야 하며 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비용과 기업의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순소득의 감소를 가접손실이 라고 하며,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는 기업휴지보험이 있다.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결핲으로 인하여 또는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 를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 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기업보험은 운영주체 및 준거법률에 상관없이 기업이 계약의 당사자인 모든 보험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조합 또 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제,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 의 감독하에 민간기구에 대행하여 운영하는 공보험을 포괄한다. 이하에서는 운영주체 를 기준으로 기업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상품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 가. 손해보험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은 다 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보험업법」 제4조 1항에서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을 크게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 보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sup>9)</sup>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보험금은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내 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됨. 만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보험대상자를 CEO 및 중요 임직원으로 가입할 시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처리가 가능함. 또한 CEO 및 중요 임직원의 유고 시 올 수 있는 법인의 경영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음

제1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 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계약을 포함시키고 있다.10)

화재보험은 주택, 공장,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 등의 화 재를 보장한다. 화재보험은 가계성과 기업성으로 구분되며,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이 수입보험료 기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7 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주택이 603억 원, 공장이 1,538억 원, 주택 및 공장 제외 일반건 물이 1.112억 원으로, 주로 개인 및 가계가 계약자인 주택이 화재보험의 18.7%를 차지 하다.

해상보험은 적하, 선박, 해양종합, 해양책임, 운송, 항공, 우주 등으로 구분된다. 적 하보험과 선박보험은 각각 화물의 해상운송 리스크와 선박에 대한 손해를 보장한다. 해양종합보험은 해양건설리스크 등 해상활동 중 리스크를, 해양책임보험은 해양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해상에서의 배상책임을 보장(선박, 해양종합 제외)한다. 운송보험은 육상 및 내륙운송화물의 리스크를, 항공보험은 항공기 관련 손해보장(재물)과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우주보험은 인공위성 등의 성공적 발사, 임 무수행 등에 관련된 리스크보장과 인공위성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다.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전체 원수보험료 중에서 업무 용과 영업용이 차지하는 비윸은 약 31%에 이른다. 2017년 자동차보험 워수보험료는 16조 8.573억 원이며, 이 중 5조 1.861억 원이 영업용과 업무용이다.

보증보험은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신용보증, 선급금이행보증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기업성이다. 신원보증은 피용인이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은 손해 를 보장한다. 채무이행보증(신용보증)은 법률·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 게 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채권자 자신)가 가입하며, 선급금이행보증은 선박건조 및 해양설비 건설 관련 선급금 환급의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 자가 가입한다.

특종보험은 산업화 이후 새롭게 등장하게 된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고자 개발된

<sup>10)</sup>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5-13조 관련〈부표 1〉

보험을 총괄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론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보험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이다. 특종보험은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책임보험, 상해·질병 보험, 종합보험, 권리보험, 그 밖에 도난·유리·동물·원자력·비용보험 등을 포함한다. 기술보험은 건설·조립공사 중 공사조립목적물에 생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기계에 대한 손해보장, 그리고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비용 등을 보장한다.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은 국내외근로자, 선원, 직업훈련생 등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해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관련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 등) 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고,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 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책임보험은 일반배상 책임, 생산물책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되다. 일반배상책임은 개인배상, 영업 배상, 선주배상, 유도선사업자배상, 도로운송사업자배상, 가스사고배상, 체육시설배 상, 지방자치단체배상 등이 있다. 생산물책임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 물이나 작업결과에 기인한 배상책임손해배상,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 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회수비용보장, 생산물자체의 하자나 결 함을 보상하는 생산물보증으로 구성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이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 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 단체, 여행자(해외장기체류자)로 구분된다. 2017년 기준 수 입보험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상해가 3.690억 원(21.8%), 단체상해가 1조 1.427억 워(67.6%), 여행자상해가 1,784억 워(10.6%)이다. 종합보험은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종합보험 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리스크 중 2개 이상의 리스크를 결합한 손해 를 보상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을 말한다.

〈표 II-1〉 특종보험의 종류

구분		내용
기술	건설, 조립, 기계, 전자기기, 기타	건설공사 중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 조립공사 중 조립목적 물에 생긴 손해, 기계에 대한 손해,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비용 등을 보장
근로자 재해보상	국내, 해외, 선원,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
책임	일반배상, 생산물, 전문직업인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상해	상해, 여행, 기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리스크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질병	-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등의 리스크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종합	가계성, 기업성	개인이나 기업의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권리	-	동산/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기타	도난, 유리, <del>동물</del> , 원자력, 비용, 기타	재물에 대한 도난손해, 유리에 대한 파손손해, 동물에 대한 손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자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5-13조 관련 〈부표 1〉

#### 나. 공제

공제는 운영주체, 준거법률, 가입대상 등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출금을 부담하고 경제적 재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는 집단적 리스크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본질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를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로 한정하여 공제나 협동조합보험 공제 등을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제사업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관 행정부처의 개별 법령에 따라 영위되는 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사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기관은 2001년 말 32개에서 2014년 기준으로 약 92개이다(김경환·박정희 2014).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재물공제나 배

상책임공제를 중심으로 한 공제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산업보증제 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제조직이 다수 설립되었 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공제종목도 일반손해공제 및 단체상해공제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2〉 우리나라 공제 현황

2	구분	공제상품	공제조직
	일반 공제	생명·손해, 제3공제(3)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u> </u>		보증, 배상책임 (30)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배상책임공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의료사고배상책임공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콘텐츠공제조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LPG 산업협회
8 공 제	조합 공제	손해공제 (보증, 배상책임 포함)(27)	자본재공제조합,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조선공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설감리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사)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경비협회, 레저안전공제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문화재수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공제사업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버스공제조합, 산림재해공제, 대한대리운전공제조합, 한국양묘협회
		손해공제, 제3공제 (13)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 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자원봉사 공제회, 학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집안전공제 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재)스포츠안전재단, 외식업공제회

## 〈표 Ⅱ-2〉계속

=	구분	공제상품	공제조직
보 험	조합 공제	생명공제, 제3공제(1)	한국교직원공제회
형 공 제	정책성 공제	퇴직금, 복지급여 (6)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 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원도사회복 지인공제회
-	도부조형 공제	사망·퇴직 급여, 복지급여 (12)	〈특별법〉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민법〉한국관세사회, 담배인삼공제회, 세우회, 철도공제조합, 대한 의사복지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언론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주: 2013년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설립됨 자료: 김경환·박정희(2014)

#### 〈표 Ⅱ-3〉 주무부처별 공제사업 현황

주무부서	공제사업	연도	공제종류
강원도	강원도사회복지인공제	2007	연금공제, 복지공제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	2010	연금공제(적립형공제), 복지공제
	직접판매공제	2002	손해공제(소비자피해보상)
고적이	특수판매공제	2003	손해공제(소비자피해보상)
공정위	상조보증공제	2010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상조공제	2010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학원안전공제회		2006	손해공제(배상책임), 제3공제(상해)
교과부	학교안전공제	2009	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 배상책임공제
	학교교육안전공제	2012	배상책임공제, 여행자공제, 스키공제
	골재협회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그ㄷㅂ	건설감리공제	2009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제3공제(재해상해보상)
국토부	건축사공제	2011	손해공제(보증, 배상책임)
	전국렌터카공제	2013	자동차보험
고용노동부	전국고용서비스공제	2007	손해공제(보증)
	의사복지공제	2005	영유아: 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 종사자: 사망, 장해, 상해
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	2009	영유아: 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 종사자: 사망, 장해, 상해
	한국사회복지공제	2012	손해공제(배상책임), 제3공제(상해)

〈표 Ⅱ-3〉계속

주무부서	공제사업	연도	공제종류
	한국LP가스판매중앙회	2002	손해공제(배상책임), 제3공제(상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02	배상책임공제
산업통상	전기산업진흥공제	2002	배상책임공제
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공제	2006	영업배상책임, 상해, 화재공제
	노란우산공제	2007	퇴직금, 사망, 노령공제
	중소기업보 <del>증공</del> 제	2012	손해공제(보증)
#JOLH	소방산업공제	2008	손해공제(근재, 배상책임, 보증)
행안부	자원봉사공제	2009	제3공제(봉사활동 중 상해, 질병), 손해(피해자배상)
	건설폐기물공제	2000	손해공제(보증)
	산업폐자원공제	2000	손해공제(보증)
	의료폐기물처리공제	2001	손해공제(보증)
	금속캔자원재활용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전지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타이어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치거ㅂ	페트병자원순환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발포스티렌재활용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한국조명재활용협회	2003	손해공제(보증)
	종이팩자원순환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윤활유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보증)
	유리병재활용사업공제	2004	손해공제(보증)

자료: 김경환·박정희(2014)

## 다. 공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보험, 환변동보험, 탄소종합보험,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리스크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리스크 등으 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수입자용 수입보험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 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리스크 또는 신용리스크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 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혯지(Hedge)하는 상품이다. 탄소종합보험은 교 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11)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 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 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09 년 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전국영업 점에서 동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기업 간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 (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의 리스크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매출채권보험은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반면, 어음보험은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대상으로 한다.

<sup>11)</sup>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및 구체 적 이행 방안을 규정한 국제 의정서이며(2005년 발효), 탄소배출권사업은 친환경기술 등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 할 수 있는 사업읶

### 2.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 가. 분석자료

그간 손해보험업계는 기업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나 지급 보험금 등 현황 통계를 별도로 집적 및 공시하지 않았으며, 2018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보험업감독규정에 기업성보험의 정의조항과 기업성보험 통계의 집적·분석·공시 의무 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90여 개에 이르는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을 우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제사업의 계약 및 지급 실적에 대해서는 공식적 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산업 내 통계를 이용하여 기업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보험시장 의 규모, 즉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 영분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 1)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은 1962년에 처음으로 연간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편제한 이후 매년 우리나 라 영리법인 기업에 대한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작성해오고 있다. 2011년 이전까지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설계에 의한 임의표본조사방식을 사 용하여 통계작성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대 상법인의 신고자료에 첨부되는 각 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 경영분석통계의 편제방법을 모집단 집계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업경영분석통계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 통계편제 제외대상 업종에는 금융 및 보험업, 임업, 수도사업, 연구개발업, 공정거 래위원회 지정 지주회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이 포함된다.

기업경영분석통계는 2011년 이후 법인세 신고기업의 90% 이상의 재무제표 정보를 집계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업경영분석통계는 국세청에 2017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69만 8,616개 중에서 결산일이 1월 1일~5월 31일인 법인(1만 827개), 비영리법인(1만 6,272개)과 영위 업종이 통계편제 제외대상인 법인(1만 5,993개)을 제외한 총 65만 5,524개를 대상으로 한다(〈표 II-4〉참조). 이는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의 93.8%에 해당한다.

〈표 Ⅱ-4〉「기업경영분석」통계작성 대상기업

(단위: 개사, %)

구분	법인세 신고기업(A)	결산월 1~5월	비영리법인	통계편제 적용제외 대상법인	조사대상 기업(B)	B/A
2011년	473,107	9,091	4,198	23,415	436,403	92.2
2012년	503,104	4,737	8,733	25,209	464,425	92.3
2013년	536,725	5,617	9,634	29,186	492,288	91.7
2014년	573,455	7,708	11,401	23,705	530,641	92.5
2015년	623,390	7,982	12,369	28,188	574,851	92.2
2016년	657,517	10,387	15,664	16,150	615,316	93.6
2017년	698,616	10,827	16,272	15,993	655,524	93.8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다만, 기업경영분석통계는 영리기업 중 개인기업을 통계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7년 영리기업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법인기업 62만 1천 개(10.3%), 개인기업 542만 9천 개(89.7%)로, 총 605만 1천 개이다(〈표 II-5〉 참조〉.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통해 파악한 기업의 보험수요는 개인기업과 비영리기업을 고려하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보험수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표 Ⅱ-5〉 우리나라 활동기업 현황

(단위: 천 개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おして	전체	5,379	5,377	5,559	5,554	5,776	6,051
활동	법인	453	481	512	548	585	621
기업	개인	4,926	4,897	5,046	5,005	5,191	5,429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각 연도

기업경영분석통계에서 보험료는 손익계산서상의 보험료와 재무제표에 부속된 제조 원가명세서상의 보험료로 구분된다.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보험료는 판 매와 관리부문에 사용되는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그 밖의 손해보험료를, 제조 원가명세서상 보험료는 공장의 건물, 기계, 저장품 등의 화재보험 료 및 기타 손해보험료를 의미한다.

#### 2)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쓰였는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 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작성 형식에 따라 공급사용표와 투입산출표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입산출표 (Input and Output Table)는 상품 기준으로 생산과 배분 내역을 나타낸 분석 목적의표이며,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는 산업 기준으로 상품 공급을 나타내는 공급표와 생산을 위한 상품의 사용과 배분 내역을 나타낸 사용표로 구성된 통계 목적의표이다. 투입산출표는 상품 기준으로 되어 있어, 하나의 산업은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 분석에는 적합하지만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투입산출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공급사용표가 작성되었다(한국은행 2014). 투입산출표와 사용표와의 차이점은 투입산출표가 「상품×상품」의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보면 산업의 투입구조가 아닌상품의 투입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작성해 오던 투입산출표와 함께 국민계정통계 간의 정합성 제고와 국제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부터 공급사용표도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사용표는 각 산업별로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한 원부재료 등의 상품과 본원적 요소, 즉 부가가치의 사용 내역을 「상품×산업」의 행렬 형태로,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별로 상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벡터 형태로 나타낸 통계이다. 세로 방향으로는 각 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생산 비용의 구성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투입구조라고

한다(〈표 Ⅱ-6〉 참조). 투입구조는 생산에 투입된 워부재료 등의 중간재 투입을 나타내 는 중간투입 부문과 임금, 이윤, 세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 가치 부문으로 구분되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고 한다. 가로 방향으로는 각 상품이 어떤 산업의 생산 활동에 중간재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형태로 얼마나 이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를 배분구조 라고 한다. 배분구조는 생산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중가수요 부문과 소비. 투자. 수 출 등의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 부문으로 구분되며, 중간수요액과 최종수요액의 합계를 총수요액이라고 한다. 2010 기준년 산업분류는 대분류 30개, 중분류 82개, 소 분류 161개, 기본부문 328개로 구성되며, 상품분류는 대분류 30개, 중분류 82개, 소분 류 161개, 기본부문 384개로 구분된다.

중간수요 최종수요 구분 총수요 산업1 산업2 산업3 소비 투자 수출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상품3 \_\_\_\_ 국내직접판매 해외직접판매 순생산물세 잔폐물발생(-) 중간투입계 부가가치 총투입계

〈표 Ⅱ-6〉산업연관표 사용표 예시

산업연관표에서 보험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상해 및 재산 손실을 대 상으로 하는 비생명보험으로 구분되다.12) 산업연관표에서 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단위로서 생명보험회사의 일반 생명보험 이외에 우체국보험과 농협·수협공제(생명),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생명공제 중 생

<sup>12)</sup> 산업연관표에서 보험관련서비스("금융 및 보험보조서비스")는 보험과 별도의 상품 및 산업 으로 구부되는데, 보험관련서비스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가입 자를 모집 또는 관리하는 보험대리 및 보험증개업과 보험감정업(손해사정업)을 포함함

명보험 성격이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 비생명보험(Non-life Insurance)은 생명보험과 유사하나 상해 및 화재와 관련한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단위로서,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의 일반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수출보험, 농협·수협공제(비생명), 한국해운조합공제, 건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등 비생명공제 중 손해보험 관련 부분으로 구성된다(한국은행 2015).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사회보장기금,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분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적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고용주 전입금은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로 처리한다. 13)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로 부류되다.

보험업에서 산출한 보험서비스는 각 산업에서 중간재로 사용된다. 국민계정체계에서 총산출(Gross Output 또는 Control Totals)이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기초가격 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14) 국민계정에서 보험서비스의 산출량은 타 상품 및 서비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계된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료로 의제하여 이를 총산출로 간주한다(한국은행 2015). 15) 보험업의 경우 상당한 보험금을 일시

<sup>13)</sup> 피용자보수는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노동을 제공한 피용자에게 분배되는 몫을 의미하며,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한 모든 종류의 급료, 상여금, 제수당 및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각종 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분담금을 포함함

<sup>14)</sup> 생산자가격은 유통마진(화물운임과 도소매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의 출하가격을, 기 초가격은 생산자가격에서 각종 생산물세를 제외한 가격을, 구매자가격은 유통마진을 포함 한 구매자의 구입시점에서의 가격을 의미함

<sup>15)</sup> 상세는 European Communities et al. 2009(p. 117)을 참고하기 바람: Under a non-life insurance policy, the insurance company accepts a premium from a client and holds it until a claim is made or the period of the insurance expires. In the meantime, the insurance company invests the premium and the property income is an extra source of funds from which to meet any claim due. The property income represents income foregone by the client and so is treated as an implicit supplement to the actual premium. The insurance company sets the level of the actual premiums to be such that the sum of the actual premiums plus the property income earned on them less the expected claim will leave a margin that the insurance company can retain; this margin represents the output of the insurance company. Within the SNA, the output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determined in a manner intended to mimic the premium setting policies of the insurance corporations. The method of calculating output for

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것을 총산출로 인식하는 1993 SNA 방법을 따르게 되면 음(-)의 총산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2008 SNA에서는 실제보험금 지급액이 아닌 보험회사가 사전에 보험료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보험금 수준을 추정하여 결정한 조정보험금을 이용하여 산출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을 20분기 이동평균하여 적용한다.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 및 보험금은 보험통계연보 등을 이용하여 구하며 동 거래총액은 화재, 자동차,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보험종 목별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가계로 배분한다.

구분	손해보험회사 등 실적자료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작성기관	각 보험(공제)회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자료출처	보험회사 현황 통계	기업 작성 재무제표	보험·공제산업 작성 통계자료 등
대상기업	보험(공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	<ul> <li>법인기업(2017년 기준 법인 세 신고기업의 93.8%)</li> <li>법인기업 중 금융보험업 등 일부 제외</li> <li>개인기업 제외</li> </ul>	보험(공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
보험 수요의 지표	원수(수입)보험료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	(수입보험료 + 보험준비금 투자수익) - (지급보험금 + 지급준비금 순증가분)
특성	7개 주요 공제조합을 제외한 공제조합 수입보험료 파악 곤란	자산·매출 등 기업 특성별, 산업별 보험수요 파악 용이     가계부문과 비교 불가	• 기업 특성별, 산업별 보험 수요 파악 곤란 • 가계부문과 비교 용이

〈표 Ⅱ-7〉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분석자료

## 나. 총 보험수요

전술한 바와 같이 영업 중인 공제조합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손해보험에 서도 기업이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에 대한 현황을 공식적으로 집적해오지 않아

life insurance follows the same general principles as for non-life insurance but because of the time interval between when premiums are received and when benefits are paid, special allowances must be made for changes in the technical reserves

보험산업 내 자료만으로 기업의 보험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손해보험에서 화재·해상·보증·특종 등 일반손해보험과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주로 기업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손해보험 내 기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4.1%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2조 6,363억 원에 이른다(〈표 II-8〉 참조).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전국버스공제, 전국전세버스, 전국화물자동차, 전국개인택시, 전국택시공제 등 7개 주요 공제의 원수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7% 증가하여 2017년 1조 7,175억 원이다. 16) 동기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과 매출채권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총 5,897억 원이다. 손해보험과 7개 주요공제, 그리고 공보험의수입보험료 합계는 2017년 기준 14조 9,435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4.3% 증가하였다.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공제조합의 원수보험료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2017년에 기업이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14조 9,435억 원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8〉 기업 관련 보험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화재	2,433	2,828	1,756	2,560	2,563	2,457	2,306	-0.9
	(일반·공장·기타)	(91.1)	(87.0)	(84.5)	(83.5)	(85.1)	(82.6)	(78.6)	-
	해상	8,623	8,120	5,959	7,293	7,051	6,030	6,399	-4.8
	보증	13,170	13,542	9,445	12,714	13,097	13,480	15,086	2.3
	기술	3,529	3,255	2,126	3,069	2,971	2,807	2,667	-4.6
	책임	6,272	6,700	5,393	7,360	7,896	8,981	9,587	7.3
손	2 L=11/r-L=11\	6,960	7,862	5,688	8,332	9,300	9,974	10,970	7.9
해 보	상해(단체)	(53.1)	(54.8)	(54.0)	(56.5)	(59.6)	(62.3)	(66.6)	-
포 험	조하/기어 서)	12,026	13,021	11,812	14,626	13,360	13,404	13,940	2.5
Ц	종합(기업성)	(87.5)	(89.9)	(91.7)	(91.7)	(91.3)	(91.3)	(92.0)	-
	권원	177	241	184	303	343	431	490	18.5
	기타특종	4,180	9,091	5,638	8,225	9,637	11,206	13,057	20.9
	자동차보험	42,020	41,652	30,920	43,967	47,742	51,054	51,861	3.6
	(업무·영업용)	(32.2)	(32.4)	(31.7)	(32.5)	(31.8)	(31.1)	(30.8)	-
	소계	99,390	106,312	78,921	108,449	113,960	119,824	126,363	4.1

<sup>16) 2013</sup>년 설립된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의 수입보험료는 2018년 기준 약 4천억 원에 달함. 동 공제의 연도별 정확한 실적이 파악되지 않아 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음

#### 〈표 Ⅱ-8〉 계속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건설공제조합	2,861	3,070	3,146	3,191	3,374	3,544	4,265	6.9
	한국해운조합	691	770	816	828	867	845	821	2.9
주	전국버스공제	1,548	1,673	1,277	1,341	1,897	1,960	2,054	4.8
3	전국전세버스	584	662	747	828	899	899	830	6.0
공	전국화물자동차	3,081	3,209	3,285	3,426	3,659	3,971	4,461	6.4
제	전국개인택시	1,620	1,702	1,770	1,834	1,924	1,997	2,131	4.7
	전국택시공제	-	-	-	-	-	2,451	2,613	-
	소계	10,385	11,086	11,041	11,448	12,620	15,667	17,175	8.7
공	무역보험	5,860	7,513	6,758	6,202	6,903	8,169	5,390	-1.4
보	매출채권보험	169	269	302	319	373	437	507	20.1
험	소계	6,029	7,782	7,060	6,521	7,276	8,606	5,897	-0.4
	계	115,804	125,180	97,022	126,418	133,856	144,097	149,435	4.3

주: 1) 화재보험은 주택, 일반, 공장, 기타로 구분, 상해보험은 일반, 단체, 여행자, 기타로 구분, 종합보험은 가 계성, 기업성, 질병으로 구분, 기타특종은 도난, 원자력 등을 포함.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으로 구분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연도: 수출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제공 자료

다음으로,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2011~2017년 기간 동안 국세청에 법인세 를 신고한 영리기업이 지출한 보험료 규모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II-9〉 참조). 기 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9조 1,390억 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에는 14조 2,324억 원에 이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경영분석통계는 금융 및 보험업, 임 업, 수도사업, 연구개발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 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협회 및 단체 등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분석통계상 기업의 지출보험 료 규모는 〈표 II-8〉에서 보여준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통계상 보험회사의 수입보험 료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1~2017년 기간 동안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GDP(4.5%)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하여 GDP 대비 보험료의 비윸은 2011년 0.69%에서 2017년 0.82%로. 관찰기가 동안 사업의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경영분석통계의 보험 료는 손익계산서상의 보험료와 제조 원가명세서상의 보험료로 구분되다. 전 기간에

<sup>2)</sup> 화재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기업성으로 추정되는 보험료이며 괄호 안은 기업성으로 추정되는 보험료의 비율임

걸쳐 제조 원가명세서상의 보험료가 손익계산서상의 보험료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후 자가 전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보험료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보험료는 2011년 3조 9,661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43.4%에 불과하 였으나, 이후 연평균 9.4% 증가하여 2017년 6조 8,149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47.9% 를 차지하였다. 손익계산서상의 보험료가 판매관리비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판 매·관리와 관련된 손해보험료를, 그리고 제조 원가명세서상의 보험료가 제조<sup>17)</sup>와 관 련된 손해보험료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익계산서상의 보험료 증가세는 제 조·공사·임대·분양·운송 활동보다는 판매 및 관리 활동에서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커 졌거나 또는 후자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규모가 보다 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9〉 기업의 총 보험수요: 기업경영분석

(단위: 억 원, %)

					용도별 .	보험료	
구분	보험료(A)	GDP(B)	A/B	손익겨	l산서	제조 원기	l명세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11년	91,390	13,326,810	0.69	39,661	43.4	51,729	56.6
2012년	101,295	13,774,570	0.74	45,420	44.8	55,875	55.2
2013년	107,306	14,294,450	0.75	48,798	45.5	58,508	54.5
2014년	116,762	14,860,790	0.79	54,450	46.6	62,311	53.4
2015년	127,663	15,641,240	0.82	59,768	46.8	67,895	53.2
2016년	134,566	16,417,860	0.82	64,333	47.8	70,233	52.2
2017년	142,324	17,303,990	0.82	68,149	47.9	74,175	52.1
CAGR	7.7	4.5	_	9.4	_	6.2	_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sup>17)</sup> 제조는 제조활동은 물론 공사, 임대, 분양, 운송활동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

### 〈그림 Ⅱ-1〉 기업의 총 보험수요: 기업경영분석



주: 그래프의 좌측과 막대는 보험료(천억 원)를, 그래프의 우측과 실선은 GDP 대비 보험료의 비율(%)을 나타냄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이하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사용표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보험수요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2010년부터 작성된 사용표를 토대로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및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보험수요는 2010년 12조 2,791억 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4년 16조 5,373억 원이다(〈표 II-10〉 참조). 이 수치는 보험산업의 보험수요를 제한 값으로, 앞서 보험회사 및 공제의 수입보험료 통계와 기업경영분석통계로부터 산출된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보다 크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에서 보험서비스에 대한 산업의 수요는 단순히 보험업의 수입보험료 대신, 보험업의 마진(Margin)을 보험서비스의 산출량으로 간주한다. 기업보험의 연평균 증가율은 기업경영분석통계(2011~2017년 기간 동안 7.7%)와 산업연관표(2010~2014년 기간 동안 7.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기간 가계의 보험수요와 GDP가 각각 연평균 3.9%, 4.1%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산업의 보험수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보험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41%로 관찰기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감소하여 2014년 3.17% 수준이다. 보험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보험수요는 2014년 기준 GDP의 1.11%를 차지하고 가계의 보험수요는 GDP의 1.89%를 차지한다. 2010~2014년 기간 동안 가계(연평균 3.9%)보다는 산업 (7.7%)의 보험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수요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33.7%에서 2014년 37%로 증가하였다.

#### 〈표 II-10〉 기업의 총 보험수요: 사용표

(단위: 억 원, %)

				보험	남 유요				
구분		산업		가계	수출	총수요	산업	GDP대비	
	전체	보험	보험 제외	7 [21]	十五	중구표	비율	산업	가계
2010년	137,284	14,493	122,791	241,439	6,945	385,669	33.7	0.97	1.91
2011년	156,415	17,270	139,145	256,931	6,631	419,977	35.1	1.04	1.93
2012년	183,650	21,415	162,235	280,367	6,225	470,242	36.7	1.18	2.04
2013년	179,911	17,506	162,405	278,076	7,719	465,705	36.9	1.14	1.95
2014년	181,096	15,723	165,373	281,071	9,037	471,204	37.0	1.11	1.89
CAGR	7.2	2.1	7.7	3.9	6.8	5.1	-	-	-

주: 1) 사용표는 2010년부터 산출 발표함. 구매자가격 사용표를 이용함

사용표보다 긴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보험수요를 살펴보면,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29개의 상품(보험 제외)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보 험서비스는 2014년 기준 16조 5,290억 원으로 사용표와 유사하다(〈표 Ⅱ-11〉 참조). 2005~2014년 기간 동안 기업의 보험수요(14.8%)가 가계(6.3%)보다 연평균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보험수요에서 기업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 년 22.8%에서 2014년 37.1%로 증가하였다. 기업보험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52%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1.11%에 이르렀다.

<sup>2)</sup> 산업비율 = (전체 산업의 보험수요 - 보험산업의 보험수요) / (총수요 - 보험산업의 보험수요 - 수출)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사용표」, 각 연도

### 〈표 Ⅱ-11〉 기업의 총 보험수요: 투입산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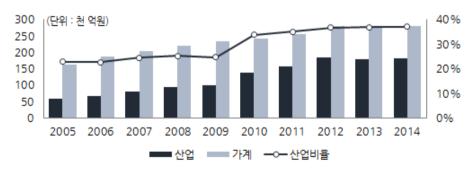
(단위: 억 원, %)

				보험	험수요				
구분		산업		가계	수출	총수요	산업	GDP	대비
	전체	보험	보험 제외	2 [21]	T 2	중구표	비율	산업	가계
2005년	58,574	10,953	47,621	161,411	2,884	222,869	22.8	0.52	1.75
2006년	67,068	12,597	54,471	185,882	2,727	255,677	22.7	0.56	1.92
2007년	80,763	14,901	65,862	203,060	3,700	287,523	24.5	0.63	1.95
2008년	93,035	18,879	74,156	220,430	6,099	319,565	25.2	0.67	2.00
2009년	97,920	21,111	76,809	234,292	4,944	337,156	24.7	0.67	2.03
2010년	137,258	14,492	122,766	241,376	7,354	385,988	33.7	0.97	1.91
2011년	156,315	17,241	139,074	256,644	7,112	420,071	35.1	1.04	1.93
2012년	183,556	21,363	162,193	280,050	6,800	470,405	36.7	1.18	2.03
2013년	179,764	17,441	162,323	277,681	8,342	465,788	36.9	1.14	1.94
2014년	180,895	15,605	165,290	280,479	9,944	471,318	37.1	1.11	1.89
CAGR	13.3	4.0	14.8	6.3	14.7	8.7	-	-	-

주: 1) 투입산출표의 기초가격 자료를 이용함

2) 산업비율 = (전체 산업의 보험수요 - 보험산업의 보험수요) / (총수요 - 보험산업의 보험수요 - 수출)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 각 연도

# 〈그림 II-2〉 기업의 총 보험수요: 투입산출표



주: 그래프의 좌측과 막대는 보험료(천 억 원)를, 그래프의 우측과 실선은 전체 보험수요 중 산업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 각 연도

## 3. 산업별 보험수요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한 리스크의 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가 산업별로 상이하 므로 기업의 보험수요도 산업별로 다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의 산업별 보험수요 분석에는 한 해 동안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 총액과 더불어, 산업별 매출액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정규화(Normalize)한 값 을 이용한다. 지출보험료 및 재무정보를 산업별로 제공하는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 하여 분석하다.

## 가. 산업구조

한 나라의 산업구조는 보통 총 산출액이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산업부문 별 구성비를 계산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표 Ⅱ-12〉는 총 산출액 기준 우리나라의 산 업구조를 보여준다. 2014년 총 산출액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 1.6%, 광업 0.1%, 제조업 48.5%,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처리업 3.5%, 건설업 5.5%, 서비스업 40.9%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의 비중은 2010년 OECD 평균(26.2%)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 (59.4%)에 비해 낮다. 2014년의 산업구조를 2000년, 2005년, 2010년의 산업구조와 비 교해보면 농림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높아졌 다. 2000년 대비 제조업 중 소비재업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기초소재업과 조립가공업 의 비중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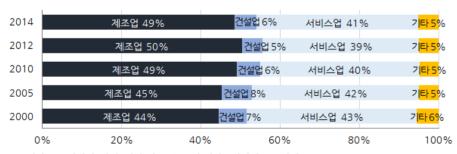
#### 〈표 Ⅱ-12〉 산업구조 추이: 총 산출액 기준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4년	OECD (2010년)
농림어업	3.0	2.1	1.7	1.6	1.6	2.5
광업	0.1	0.1	0.1	0.1	0.1	1.7
제조업	44.4	45.2	49.0	50.4	48.5	26.2
(소비재업)	10.3	7.5	6.9	7.0	-	8.7
(기초소재업)	15.8	17.1	19.0	20.5	-	9.9
(조립가공업)	18.3	20.6	23.1	22.8	-	7.5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2.6	2.6	2.9	3.2	3.5	2.9
건설업	7.2	7.6	5.9	5.2	5.5	7.4
서비스업	42.8	42.3	40.3	39.4	40.9	59.4
(도소매 및 운수업)	10.5	10.2	10.6	10.3	10.2	16.7
(생산자서비스업)	18.0	17.0	15.9	15.3	-	22.7
(사회서비스업)	9.1	10.2	9.2	9.4	-	13.6
(소비자서비스업)	5.2	4.9	4.6	4.4	-	6.4

주: 1) 생산자서비스업은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임

### 〈그림 Ⅱ-3〉 산업구조 추이: 총 산출액 기준



주: 기타는 농림어업, 광업,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 나. 보험수요

기업경영분석통계에 나타난 법인세 신고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011년 3,286조 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하여 2016년 약 3,668조 원에 이른다. 각 산업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제조업이 47.5%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22.1%), 건설업(11%),

<sup>2)</sup>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임

<sup>3)</sup> 소비자서비스업은 음식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임 자료: 한국은행,「산업연관표」, 각 연도

운수창고업(4.5%), 부동산업(4.5%), 정보통신업(4.3%) 순으로 높다(〈표 II-13〉 참조). 2011~2017년 기간 동안 제조업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53.4%에서 2017년 47.5%로 감소하였다. 동기간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농업,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매출액이 연평균 7% 이상 증가하였다(〈표 II-14〉 참조).

〈표 II-13〉 산업별 매출액

(단위: 백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A01	501	543	598	659	754	761	810	8.7
A03	297	323	285	272	264	275	267	-1.5
В	405	379	405	390	418	410	341	0.2
С	168,200	175,000	173,600	172,600	169,600	166,500	182,200	-0.2
Е	1,494	1,538	1,536	1,556	1,469	1,504	1,801	0.1
F	27,670	28,430	31,730	33,100	34,730	39,820	42,240	7.6
G	66,480	69,530	70,480	72,850	75,110	78,100	84,740	3.3
Н	15,050	16,260	16,040	16,620	16,620	15,270	17,280	0.3
I	2,011	2,375	2,627	2,993	2,778	2,879	3,193	7.4
J	12,280	13,210	13,830	14,340	14,930	15,510	16,510	4.8
L	8,615	8,420	9,084	10,390	12,910	16,130	17,390	13.4
M	5,141	5,949	6,438	6,199	5,168	5,596	5,979	1.7
N	3,821	4,164	4,533	4,841	5,254	5,581	7,442	7.9
P	492	526	616	570	640	753	886	8.9
R	2,336	2,246	2,316	2,389	2,465	2,592	2,647	2.1
전체	328,615	345,076	351,174	357,157	358,898	366,770	399,149	2.2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로 작성됨

<sup>3)</sup> CAGR은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표 Ⅱ-14〉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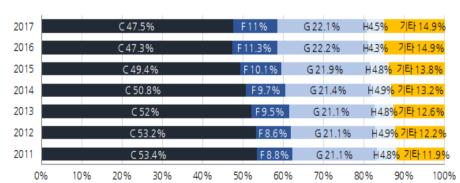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01	0.2	0.2	0.2	0.2	0.2	0.2	0.2
A03	0.1	0.1	0.1	0.1	0.1	0.1	0.1
В	0.1	0.1	0.1	0.1	0.1	0.1	0.1
С	53.4	53.2	52.0	50.8	49.4	47.3	47.5
Е	0.5	0.5	0.5	0.5	0.4	0.4	0.5
F	8.8	8.6	9.5	9.7	10.1	11.3	11.0
G	21.1	21.1	21.1	21.4	21.9	22.2	22.1
Н	4.8	4.9	4.8	4.9	4.8	4.3	4.5
I	0.6	0.7	0.8	0.9	0.8	0.8	0.8
J	3.9	4.0	4.1	4.2	4.4	4.4	4.3
L	2.7	2.6	2.7	3.1	3.8	4.6	4.5
M	1.6	1.8	1.9	1.8	1.5	1.6	1.6
N	1.2	1.3	1.4	1.4	1.5	1.6	1.9
Р	0.2	0.2	0.2	0.2	0.2	0.2	0.2
R	0.7	0.7	0.7	0.7	0.7	0.7	0.7

-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페기물처리 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유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I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 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그림 Ⅱ-4〉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 주: 1)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기타는 농업, 어업, 광업, 하수폐기물처리·원 료재생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 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 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기업경영분석통계 작성대상 법인세 신고기업이 지출한 보험료 총액은 2011년 9조 1,390억 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조 4,566억 원에 이른다(〈표 II-15〉 참조). 2011~2016년 기간 동안 산업별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업이 18.2%로 가장 높고, 정보통신업 18%, 교육서비스업 14.9%, 부동산업 14.5%, 숙박음식점업 11.7%, 임대서비스업 11.5%, 도소매업 9.7%, 건설업 9.1%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매출액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매출액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보험료가 연평균 5.9% 증가하여 제조업의 보험의존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전체 보험료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제조업이 34.2%로 가장 높고, 건설업 24%, 도소매업 10.6%, 유수창고업 10.1%, 임대서비스업 7.8%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II-16〉 참조〉.

〈표 II-15〉 산업별 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A01	180	230	259	311	387	416	478	18.2
A03	360	408	441	421	338	426	377	3.4
В	655	706	654	629	647	732	717	2.2
С	34,270	36,698	38,356	42,132	45,650	45,677	47,738	5.9
Е	1,182	1,303	1,329	1,477	1,667	1,770	1,964	8.4
F	19,712	20,921	23,041	24,838	27,358	30,512	33,527	9.1
G	8,597	9,776	10,154	11,405	12,429	13,649	14,747	9.7
Н	11,362	12,287	12,255	12,953	13,752	13,970	14,061	4.2
Ι	695	758	869	1,009	1,176	1,211	1,388	11.7
J	2,389	4,806	5,375	5,152	5,469	5,472	4,754	18.0
L	3,202	3,341	3,648	4,476	5,346	6,310	3,467	14.5
M	2,751	3,305	3,359	3,458	3,709	4,131	4,576	8.5
N	3,997	4,570	5,008	5,697	6,483	6,884	10,827	11.5
Р	194	223	254	267	313	389	453	14.9
R	506	442	497	519	529	531	563	1.0
전체	91,390	101,295	107,306	116,762	127,663	134,566	142,324	8.0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sup>3)</sup> CAGR은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표 Ⅱ-16〉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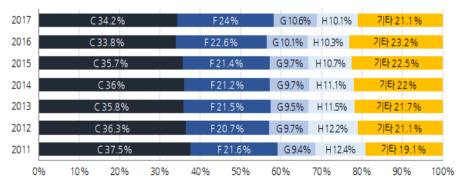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01	0.2	0.2	0.2	0.3	0.3	0.3	0.3
A03	0.4	0.4	0.4	0.4	0.3	0.3	0.3
В	0.7	0.7	0.6	0.5	0.5	0.5	0.5
С	37.5	36.3	35.8	36.0	35.7	33.8	34.2
Е	1.3	1.3	1.2	1.3	1.3	1.3	1.4
F	21.6	20.7	21.5	21.2	21.4	22.6	24.0
G	9.4	9.7	9.5	9.7	9.7	10.1	10.6
Н	12.4	12.2	11.5	11.1	10.7	10.3	10.1
I	0.8	0.8	0.8	0.9	0.9	0.9	1.0
J	2.6	4.8	5.0	4.4	4.3	4.1	3.4
L	3.5	3.3	3.4	3.8	4.2	4.7	2.5
M	3.0	3.3	3.1	3.0	2.9	3.1	3.3
N	4.4	4.5	4.7	4.9	5.1	5.1	7.8
Р	0.2	0.2	0.2	0.2	0.2	0.3	0.3
R	0.6	0.4	0.5	0.4	0.4	0.4	0.4

-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유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I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 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그림 Ⅱ-5〉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 주: 1)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기타는 농업, 어업, 광업, 하수폐기물처리·원 료재생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 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2011~2016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산업에서 매출액보다 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동기간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표 II-17〉 참조).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은 2017년 기준 광업(2.1%)이 가장 높고, 임대서비스업 1.45%, 어업 1.4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09%, 운수창고업 0.81%, 건설업 0.79%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동기간 매출액과 보험료 구성비가 가장 높은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0.26%에 불과하다.

〈표 Ⅱ-17〉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01	0.36	0.42	0.43	0.47	0.51	0.55	0.59
A03	1.21	1.26	1.55	1.55	1.28	1.55	1.41
В	1.62	1.86	1.61	1.61	1.55	1.79	2.10
С	0.20	0.21	0.22	0.24	0.27	0.27	0.26
Е	0.79	0.85	0.87	0.95	1.13	1.18	1.09
F	0.71	0.74	0.73	0.75	0.79	0.77	0.79
G	0.13	0.14	0.14	0.16	0.17	0.17	0.17
Н	0.75	0.76	0.76	0.78	0.83	0.91	0.81
I	0.35	0.32	0.33	0.34	0.42	0.42	0.43
J	0.19	0.36	0.39	0.36	0.37	0.35	0.29
L	0.37	0.40	0.40	0.43	0.41	0.39	0.20
M	0.54	0.56	0.52	0.56	0.72	0.74	0.77
N	1.05	1.10	1.10	1.18	1.23	1.23	1.45
Р	0.39	0.42	0.41	0.47	0.49	0.52	0.51
R	0.22	0.20	0.21	0.22	0.21	0.20	0.21
전체	0.28	0.29	0.31	0.33	0.36	0.37	0.36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로 작성됨





-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 3) 막대의 색상이 옅어질수록 최근임(2011~2017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다. 세부산업별 보험수요

## 1) 제조업

제조업은 다음과 같이 23개의 세부산업으로 구분된다: 식료품(C10), 음료(C11), 의복 제외 섬유제품(C13), 의복·의료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가구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C25), 전자제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운송장비(C31), 가구(C32), 기타제품제조업(C33). 각 세부산업에 내재된 리스크의 속성에 따라 세부산업별로 리스크보장에 대한 수요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2016년 기간 동안 제조업 세부산업별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목재 및 나

무제품이 6.1%로 가장 높고, 인쇄 및 기록매체 6.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5.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5.5%, 의복·의료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4.6%, 식료품 4.5%, 음료 4.4%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II-18〉참조). 반면, 코크스·연탄 및 석유 정제품과 1차금속 매출액은 각각 연평균 12.7%, 5.8% 감소하였다. 제조업 전체 매출액에서 각 세부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이 19.9%로 가장 높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 14.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5%, 1차금속 8.0%, 기타기계 및 장비 6.6%,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6.1%, 식료품 5.2% 순으로 높다.

〈표 Ⅱ-18〉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1~16 CAGR
C10	4.30	4.41	4.55	4.81	5.24	5.42	5.24	4.5
C11	0.52	0.56	0.58	0.60	0.64	0.66	0.64	4.4
C13	1.83	1.69	1.70	1.72	1.65	1.71	1.43	-1.6
C14	2.00	1.96	2.21	2.45	3.62	2.53	2.41	4.6
C15	0.51	0.55	0.60	0.62	0.61	0.56	0.62	1.5
C16	0.36	0.34	0.36	0.42	0.46	0.48	0.47	6.1
C17	1.25	1.22	1.21	1.24	1.27	1.34	1.30	1.2
C18	0.39	0.40	0.45	0.44	0.49	0.52	0.48	6.0
C19	10.13	9.26	8.76	8.67	5.74	5.19	6.07	-12.7
C20	10.45	11.00	10.43	10.02	9.88	10.27	10.51	-0.6
C21	1.03	0.99	0.95	1.02	1.19	1.36	1.29	5.5
C22	2.83	3.08	2.83	3.15	3.13	3.38	3.29	3.4
C23	2.26	2.21	2.31	2.24	2.43	2.64	2.46	2.9
C24	10.14	9.23	8.30	8.44	7.75	7.63	8.03	-5.8
C25	3.17	3.14	3.07	3.29	3.42	3.57	3.38	2.1
C26	19.40	20.87	22.19	20.38	20.49	20.24	19.85	0.6
C27	0.91	0.87	1.00	1.03	1.10	1.22	1.34	5.8
C28	3.42	3.65	3.69	3.88	3.61	3.95	5.76	2.7
C29	5.49	5.17	5.24	5.45	5.66	5.97	6.62	1.5
C30	13.21	13.25	13.64	13.96	15.27	15.58	14.34	3.1
C31	5.44	5.22	4.99	5.15	5.22	4.58	3.25	-3.6
C32	0.45	0.39	0.38	0.42	0.47	0.54	0.55	3.4
C33	0.53	0.53	0.54	0.59	0.64	0.68	0.68	4.8

주: 1) C10 식료품, C11 음료, C13 의복 제외 섬유제품, C14 의복·의료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5 가죽·가방 및 신발, C16 가구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9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3 비금속광물제품. C24 1차금속,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제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운송장비, C32 가구. C33 기타제품제조업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로 작성됨
- 3) CAGR은 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2011~2016년 기간 동안 일부 제조산업의 보험료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II-19〉참조). 동기간 제조업 내 세부산업별 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식료품이 12.6%로 가장 높고, 가구 11.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0.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8.9%, 기타 기계 및 장비 8.8%, 금속가공제품 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료의 경우 동기간 매출액이 4%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 감소하였다. 코크스·연탄 및 석유 정제품의 경우 매출액이 12.7% 감소하였지만, 보험료는 3.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전체 보험료에서 각 세부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기타기계 및 장비가 12%로 가장 높고,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9.5%, 금속가공제품 8.2%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 〈표 II-19〉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단위: %)

ᄀᆸ	201113	201213	201213	201413	201EL=	20161=	201713	2011~16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C10	4.11	4.54	4.74	4.81	5.25	5.57	5.90	12.6
C11	1.09	0.60	0.50	0.53	0.50	0.48	0.49	-10.0
C13	2.71	2.75	2.74	2.80	2.75	2.88	2.80	7.2
C14	1.45	1.39	1.45	1.59	2.85	1.50	1.53	6.6
C15	0.52	0.54	0.56	0.55	0.53	0.53	0.57	6.4
C16	1.04	1.09	0.97	0.99	1.07	1.14	1.16	8.0
C17	1.51	1.59	1.70	1.69	1.70	1.83	1.87	10.0
C18	0.94	0.97	0.97	0.98	1.05	1.11	1.15	9.4
C19	1.99	1.77	1.70	1.20	1.20	1.25	1.26	-3.6
C20	8.91	9.25	8.60	7.82	8.35	9.01	9.54	6.2
C21	1.45	1.53	1.34	1.31	1.44	1.60	1.67	8.0
C22	4.96	5.16	4.92	5.17	5.23	5.71	5.96	8.9
C23	3.91	3.88	3.81	3.51	3.51	3.72	3.76	4.9
C24	4.76	4.95	4.91	4.77	4.75	4.81	4.66	6.1
C25	7.41	7.95	7.83	7.83	8.03	8.27	8.22	8.3
C26	16.03	15.31	15.60	17.82	15.46	13.47	11.58	2.3
C27	1.62	1.70	1.80	1.81	1.84	2.00	2.18	10.4
C28	5.69	5.49	5.33	5.43	4.59	4.98	5.91	3.1
C29	9.80	10.30	10.64	10.61	10.58	11.23	12.02	8.8
C30	8.47	8.82	9.07	8.54	8.89	9.35	9.54	8.0
C31	9.77	8.54	8.95	8.34	8.38	7.25	5.82	-0.2
C32	0.86	0.84	0.83	0.87	0.96	1.12	1.19	11.7
C33	0.99	1.04	1.04	1.03	1.08	1.20	1.20	10.0

주: 1) C10 식료품, C11 음료, C13 의복 제외 섬유제품, C14 의복·의료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5 가죽·가방 및 신발. C16 가구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3 비금속광물제품, C24 1차금속,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제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운송장비, C32 가구, C33 기타제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보험료는 음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인다(〈표II-20〉 참조). 2011~2016년 기간 동안 음료의 매출액은 연평균 4% 이상 증가하였으나, 보험료는 연평균 10% 감소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중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또한 대체로 가연성 물질이 많은 제조산업일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은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sup>3)</sup> CAGR은 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0.65%, 금속가공제품 0.6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2%, 가구 0.56%, 섬유제품 0.51%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은 2017년 기준 0.05%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내 매출액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의 매출액 대 비 보험료 비율은 0.2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0〉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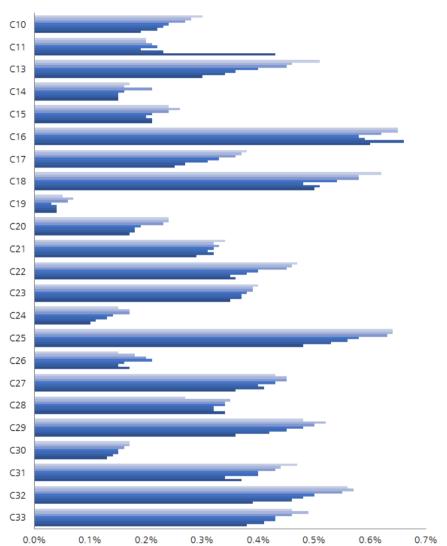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10	0.19	0.22	0.23	0.24	0.27	0.28	0.30
C11	0.43	0.23	0.19	0.22	0.21	0.20	0.20
C13	0.30	0.34	0.36	0.40	0.45	0.46	0.51
C14	0.15	0.15	0.15	0.16	0.21	0.16	0.17
C15	0.21	0.21	0.20	0.21	0.24	0.26	0.24
C16	0.60	0.66	0.59	0.58	0.62	0.65	0.65
C17	0.25	0.27	0.31	0.33	0.36	0.37	0.38
C18	0.50	0.51	0.48	0.54	0.58	0.58	0.62
C19	0.04	0.04	0.04	0.03	0.06	0.07	0.05
C20	0.17	0.18	0.18	0.19	0.23	0.24	0.24
C21	0.29	0.32	0.31	0.32	0.33	0.32	0.34
C22	0.36	0.35	0.38	0.40	0.45	0.46	0.47
C23	0.35	0.37	0.37	0.38	0.39	0.39	0.40
C24	0.10	0.11	0.13	0.14	0.17	0.17	0.15
C25	0.48	0.53	0.56	0.58	0.63	0.64	0.64
C26	0.17	0.15	0.16	0.21	0.20	0.18	0.15
C27	0.36	0.41	0.40	0.43	0.45	0.45	0.43
C28	0.34	0.32	0.32	0.34	0.34	0.35	0.27
C29	0.36	0.42	0.45	0.48	0.50	0.52	0.48
C30	0.13	0.14	0.15	0.15	0.16	0.17	0.17
C31	0.37	0.34	0.40	0.40	0.43	0.44	0.47
C32	0.39	0.46	0.48	0.50	0.55	0.57	0.56
C33	0.38	0.41	0.43	0.43	0.46	0.49	0.46

주: 1) C10 식료품, C11 음료, C13 의복 제외 섬유제품, C14 의복·의료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5 가죽·가방 및 신발, C16 가구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3 비금속광물제품, C24 1차금속,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제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운송장비, C32 가구, C33 기타제품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 로 작성됨





- 주: 1) C10 식료품, C11 음료, C13 의복 제외 섬유제품, C14 의복·의료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5 가죽·가방 및 신발, C16 가구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3 비금속광물제품, C24 1차금속,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제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운송장비, C32 가구, C33 기타제품제조업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로 작성됨
  - 3) 막대의 색상이 옅어질수록 최근임(2011~2017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2) 산업특성별

앞 절에서는 제조업을 23개의 세부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보험수요를 살펴보았으나, 서로 다른 산업이라 할지라도 산업에 내재된 리스크 속성이 같을 수 있고, 산업가 공통의 속성은 기업의 보험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조업을 생산물의 중 량, 기술수준. 산업형태 등 산업특성에 따라 부류하여 기업의 보험수요를 살펴보기로 하다.

먼저, 제조업은 생산물의 중량에 따라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구분가능하다. 중 화화공업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화화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비금속광물제품(C23), 1 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유송장비(C31) 등을 포함하다. 경공업은 중화학 공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을 포함한다.

경공업은 중화학공업보다 2011년 이후 보험료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보험 료는 중화학공업의 1/3 수준에 그친다(〈표 Ⅱ-21〉 참조).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은 2011~2016년 기간 동안 보험료가 각각 5.2%, 8.7%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중화학 공업의 보험료는 약 3조 7,270억 원으로 경공업(1조 468억 원)보다 3배 이상 높다. 또 한 중화학공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은 2017년 기준 0.24%로, 경공업에 비해 0.12‰ 낮게 나타난다. 생산물의 중량에 내재된 속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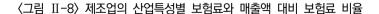
〈표 Ⅱ-21〉 제조업의 생산물중량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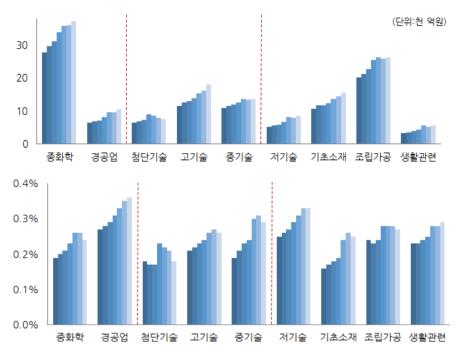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험료	중화학공업	27,859	29,742	31,166	33,980	35,931	35,962	37,270
T. 8.II.	경공업	6,410	6,956	7,190	8,152	9,719	9,715	10,468
보험료/	중화학공업	0.19	0.20	0.21	0.23	0.26	0.26	0.24
매출액	경공업	0.27	0.28	0.29	0.31	0.33	0.35	0.36

주: 1) 각 업종의 정의는 본문을 참고 바람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주: 1) 상단의 그래프는 2011~2017년의 보험료(천 억 원), 하단은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임(%) 2) 막대의 색상이 옅을수록 최근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제조업은 기술수준에 따라 첨단기술업종, 고기술업종, 중기술업종, 저기술업종 등 4가지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첨단기술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C313)을 포함한다. 고기술업종은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항공기제외 철도 및 기타운송장비(C312,9) 등을 포함한다. 중기술업종에는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C25),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등이 해당된다. 저기술업종은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의복 제외 섬유제품(C13),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

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을 포함한다.

첨단기술을 제외하고는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다. 2017년 기준 고기술이 1조 8,016억 원으로 가장 높고, 중기술 1조 3,610억 원, 저기술 8,523억 원, 첨단기술 7,590억 원 순이다(〈표 II-22〉 참조). 첨단기술업종의 보험료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업종의 보험료는 단조 증가하였다. 2011~2016년 기간 동안 저기술업종의 보험료는 연평균 8.7%씩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고, 고기술업종과 중기술업종의 보험료는 각각 연평균 6.9%, 4.4% 증가하였다. 기술수준별 보험료를 살펴보면, 또한 전 기간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22〉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첨단기술업종	6,577	6,846	7,281	9,009	8,552	8,048	7,590
보험료	고기술업종	11,546	12,718	13,123	13,876	15,291	16,122	18,016
工品工	중기술업종	10,919	11,488	11,996	12,560	13,696	13,564	13,610
	저기술업종	5,227	5,646	5,956	6,687	8,111	7,942	8,523
	첨단기술업종	0.18	0.17	0.17	0.23	0.22	0.21	0.18
매출액 대비	고기술업종	0.21	0.22	0.23	0.24	0.26	0.27	0.26
네미 보험료	중기술업종	0.19	0.21	0.23	0.24	0.30	0.31	0.29
	저기술업종	0.25	0.26	0.27	0.29	0.31	0.33	0.33

주: 1) 각 업종의 정의는 본문을 참고 바람

제조업은 산업형태에 따라 기초소재형 산업, 가공조립형 산업, 생활관련형 산업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초소재형 산업은 섬유제품(의복 제외)(C13), 목재 및 나무 제품(가구 제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을 포함한다. 가공조립형 산업은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운송장비(C31) 등을 포함한다. 생활관련형 산업은 식료품 (C10), 음료(C11), 담배(C12),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등을 포함한다.

산업형태에 상관없이 관찰기간 동안 보험료가 대체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생활관련형 산업의 보험료는 연평균 약 9%씩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5,744억 원으로, 조립가공형 산업의 약 22%, 기초소재형 산업의 약 37% 수준에 불과하다(〈표 II-23〉 참조).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은 2017년 기준 생활관련형 산업이 0.29%로 가장 높고 기초소재형 산업이 0.25%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표 II-23〉 제조업의 산업형태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초소재형 산업	10,700	11,730	11,767	12,320	13,693	14,583	15,560
보험료	조립가공형 산업	20,143	21,315	22,707	25,434	26,367	25,821	26,434
	생활관련형 산업	3,426	3,653	3,882	4,379	5,590	5,273	5,744
매출액	기초소재형 산업	0.16	0.17	0.18	0.19	0.24	0.26	0.25
대비	조립가공형 산업	0.24	0.23	0.24	0.28	0.28	0.28	0.27
보험료	생활관련형 산업	0.23	0.23	0.24	0.25	0.28	0.28	0.29

주: 1) 각 업종의 정의는 본문을 참고 바람

## 3) 정보통신기술산업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매출액은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 증가하여 2017년 기준 기업경영분석통계 작성 대상기업 전체 매출액의 15.2%를 차지한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정보통신기기제조업와 정보통신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광학기기 제외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C272), 절연선 및 케이블(C283)을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도·소매업, 정보통신기술 관련 임대업, 소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우편 및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을 포함한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보험료는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5.1% 증가하여 2017년 기준 기업경영분석통계 작성대상 기업 전체 보험료의 8.4%를 차지한다(〈표 II-24〉참조). 동기간 정보통신서비스업의 보험료는 현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의 보험료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통신서비스업의 보험료는 2011년기기제조업의 48%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91% 수준으로까지 근접하였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은 통신서비스업이 2017년 기준 0.26%로 기기제조업보다 0.1%p 높게 나타난다.

〈표 Ⅱ-24〉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억 원, %)

							,	1 2/ 1/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기제조업	6,198	6,051	6,471	8,048	7,653	6,752	6,282
보험료	통신서비스업	2,995	5,467	6,115	5,928	6,368	6,460	5,707
	전체	10,290	11,518	12,585	13,976	14,021	13,212	11,988
매출액	기기제조업	0.17	0.16	0.16	0.22	0.21	0.19	0.16
대비	통신서비스업	0.17	0.30	0.32	0.31	0.33	0.31	0.26
보험료	전체	0.20	0.20	0.21	0.25	0.25	0.23	0.20

주: 1) 각 업종의 정의는 본문을 참고 바람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주: 1) 좌측의 그래프는 2011~2017년의 보험료(천 억 원), 우측은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임(%) 2) 막대의 색상이 옅을수록 최근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4. 기업규모별 보험수요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한 리스크의 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리스크관리 방법은 기업의 생산물 및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대기업 의 경우 비교적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기업활동에 내재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 및 평가하고, 보험 이외의 리스크관리 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하에서 는 기업의 보험수요가 기업규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가. 보험수요

기업경영분석통계는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신고된 법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외는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관찰기간 동안 중소기업 의 매출액과 보험료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매출액보다는 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여 중 소기업의 보험의존도가 커졌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5.7%씩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매출액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은 2011년 전체 매출액의 36%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41.5%를 차지한다. 매출 액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중소기업의 보험료는 전 기간에 걸쳐 대기업보다 높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69.6%를 차지한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중소기 업의 보험료는 연평균 10.7%씩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이 2011년 0.45%에서 2017년 0.6%로 증가하였다.

〈표 II-25〉 기업규모별 보험료

(단위: %)

Ξ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매출액	대기업	2,103	2,262	2,290	2,316	2,082	2,088	2,335	1.8
대물역 (조 원)	중소기업	1,183 (36.0)	1,189 (34.5)	1,222 (34.8)	1,255 (35.1)	1,507 (42.0)	1,580 (43.1)	1,657 (41.5)	5.7
보험료	대기업	37,675	42,273	43,991	46,842	40,793	40,958	43,226	2.3
(억 원)	중소기업	53,715 (58.8)	59,022 (58.3)	63,315 (59.0)	69,920 (59.9)	86,870 (68.0)	93,609 (69.6)	99,098 (69.6)	10.7

주: 1)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을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2) CAGR은 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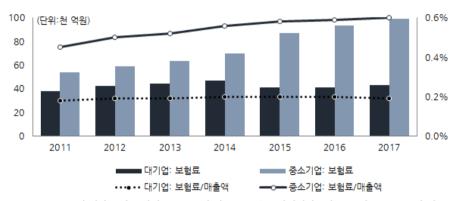
#### 〈표 Ⅱ-26〉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기업	0.18	0.19	0.19	0.20	0.20	0.20	0.19
중소기업	0.45	0.50	0.52	0.56	0.58	0.59	0.60

주: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을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그림 Ⅱ-10〉 기업규모별 보험료와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주: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을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 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나. 산업별 보험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의 가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규모별로 리스크관리 기법도 상이하겠지만, 기업규모별로 진출산업 또는 주력산업이 상이하여 기업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형도 다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규모별 산업구조의 차이를 확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험수요가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살펴본다.

## 1)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2011~2016년 기간 동안 대기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1.8% 증가하였지만,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표 II-27〉참조). 대기업의 매출액 구성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제조업이 전체 대기업 매출액의 59.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16.1%, 건설업 7.6%, 운수창고업 5.5%, 정보통신업 5.2% 순이다. 중소기업 역시 제조업의 매출액 구성비가 37.1%로 가장 높지만, 대기업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표 Ⅱ-27〉 대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1~16 CAGR
A01	0.0	0.0	0.0	0.1	0.1	0.1	0.0	-2.9
A03	0.1	0.1	0.1	0.1	0.1	0.1	0.1	-0.7
В	0.2	0.2	0.1	0.1	0.1	0.1	0.1	-3.8
С	57.6	59.8	60.7	60.8	59.3	57.6	59.0	-1.7
Е	0.1	0.1	0.1	0.2	0.2	0.2	0.1	-3.0
F	7.7	6.6	5.9	5.8	6.9	7.2	7.6	9.0
G	13.9	14.1	14.8	14.9	14.9	15.4	16.1	1.8
Н	5.2	5.5	5.2	5.3	5.0	5.2	5.5	-2.1
I	0.8	0.7	0.7	0.8	0.9	1.0	0.8	3.1
J	6.3	4.8	4.5	4.6	4.8	4.9	5.2	3.1
L	3.6	3.7	3.7	3.3	3.6	4.1	3.3	3.0
M	1.6	1.6	1.7	1.8	2.0	1.8	0.6	-15.7
N	1.4	1.2	1.1	1.0	1.0	1.1	0.6	-8.9
Р	0.3	0.2	0.2	0.2	0.2	0.2	0.1	-13.6
R	1.3	1.2	1.1	1.0	1.0	1.0	0.9	-2.5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sup>3)</sup> CAGR은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2011~2016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5.7% 증가하였다(〈표 Ⅱ-28〉 참조).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동기 간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워 및 임대서비스업 등의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산업 별 매출액 구성비는 제조업 다음으로 도소매업 29.3%, 건설업 13.4%, 부동산업 4.4%, 운수창고업 4.0%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도 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II-28〉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구성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1~16 CAGR
A01	0.3	0.3	0.4	0.4	0.4	0.4	0.5	10.7
A03	0.1	0.1	0.1	0.1	0.1	0.1	0.1	-2.8
В	0.2	0.2	0.2	0.2	0.2	0.2	0.2	3.2
С	40.0	41.1	41.2	39.8	39.2	39.2	37.1	3.2
Е	1.0	1.0	1.1	1.0	1.0	1.0	0.8	0.7
F	16.1	14.2	13.5	13.7	14.1	14.1	13.4	6.5
G	30.2	31.1	31.7	32.2	31.9	31.8	29.3	4.3
Н	4.3	4.3	4.2	4.2	4.4	4.4	4.0	4.6
I	0.4	0.5	0.5	0.5	0.6	0.6	0.8	15.7
J	3.1	3.0	2.9	2.9	3.0	3.0	3.2	8.8
L	1.7	1.3	1.1	1.2	1.2	1.3	4.4	42.1
M	1.6	1.6	1.5	1.7	1.9	1.8	2.6	18.2
N	0.9	1.2	1.5	1.7	1.9	2.0	2.8	20.0
P	0.1	0.1	0.1	0.1	0.1	0.1	0.4	46.6
R	0.1	0.1	0.1	0.2	0.2	0.2	0.4	33.9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3) CAGR은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주: 1)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기타는 농업, 어업, 광업, 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기준으로 작성됨 3) CAGR은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부석」, 각 연도

### 2)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대기업은 2011~2016년 기간 동안 정보통신업, 농업, 건설업 등에서 보험료가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보험료가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표 II-29〉참조). 대기업의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22.1%, 운수창고업 9.7%, 정보통신업 7.8%, 도소매업 5.7%, 부동산업 4.9%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 〈표 II-29〉 대기업의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1~16 CAGR
A01	0.0	0.0	0.0	0.1	0.1	0.1	0.0	12.4
A03	0.4	0.4	0.4	0.5	0.5	0.5	0.3	4.1
В	1.1	1.1	1.1	1.1	0.9	0.8	0.9	0.3
С	38.9	40.3	41.7	38.5	38.2	38.9	43.6	0.5
Е	0.3	0.4	0.4	0.5	0.5	0.5	0.5	3.0
F	20.6	21.6	19.7	17.9	19.3	18.4	22.1	5.9
G	4.8	5.7	6.0	6.4	5.8	6.2	5.7	2.3
Н	13.2	9.0	9.7	10.2	9.2	9.4	9.7	0.2
I	1.1	1.1	1.1	1.1	1.1	1.2	1.1	0.4
J	2.9	2.3	2.8	8.0	8.7	7.3	7.8	22.4
L	5.4	6.8	6.7	6.0	6.3	7.4	4.9	-0.2
M	3.4	3.5	3.8	4.3	4.0	3.6	1.1	-17.9
N	6.5	6.1	5.0	4.4	4.2	4.6	2.1	-11.3
Р	0.4	0.4	0.4	0.4	0.4	0.4	0.0	-24.2
R	1.0	1.1	1.1	0.8	0.8	0.8	0.3	-25.0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페기물처리 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은 2011~2016년 기간 동안 모든 산업에서 보험료가 증가하였다(〈표 Ⅱ -30〉 참조). 특히,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보 험료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3.2%, 건설업 21.7%, 도소매업 11.9%, 운수창고업 11.6%, 임대서비스업 6.6%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3) CAGR은 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표 II-30〉 중소기업의 산업별 보험료 구성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1~16 CAGR
A01	0.2	0.3	0.3	0.3	0.3	0.4	0.4	18.7
A03	0.4	0.4	0.4	0.4	0.3	0.3	0.3	3.0
В	0.6	0.5	0.5	0.4	0.4	0.4	0.3	5.2
С	35.1	34.8	35.5	35.6	35.1	35.3	33.2	9.6
Е	1.9	2.0	1.9	1.9	1.8	1.8	1.7	9.1
F	24.5	24.8	23.4	23.1	23.6	23.8	21.7	10.8
G	11.3	11.4	12.0	12.2	12.2	12.4	11.9	11.8
Н	15.7	15.3	14.6	13.8	13.3	12.5	11.6	5.9
I	0.4	0.5	0.6	0.6	0.6	0.7	0.9	22.1
J	2.6	2.6	2.5	2.6	2.7	2.7	2.8	14.2
L	1.7	1.5	1.4	1.5	1.5	1.6	4.0	39.1
M	2.6	2.6	2.6	2.6	2.6	2.7	3.8	21.3
N	2.8	3.2	4.1	4.7	5.1	5.2	6.6	22.0
Р	0.1	0.1	0.1	0.1	0.1	0.1	0.4	49.8
R	0.1	0.1	0.2	0.2	0.2	0.2	0.5	34.5

-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2) CACR 2 매출에이 여덟그 조기 2이며 토게지게역이 이고서오, 인체 2011~2016년 2, 기즈 0로 하
- 3) CAGR은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그림 II-12〉 기업규모별·산업별 보험료 구성비(2017년)



- 주: 1)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기타는 농업, 어업, 광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
  -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 3) CAGR은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며 통계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1~2016년을 기준으로 함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3)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

대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2017년 기준 광업이 3.71%로 가장 높 고, 임대서비스업 1.08%, 어업 1.00%, 하수폐기물처리업 0.74%, 건설업 0.58%, 농업 0.4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39%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Ⅱ-31〉 참조). 제조 업 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2017년 기준 0.13%에 불과하고 2011년 이 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표 Ⅱ-31〉 대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01	0.16	0.29	0.35	0.33	0.30	0.34	0.43
A03	0.85	0.95	1.29	1.21	0.67	1.07	1.00
В	2.21	2.62	2.33	2.14	1.90	2.73	3.71
С	0.13	0.12	0.13	0.14	0.15	0.14	0.13
Е	0.65	0.56	0.58	0.66	0.86	0.88	0.74
F	0.62	0.60	0.56	0.54	0.59	0.54	0.58
G	0.08	0.08	0.08	0.09	0.07	0.08	0.08
Н	0.35	0.37	0.36	0.38	0.36	0.40	0.33
I	0.28	0.25	0.25	0.24	0.26	0.25	0.25
J	0.12	0.34	0.36	0.31	0.30	0.27	0.18
L	0.34	0.36	0.35	0.38	0.31	0.29	0.12
M	0.41	0.45	0.41	0.41	0.35	0.36	0.39
N	0.86	0.84	0.81	0.89	0.73	0.76	1.08
P	0.36	0.39	0.37	0.43	0.10	0.19	0.20
R	0.19	0.17	0.16	0.17	0.06	0.05	0.07
전체	0.18	0.19	0.19	0.20	0.20	0.20	0.19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0.0%

A01 A03

C

E F

G



〈그림 Ⅱ-13〉 대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표 II-32〉참조). 2017년 기준 어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광업, 하수폐기물관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2017년 기준 0.54%로 대기업(0.13%)보다 높으며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 〈표 Ⅱ-32〉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01	0.40	0.46	0.45	0.51	0.53	0.57	0.62
A03	1.68	1.83	1.95	2.10	2.07	2.24	1.91
В	1.12	1.24	1.11	1.23	1.27	1.23	1.42
С	0.39	0.44	0.46	0.50	0.51	0.53	0.54
Е	0.82	0.93	0.95	1.04	1.18	1.22	1.16
F	0.78	0.84	0.86	0.94	0.93	0.96	0.96
G	0.17	0.19	0.20	0.22	0.23	0.24	0.24
Н	1.59	1.61	1.57	1.60	1.65	1.69	1.66
I	0.50	0.52	0.54	0.60	0.66	0.66	0.71
J	0.40	0.44	0.46	0.50	0.50	0.51	0.54
L	0.56	0.59	0.68	0.68	0.52	0.51	0.28
M	0.76	0.75	0.72	0.83	0.83	0.87	0.89
N	1.27	1.36	1.38	1.44	1.37	1.38	1.67
Р	0.57	0.60	0.55	0.58	0.57	0.63	0.68
R	0.63	0.46	0.74	0.72	0.64	0.64	0.64
전체	0.45	0.50	0.52	0.56	0.58	0.59	0.60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up>2) 2011~2016</sup>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그림 Ⅱ-14〉 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주: 1) A01 농업, A03 어업, B 광업,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2011~2016년 기간 동안은 산업이 KSIC 9차 기준으로 분류·작성되었으며, 2017년은 KSIC 10차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5. 소결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및 동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보험수요가 GDP 또는 가계부문의 보험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한 반면, 가계부문의 보험수요와 GDP는 연평균 3.9%, 4.5%씩 증가하였다. 가계보다는 산업의 보험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전체 보험수요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37%에 달한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도 2011년 0.28%에서 2017년 0.36%로 증가하였다.

둘째, 지출보험료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이 전체 보험료의 약 34%를 차지하고, 건설업이 24%,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10%를 차지한다. 2011~2016년 기간 동안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의 연평균 보험료증가율은 6% 미만인데 반해, 농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보험료가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다.

셋째,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광업, 임대서비스업,

어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은수창고업, 건설업 순으로 높으며, 대부분의 산업 에서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 불과하다.

넷째, 기업보험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보험의존도는 빠른 속도 로 심화되고 있다. 총 보험료, 보험료 증가율,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측면에서 중소 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보험수요를 보인다. 중소기업의 보험료는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7% 증가하여 2017년 9조 9.098억 원에 달한 반면, 대기업의 경우 연평 균 2.3% 증가하여 2017년 4조 3,226억 원에 불과하다. 법인세 신고기업이 지출한 전 체 보험료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본 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및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 펴보았다. 상기 분석을 통해 기업의 보험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산업별·산업특성 별·기업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보험 현황 및 동향 이 관찰되는 이유, 즉 기업의 보험수요를 설명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술통계량을 이용한 보험수요 분석의 경우 간결한 방법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유한 특성, 거시경제적 상황 등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한계를 가진다. 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기업의 보험 수요 결정요인을 면밀히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 Ⅲ장에서 논의한다.

# Ⅲ.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는 무엇인가? 국내기업의 보험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다. 기업이 보험을 이용하는 주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및 이해는 관련 정책이나 경영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먼저, 1절에서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을 고찰하고, 2절에서는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검증한다. 3절에서는 추정결과를 풀이하고, 4절에서는 분석결과의 정책적·경영전략적 함의를 논의한다.

# 1.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이론과 분석의 필요성

# 가.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보험학계의 오랜 관심사였고, 그 결과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기업의 보험수요에 관한 전통적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 및 경영자의 리스크회피 성향과 리스크의 집단화(Risk Pooling)에 따른 효율성 때문에 보험을 구입한다. 리스크의 집단화로 인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는 기대손실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이 보험을 구입할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기업의 보험수요를 시장의 불완전성과 상품시장의 불완전 경쟁에서 찾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 1) 시장의 불완전성 동기

기업이 얻는 수익의 원천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거나 혹은 재무적 곤경을 가져올 수 있기에, 기업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노출된 리스 크를 적절히 헷지한다. 보험은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 크를 헷지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Mayers and Smith(1982)는 보험을 재무전략의 한 수 단으로 간주하고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설명하였다. 보험을 단 순히 리스크 전가·경감·제거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우랑한 투자에 필요한 혀금흐름 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현대재무이론을 원용 하여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설명하였다.

일찍이 Modigliani and Miller(1958)는 세금 및 거래비용과 같은 거래마찰적 요인과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의 차입능력이 동일한 완전시장 가정하에 서는 보험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정책이 기업의 리스크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개인도 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다 면 기업의 투자정책에 변화가 없더라도 투자자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 써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완전시장에서는 기업이 보험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Modigliani and Miller(1958) 이론의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거래비용, 세금, 대리비용, 파산비용 등 마찰적 요인 등이 존재하고 개인과 기업의 차입능력은 현저히 다르다. 이처럼 시장의 불완전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는 기업가치 를 상승시킬 수 있다(Nance et al. 1993). 예를 들어, 현실의 개인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지식 및 정보의 제약하에 있다. 주주들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 험비용이 높아 주주 스스로 자가보험이나 리스크를 분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주들 은 기업이 나서서 리스크를 헷지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재무부실비용, 세율구조의 볼 록성(누진세율구조), 대리인비용에서 비롯되는 과소투자비용과 자산대체문제 등이 존

재하는 불완전 시장에서 헷징은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이다(Mayers and Smith 1982, 1987; Smith and Stulz 1985).

#### 가)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재무부실비용(Financial Distress Cost)이 존재할 경우. 헷징은 미래 현금흐름의 변 동성을 줄여 기업이 재무부실 상태에 이를 확률을 낮춤으로써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Mayers and Smith 1982, 1987; Smith and Stultz 1985). 18) 재무부실의 기대비 용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부실에 빠질 확률을 재무부실로 인한 비용과 곱한 값이다. 재무부실비용은 파산의 법적 처리나 관리에 따른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매출액 감소. 기업이미지 훼손. 주요직원의 이탈 및 고용비용의 증대. 높은 금융비용의 부담, 기업자산의 정상가격 이하 매각 등 가접비용을 포함한다. 보험은 기업의 재무부 실 확률을 낮춤으로써 재무부실의 기대비용을 낮추다. 이때 재무부실의 기대비용이 감 소하는 정도는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재무부실에 빠질 확률과 기업이 재 무부실에 봉착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과 양(+)의 함수관계를 가진다. 재무부실 확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파산으로 인한 비용이 높을수록 보험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기대부실 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험을 구입할 유인 이 크다. 재무부실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부 채비윸과 관련된 실증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Nance et al.(1993)은 부채비윸과 혯징 간 에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보고한 반면, Hoyt and Khang(2000), Regan and Hur(2007), Nguyen and Faff(2002)는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 및 헷징이 증가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Graham and Rogers(2002)에 따르면 재무부실 확률이 높은 기업이 헷징을 더많이 하고 헷징이 다시 재무부실 확률을 높이는 상호작용관계가 헷징과 레버리지 사이에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실 확률을 줄이기 위한 헷징유인이 존재하는 동시

<sup>18)</sup> 기업의 재무적 부실(Financial Distress)은 기업이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함. Purnanandam(2008)은 재무적 부실과 파산(Insolvency)을 구분하여 재무적 부실을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손실로 현금흐름이 낮은 상태로 정의함

에 부채조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헷징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헷징이 이익변동성 또는 재무부실 확률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부채조달능력을 제고하면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무부실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나) 대리인비용

보험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MacMinn 1987; Mayers and Smith 1987). 대리인비용은 재무압박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가 상이한 입장에서 야기되는 역선택의 결과로, 이러한 역선택은 과소투자와 자산대체문제, 두 가 지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채 권자에게 대부분 귀속되므로 양(+)의 순혀가가 예상되는 투자안임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는, 이른바 과소투자(Under-investment)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과소투자 문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보다 심각하다. Mayers and Smith(1987)에 따르면, 성장 성 있는 투자기회를 보유한 기업은 외부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자금을 조달한 경우 성 장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즉 과소투자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할 유인이 있다. 보험가입을 통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고 낮아진 리스크만큼 채권자들이 요구하 는 자본비용은 낮아짐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 간의 유인이 다르므로 자산대체비용 및 과소투자가 발생한다(Culp 2001).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채권 자보다는 주주들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안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 위험한 투자의 잠재 적 수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반면, 잠재적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영자 는 음(-)의 순현가를 가진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동기를 가진다. 채권자는 그러한 기회 주의적 행동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요구수익률을 부 과할 유인이 있다. 이처럼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하면 투자안의 순현가는 감소하게 된 다. 투자안의 순현가 감소는 리스크가 낮은 투자안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안으로 대체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산대체비용으로, 결국 저투자를 초래한다. 채권자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자산 또는 투자안의 현금흐름에 대해보험가입을 요구할 유인을 가진다. 투자안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채권자가 손실을입는 상태, 즉 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자본비용은낮아지고 결국 투자안의 순현가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의 부도 증가하게 된다.

#### 다) 세율의 누진성

세금함수가 볼록성을 보이는 경우 과세이익의 변동성은 기대세금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기업은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헷징을 할 유인이 있다(Smith and Stultz 1985). 19) 볼록세금함수(Convex Tax Function)는 법인세율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소득단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과세대상이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기대세금부담이 커진다. 법인세체계의 누진성이 확대될수록, 즉 과세소득보다 세금이 더 증가하면 헷징의 유인도 커진다.

보험의 절세효과는 세율구조의 볼록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헷징에 의한 이익 변동성 또는 재무부실 확률 감소는 기업의 부채조달능력을 증가시켜 부채와 관련된 세금효과를 수반한다(Graham and Rogers 2002). 기업은 헷징을 통해 이익의 변동성 을 줄이거나 재무부실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부채조달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부채조달 능력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고 기업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이자비용 공제에 따른 세금절감효과의 유인이 크기 때문에 자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채를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 라) 계약비용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상대적 효율성은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리스크관리자로서 보험

<sup>19)</sup> 이러한 세전이익의 변동성 감소효과는 보험비용의 손비처리 가능성에 의한 절세효과와는 다름

회사의 계약 및 손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은 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여 준다(Mayer and Smith 1982; Skogh 1989). 그러나 리스크관리자로서 보험회사의 상 대적 효율성도 시장의 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보험수요 동기로서의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다(Shapiro and Titman 1985).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은 거대기업의 시대에 보험회 사의 리스크관리 전문성이 반드시 기업의 전문성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보험회사보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경영활 동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Ⅱ장 에서 관찰된 대기업의 낮은 보험의존도는 이러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 2) 전략적 상호작용 동기

전술한 이론들은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를 주주 또는 경영자의 리스크회피 성향, 리 스크관리능력의 상대적 비효율, 재무적 관점의 전략적 의사결정 등 기업내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기존 연구의 접근방식과 달리, Ashby and Diacon(1998), Seog(2006), 그리고 Liu and Jung(2011)은 실제 시장이 소수의 기업이 전략적으로 경 쟁하는 불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보험이 기업 간 상호의존성 및 상호작용 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기업의 보험구입 결정이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상호작용, 즉 전략적 동기에 기인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Seog(2006)은 보험 담보비율이 증가하면 해당기업의 산출량은 증가하지만 경쟁기업의 산출량은 감소함 을 보이고, 이를 보험의 전략적 효과로 표현하였다. 또한 보험의 전략적 효과가 보험비 용보다 작지 않는 한 기업은 항상 보험을 구입한다. 전술한 보험의 전략적 효과에 따르 면, 경쟁기업에 비해 충분히 높은 보험담보비율을 선택한 기업은 전략적 효과의 비대 칭성으로 인해 경쟁기업을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 간 유동성 제약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보험이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경쟁기업을 퇴출시키는 약탈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나. 분석의 필요성

# 1) 기존 실증연구의 검토 및 한계

그동안 기업보험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Hoyt and Khang(2000), Regan and Hur(2007), 그리고 Michel-Kerjan et al.(2015)은 설문조사자료 또는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물보험수요에 대한 실증연구를 이어갔다. Hoyt and Khang(2000)은 1989년 기준 18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부채비율, 시장가치, 소유구조 등 기업 특성변수가 기업의 재물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Regan and Hur(2007)은 1990~2001년 기간 동안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401개(기업-연도 관측치 총 4.812개)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지배구조, 규제, 부채비율, 누적감가상각비율, 수출비중, 과거 재물손실경험 등 기업 특성변수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허연·허성수(2003)는 동일자료(단, 분석기간 1990~2000년)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Michael-Kerjan et al.(2015)은 2007년 미국에 본사를 둔 141개 기업의 테러보험과 재물보험 계약자료 및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테러보험과 재물보험 계약자료 및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테러보험과 재물보험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보험의 전략적 수요 동기를 검증한 연구도 있다. Liu and Jung(2011)은 1995~2008 년 기간 동안 미국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경쟁이 기업의 재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일반기업의 보험계약자료를 취득할 수 없어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의 보험수요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상품시장과 달리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진입 및 퇴출, 출재, 수재 등에 있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의 보험수요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불어 규제산업에 속하는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 결정요인과 일반기업의 보험구입 결정요인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송윤아(2019)는 KSIC 제조업 세세분류 439개 산업에 속하는 10,908개 기업의 2007~2015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보험의 전략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세율의 누진성,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던 선행연구는 추가 분 석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분석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송윤아(201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산업경쟁도나 기업 특성변수들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코스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인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이미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규모, 경영성과,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로, 자본 및 부채조달능력이나 리스크관리를 비롯한 재무전략이 비상장기업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년 기준 중소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전체 기업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코스피 상장기업만을 대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둘째, Michel-Kerjan et al.(2015)이 분석모형에서 산업효과를 통제하고 테러보험과 재물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검증한 것을 제외하면, 기업의 보험수요를 산업별로 분석하거나 산업효과를 통제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 및 수준은 산업별로 이질적이다.

셋째, 세율구조 누진성의 보험수요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 행연구는 세율구조의 볼록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보험료의 손비처리에 의한 절세가능 성이 기업의 보험수요를 야기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Regan and Hur 2007; 송윤아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율구조의 누진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세율구조 누진성과 보험수요의 관계를 검증한다.

넷째, 거시경제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를 찾아 보기 어렵다. 거시경제환경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형 및 수준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우 리나라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관련 변수와 기업의 보험수요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가 크다.

〈표 Ⅲ-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

선행연구	분석자료	종속변수	주요변수	분석방법
Hoyt and Khang (2000)	1989년 15개 산업 내 18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자료	부보가능자산 가치 대비 재물보험료	기업규모, 지배구조, 규제, 부채비율, 장부가치비율, 누적감가상각비율, 운전자본비율	횡단면 분석
허연·허성수 (2003)	1990~2000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234~421개의 재무자료	Log(보험료)	매출액순이익률, 제세공과금, 법인세, 유형고정자산회전율, 매출액순이익률, 부채비율, 소유구조, 관리기업 여부, 제조업 여부	횡단면 분석
Regan and Hur(2007)	1990~2001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401개의 재무자료	Log(토지를 제한 유형자산 대비 보험료 비율)	기업규모, 지배구조, 규제, 부채비율,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 누적감가상각비율, 수출비중, 재물손실경험	횡단면 분석
Michel- Kerjan et al. (2015)	2007년 미국에 본사를 둔 141개 기업의 테러보험과 재물보험 계약자료 및 재무자료	테러보험· 재물보험의 부보율	부보가치, 단위보험료, 자기부담금, 장·단기부채상환능력, 영업이익, 유동성, 산업더미, 지역더미	횡단면 분석 2SLS
Liu and Jung (2011)	1995~2009년 기간 동안 2.996개 미국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출재 자료	원수·수재 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비율	HHI, CR4, 시장규모, 재보험 공급 측면 특성변수, 출재보험회사 특성변수	횡단면 분석
송윤아 (201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부문 세세분류 439개 산업에 속하는 10,908개 외감기업의 2007~2015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	매출액 대비 보험료	HHI, CR3, Markup, 기업규모, 부채비율, 유형자산비율, 제세공과금비율, 시장규모, 대규모기업집단 여부, 상장 여부	패널 분석, 동태 패널 분석

# 2) 분석내용

본 연구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 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와 거시경제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재무부실 확률, 세율의 누진성, 그리고 성장기회를 보다 적절히 포착 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시장 불완전 요소의 보험수요효과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시장 불완전 요소들이 기업의 리스크관리 대체수단으로서 파생상품 이용이 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만, 전통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보험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전략을 비롯한 재무전략은 거시경제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제조업은 우리나라 2014년 총 산출액 기준 48.5%를 차지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거시경제 특성에 민감할 개연성이 크다.

# 2. 분석방법

# 가. 자료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KSIC 10차 대분류 기준 18개 산업, 중분류 기준 71개 세부산업에 속하는 29.216개 비상장 외부감사기업의 1999~2017년 기가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 부감사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또는 종업워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은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워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워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③ 직 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워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이다. 이러한 요건을 감안하면, 비상장 외부감사대상기업 집단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20)

<sup>20) 「</su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 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음. 2017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기업 은 29,263사이며, 외감대상 중 상장법인은 2,167사임. 2017년 12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모두 2.195사이나, 이 중 28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외국법인, 자본시장 법상 투자회사 등에 해당되어 제외됨

금융보험업은 영업상의 특성과 재무제표 구성항목도 다를 뿐 아니라 동일 계정과목이라 할지라도 여타 산업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였고, 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12월 결산 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분석자료는 기업·연(Firm-year)기준 168,989개 관측치로 구성되며, 불균형패널이다. 구체적으로, KSIC 대분류 기준농업·임업·어업 830개, 광업 508개, 제조업 91,018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918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1,499개, 건설업 17,862개, 도·소매업 22,770개, 운수 및 창고업 5,445개, 숙박 및 음식점업 2,284개, 정보통신업 7,503개, 부동산업 10,070개, 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3,147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 임대서비스업 1,671개, 공공행정및 국방및 사회보장행정 8개, 교육서비스업 307개, 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 34개,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53개, 협회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62개로 구성된다.

#### 나. 모형 및 변수

본 연구는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정효과패널모형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sup>21)</sup> 고정효과패널모형은 설명변수와 기업의 미관찰 이질성에 해당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이 모형은 시간에 따른 변동분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효율적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불변 변수는 모두 제거된다. 1절에서 살펴본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본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eta_0 + eta_{1-2}$$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_{i,t} + eta_3$ 세율의 누진성 $_{i,t} + eta_4$ 대리인비용 $_{i,t} + eta_{5-6}$ 이익변동성 $_{i,t} + eta_{7-9} X_{i,t}$  〈수식 1〉 $+ eta_{10-11}$ 거시경제환경 $_t + u_i + heta_t + \epsilon_{i,t}$ 

여기에서 i는 기업을, t는 연도를 나타낸다.  $y_i$ 는 종속변수를 나타낸다.  $X_{i,t}$ 는 기

<sup>21)</sup> Pooled OLS나 확률효과패널모형(Random Effects Model) 대비 각각 라그랑지(Breusch-Pagan Lagrange Multiplier) 검정과 하우스만 검정을 통과하여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선택하였음

업 i의 관찰가능한 특성변수들로 이루어진 t시점 설명변수 벡터이다.  $u_i$ 는 기업 i에 대한 고정효과, 즉 기업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 중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heta_{*}$ 는 관찰되지 않는 시간 특성으로, 기업의 보험수요가 거시경제변수, 규제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효과를 통제한다.  $\epsilon_{i,t}$ 는 평균이 0이고 동분산성을 만족하며 모든 i,t에 대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 다. 모든 변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기업의 보험수요를 측정하는 척도는 기업이 헷징하려고 하는 리스크노출규모(Risk Exposure)에 대한 보험료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보험으로써 헷징하려고 하 는 리스크노춬금액을 정확히 사춬하는 것은 현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매춬액 을 리스크노출도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한다.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자산, 유형자산 등 여타 재무지표에 비해 기업의 리스크노 출금액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보 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 우 점포휴업 일당을 특약 등으로 지급한다.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으로 포착되는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화재로 인한 생산중단이나 근로자 상해 등 다양 하며 이는 생산량, 즉 매출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배상책 임, 영업배상책임, 생산자배상책임 등 각종 배상책임리스크나 리콜보험,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규모도 생산량 및 매출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보험수요 결 정요인 분석에 사용하는 종속변수로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에 100을 곱한 값을 사용한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평균은 0.17%이다.22)

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변수들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이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로 선택하였다. 재무부실 확률은 Altman et al.(1995)의 재무부실 판별모형에 근거한 부실리스크더미로, 재무부실비용은 마진율로 측정하였다. 기대세금 부담은 법인세 차감전 소득을 법인세비용으로 나눈 평균법인세율로, 과소투자문제 등 대 리인비용은 성장기회 변수로, 이익변동성은 감가상각비비율과 인건비비율로 측정하였

<sup>22)</sup> 이는 Ⅱ장의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통해 살펴본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2017년 기준 0.6%)에 비해 낮은 수치임

다. 그 외 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변수로 유형자산비율, 기업규모, 업력을 사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로는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을 사용한다. 〈수식 1〉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표 Ⅲ-2〉에 나열되어 있다.

$$\begin{split} y_{i,t} &= \beta_0 + \beta_1 \\ + \beta_4 \\ \text{성장기회}_{i,t} + \beta_5 \\ \text{감가상각비비율}_{i,t} + \beta_6 \\ \text{인건비비율}_{i,t} \\ + \beta_7 \\ \text{유형자산비율}_{i,t} + \beta_8 \\ \text{로그자산} + \beta_9 \\ \text{업력}_{i,t} \\ + \beta_{10} \\ \text{GDP} \\ \text{성장률}_{i,t} + \beta_{11} \\ \text{원 • 달러절상률}_{i,t} + u_i + \theta_t + \epsilon_{i,t} \end{split}$$
 〈수식 2〉

# 1)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재무부실의 기대비용이 커질수록, 즉 재무부실에 이를 확률 또는 재무부실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이 커질수록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진다.

#### 가) 재무부실 확률

본 연구에서는 Altman의 재무부실 판별모형 지수를 재무부실 확률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다. Altman(1968)은 상장기업의 재무리스크수준을 측정하는 Z-score를 제안하 였으며. 시장가치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비상장기업의 도산예측 및 평가에 이용하기 위하여 Z-score모형을 변형한 모형을 1983에 제시하였다. 나아가 Altman et al.(1995) 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부도확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식 2〉의 K-score 모형을 개 발하였다. 이는 K-score가 -2보다 작으면 부실지대(Distress Zone), -2보다 크고 0.75 보다 작으면 회색지대(Grey Zone), 0.75보다 크면 부실리스크가 낮은 안전지대(Safe Zone)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K-score가 부실 및 회색지대에 속하면 1의 값을 갖 는 부실리스크더미를 재무부실 확률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였다. 전체 관측치의 91.5% 는 안전지대에, 나머지는 재무부실·회색지대에 속한다. 부실리스크 변수는 매출액 대 비 보험료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0.12)를 보인다.23)

<sup>23)</sup> 변수 간 상관관계는 〈부록 표 1〉에 보고함

$$K-score_{i,t} = -17.862 + 1.472 \ln(\text{자산})_{i,t} + 3.041 \ln(\text{매출액/자산})_{i,t} + 14.839 (이익잉여금/자산)_{i,t} + 1.516 (자본/부채)_{i,t}$$
 〈수식 3〉

전술한 재무부실 확률의 주요 지표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 확인 차원에서 자본잠식 여부를 재무부실 확률의 보완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누적적자가 커져 그동안 발생했던 이익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했던 자본금까지 잠식되어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상황이다. 자본 잠식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요건 중 하나로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은 재 무적으로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자본 대비 자본금의 비율이 0보다 작으면 완전자 본잠식,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으면 부분잠식 발생을 의미한다. 전체 표본의 16.7%에 해당하는 28.171개의 관측치가 자본잠식을 나타낸다. 이 중 완전자본잠식은 14.641개 로 전체 표본의 8.7%를 차지한다.

부채가 많아 이자지급의무의 이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재무부실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능력을 재무부실 가능성의 또 다른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김대식 외. 2005). 이자상환능력이 낮을수록 보험가입 동기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자보상불능 변수는 이자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이익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자보상불능의 평균은 0.39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0.12)를 보인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안정성 지표로서 완전자본 잠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 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 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 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 불능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0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이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부채비율 1)를 생성하여 재무부실 확률의 보조적 대리변수로 사용하 였다. 표본의 50.3%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며, 부채부 실 더미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0.04)를 보인다.

〈표 Ⅲ-2〉 변수 구성 및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부실리스크	Altman K-score가 0.75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자본잠식	(자기자본/자본금)이 1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완전자본잠식	(자기자본/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재무 부실의		이자보상불능	(이자비용/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기대		부채비율 1	(부채/자본)이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1, 아니면 0		
기	비용		부채비율 2	부채/자본(단, 자본이 0보다 작으면 제외)		
업			부채비율 3	부채/자산		
특		재무부실 마진율 비용		매출액/매출원가		
성	세율의 누진성		평균법인세율	법인세비용/법인세 차감전 이익		
	대리인비용		R&D	R&D/매출액		
	이익변동성		이익변동성		감가상각비비율	감가상각비/자산
	(영업레버리지)		인건비비율	인건비/자산		
	유형자		산비율	유형자산/자산		
	로그자산		자산	ln(자산)		
	업력			기준연도-설립연도		
	거시겨제	] 트서	GDP성장률	실질 GDP성장률		
	거시경제 특성 원		원·달러절상률	전년말비 달러 대비 원화가치의 변동률		

# 나) 재무부실비용

기업이 부실에 이르게 될 경우 포기하는 수익, 즉 재무부실의 비용이 커질수록 보험 가입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수익 성이 높을수록 내부자금조달이 원활해져 기업의 재무부실리스크를 낮춰 리스크혯징 에 대한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 재무부실비용의 대리변수로 마진율을 사용한다. 마진 율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이다. 마진율이 높을수록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기 업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일 개연성이 있다. 마진 율의 평균은 각각 1.38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의 상관관계계수는 0.2이다.

	` -/ -		.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출액 대비 보험료(%)	0.171	0.185	0.001	0.892
부실리스크(더미)	0.086	_	0	1
자본잠식(더미)	0.17	_	0	1
완전자본잠식(더미)	0.09	_	0	1
이자보상불능(더미)	0.39	_	0	1
부채비율 1(더미)	0.503	-	0	1
부채비율 2	3.497	6.269	0.001	67.992
부채비율 3	0.647	0.290	0.001	1.95
마진율	1.383	0.649	0.772	9.040
평균법인세율	0.148	0.150	0	0.885
성장기회	0.007	0.089	0	25.016
 감가상각비비율	0.010	0.021	0	0.952
인건비비율	0.072	0.127	0	22.860
유형자산비율	0.346	0.273	0	0.999
로그자산	16.982	0.975	8.044	24.625
업력	15.227	10.715	1	97
GDP성장률	4.806	2.674	0.7	11.3
· ·				

〈표 Ⅲ-3〉 분석자료의 기술통계량

9.363

-25.7

15.2

1.063

# 2) 세율의 누진성

원·달러절상률

세금구조의 볼록성이 강할수록, 즉 법인세 체계의 누진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헷징 을 통해 기대세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세금효과의 볼록성 정도를 한 계세율에서 평균세율을 차감하여 측정하였다(Graham, 1996; 고종권·김영철 2012). 세금구조의 볼록성이 강화될수록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과 평균세율의 격차는 커지고 보험가입을 통한 기대세금 감소유인이 커진다. 24) 그러나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주: 기업수준 변수는 '기업-연도' 기준 관측치 168,989개, 거시경제변수는 19개 연도 기준으로 작성함. 다만, 부채비율 2와 부채비율 3은 '기업-연도' 기준 관측치 각각 152,673개, 167,295개 기준으로 작성함

<sup>24)</sup> 예를 들어, 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율이 20%이고 5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이 경우 소득이 400만 원인 A는 세금 80만 원, 한계세율 20%, 평 교세율 20%, 소득이 550만 원인 B는 세금 125만 원, 한계세율 50%, 평균세율 23%, 소득이 600만 원인 C는 세금 150만 원, 한계세율 50%, 평균세율은 25%, 소득이 800만 원인 D는 세금 250만 원, 한계세율은 50%, 평균세율은 31%임. 이 중에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차 가 가장 큰 B가 보험비용 또는 이자비용 공제를 통해 절세를 꾀할 유인이 가장 큼

경우 실제 세무조정 자료를 입수하기 이전에는 정확한 과세표준소득과 한계세율을 추 정하기 어렵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세율체계 누진성의 보험수요 효과를 분석한다. 평균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이익으로 나 누어 계산하였으며, 세전순이익이나 법인세가 음(-)인 경우에는 평균법인세율을 0으로 처리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율구조는 1999~2011년 기간 동안에는 한계세율이 두 개 의 구간으로만 구분되며 외감기업의 경우 대부분 동일한 한계세율 구간에 존재할 가능 성이 높다.26) 구체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이득이 0보다 큰 기업 중에서 1999~2007년 기간 동안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95.1%, 2008~2011년 기간 동안 2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80%. 2012~2017년 기간 동안 2억~200억 원인 기업은 84.3%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법인세 부과 대상 기업 중 적어도 80% 이상이 동일한 하계세윸구가에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하계세윸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간의 격차가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Mayers and Smith(1987)가 주장한대로 세율구조 누진 성의 보험수요효과가 존재한다면, 평균법인세율과 보험수요 가에는 음(-)의 추정계수 가 관찰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법인세율의 평균은 14.8%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0.08)를 보인다.

# 3) 대리인비용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는 과소투자무제와 같은 대리인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소투자문제는 성장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 러한 잠재적 과소투자비용의 감소를 위해 더 많은 혯징의 유인이 존재한다. 성장기회 가 많은 기업들은 주주와 채권자 간 충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소투자문제나 자산

<sup>25)</sup> 개념상 이익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전자는 회 계상 개념이고, 후자는 세법상 개념으로, 다소 다를 수 있음

<sup>26)</sup> 우리나라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1999~2007년 기간 동안은 과세표준별로 13~16%(1억 원 이하), 25~28%(1억 원 초과), 2008~2011년 기간 동안은 10~11%(2억 원 이하), 22~25%(2 억 원 초과), 그리고 2012~2017년 기간 동안은 10%(2억 원 이하), 20%(2억 원~200억 원), 22%(200억 원 초과)임

대체문제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헷징을 통한 효익이 더 클 수 있다. Hoyt and Khang(2000)은 성장기회를 장부가치비율, 즉 시가총액과 장부가 치부채의 합을 장부가치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성장기회가 클수록 보험에 가 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sup>27)</sup> Nance et al.(1993), Graham and Rogers(2002) 등은 투자기회를 대리하는 변수로 연구개발비 지출액,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 등을 이용하여 과소투자비용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 외감기업을 대상으 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하여 대리인비용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다. 연구개발비가 많은 기업이 향후 성장기회가 많으리라 예상하고 연구개발비를 매출 액으로 나누어서 성장기회를 사춬하다. 성장기회 변수의 평규은 0.007이며 매춬액 대 비 보험료와의 상관관계 계수는 0.03이다.

# 4) 이익변동성

이익변동성 증가는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수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익변동 성이 높아질수록 보험을 통한 리스크전가의 수요가 커진다. 이익변동성은 영업레버리 지로 측정할 수 있다. 영업레버리지는 기업의 영업비 중에서 고정영업비가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영업비 중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 이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고정비가 상승하면 손익분기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 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매출이 축소되면 변동비는 매출감소와 비례하여 줄지만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 어 영업손실이 확대되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 매출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 비도 증가하지만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빠르 게 상승한다. 영업레버리지가 높아지면, 즉 영업비용 중 고정비의 비중이 클수록 매출 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다. 결국, 영업레버리지가 높아지 면 이익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헷징할 유인을 가진다.

<sup>27)</sup> Regan and Hur(2007)은 저투자문제를 시가총액 대비 부채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추정 결과, 저투자문제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고정비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 업레버리지는 자산 대비 감가상각비의 비율과 인건비의 비율로 측정한다. 감가상각비 비율 평균은 0.01, 인건비비율 평균은 0.07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0.14, 0.09이다.

# 5) 기타 기업 특성

재무전략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 및 업력과 정보비대칭 사이에는 역관계가 성립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넓은 영업영역을 영위하므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 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성이 낮아 자본시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보다 용이하며 자본조달비용도 낮을 개연성이 있다. 파생상품 등 보험 이외의 리스크관리 기법 사용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지고 투하되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 지로,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행기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자본조달비용이 낮아 보험에의 의존도가 낮을 수 있다.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산에 로그를 취하 값을 사용하다. 로그자산과 업력의 평균은 각각 16.98. 15.23년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의 상관관계계수는 각각 -0.17, -0.006이다.

기계·건물·구축물 등 유형의 설비자산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물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자산 대비 유형자산의 비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다. 자사 대비 유형자산 비율의 평균은 0.35이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0.16)를 보인다.

# 6) 거시경제 특성

우리나라 기업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자본조달환경을 고려하면, GDP성장률, 원·달 러절상률 등의 거시경제변수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가 좋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매출액과 더불어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이 빠르게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며,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포기해야 하는 직·간접적 이익도 커지기 때문 에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원화가치가 절상 되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므 로 수출이 줄어든다. 워화 강세로 인한 워·달러 화윸 하락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싸진 원화로 해외에 내다 파는 상품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매 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워자재 가격 등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설비투자비용 부담도 완화돼 국내 설비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전자의 효과가 후자에 비해 크다면 워·달러절 상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는 낮아지고,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9~2017년 기간 동안 실질 GDP성장률 평균은 4.81%, 평 균 원·달러절상률은 1.06으로 나타난다. 거시경제변수와 개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 험료 비율 간 상관관계계수는 기업 특성변수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매출액 대비 보 험료 비율 간 상관관계계수는 GDP성장률이 -0.02, 원·달러절상률이 -0.01이다.

# 3. 추정결과

# 가.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표 Ⅲ-4〉는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기대세금부담,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한 요 소와 이익변동성 및 거시경제 특성이 개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고정효과패널모형을, 모형 (2)는 확률효과패널모형을, 그리고 모형 (3)은 Pooled OLS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4)와 모형 (5)는 각각 KSIC 대분류기준 산업더미를 추가한 확률효과패널모형과 Pooled OLS모형의 추정결과 이다. 각 연도별 시점더미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고정효과패널모형과 확률효과패널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하우스만 검정은 확률효과패널모형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우스만 검정량  $\chi^2$ 은 767.24로, 설명변수와 기업의 미관찰 특성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확률효과패널모형의 추정결과는 내생성 편의를 포함하므로 고정효과패널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평균은 1.91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langle$ 표 III-4 $\rangle$ 의 모형 (1)을 토대로 추정결과를 논의한다.

성장기회 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장기회 변수와 업력 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추정결과는 이론에 근거한 예측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부실리스크가 증가할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Altman의 K-score를 토대로 생성된 부실리스크더미변수 외에 재무부실 확률을 대리하는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자본잠식 여부, 완전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불능 여부, 부채비율 등을 재무부실 확률의 지표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질적으로 기본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III-5〉 참조). 이러한 추정결과는 기업이 재무부실 확률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가입한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마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보험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마진율은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기업이 포기해야 하는 재무부실비용으로, 높은 마진율을 누린 기업일수록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헷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28) 부채조달능력 제고가 보험구입의 보다 궁극적인 동기인지는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재무부실의 기대비용 절감이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임에는 분명하다.

평균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이 증가한다. 약 80%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한계세율 구간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균세율이 높을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금함수가 볼록할수록, 즉 누진적일수록 혯징유인이 강해짐을 시사한다.

<sup>28)</sup> 송윤아(2019)에서는 마진율의 추정계수를 보험구입여력 측면에서 해석하였으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재무부실비용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자산 대비 감가상각비 또는 인건비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은 증가한다. 감가상각비 또는 인건비는 영업레버리지의 대리변수로, 영업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이익변동성이 커진다. 이익변동성 증가는 리스크수준 증가를 의미한다. 따 라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이익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형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보험회사 등이 공급하는 전통적 보험상품의 피보험목적물 및 피보험 이익은 주로 건물, 기계·장비, 차량 등 유형의 자산으로, 유형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 높다. 기업규모와 보험수요 간 추정결과는 Ⅱ장에서 기업 경영분석통계를 통해 관찰한 내용, 즉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보험의존도가 높다는 사실과 부합하다.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원·달러절상률이 감소할수록 기업의 보험수 요는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거시경제환경은 기업의 리스크유형 및 수 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관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기회, 즉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로 측정된 대리인비용의 추정계수는 이 론모형에서 예측했던 대로 양(+)의 부호를 가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Hoyt and Khang(2000)은 성장기회를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의 비율 로 측정하여 과소투자비용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보험수요와 성장기회 간에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기업의 업력은 예상과 달리, 보험수요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신생기업일수 록 매출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비상장 외감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력에 따른 정보비대칭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보비대칭 감소에 따른 부채조달능력 제고효과와 부채조달비용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비상장 외감기업의 경우 업력이 높을수록 부채조달, 내부금융, 파생상품이용 등 대체헷징수단을 모색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기법인 보험 을 이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4〉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구분	기대 부호	(1) 고정효과 패널	(2) 확률효과 패널	(3) Pooled OLS	(4) 확률효과 패널	(5) Pooled OLS
부실리스크	+	0.049***	0.045***	0.040***	0.045***	0.034***
		(0.003)	(0.003)	(0.002)	(0.003)	(0.002)
마진율	+	0.021***	0.030***	0.050***	0.029***	0.047***
		(0.002)	(0.001)	(0.001)	(0.002)	(0.001)
평균법인세율	-	-0.036***	-0.034***	-0.030***	-0.034***	-0.030***
		(0.003)	(0.003)	(0.003)	(0.003)	(0.003)
성장기회	+	0.025	0.032*	0.046**	0.031*	0.047**
		(0.018)	(0.018)	(0.022)	(0.018)	(0.022)
감가상각비비율	+	0.797***	0.758***	0.686***	0.753***	0.738***
		(0.074)	(0.065)	(0.046)	(0.065)	(0.049)
인건비비율	+	0.067***	0.057***	0.059***	0.056***	0.064***
		(0.025)	(0.020)	(0.016)	(0.020)	(0.017)
유형자산비율	+	0.062***	0.089***	0.094***	0.084***	0.095***
		(0.005)	(0.003)	(0.002)	(0.004)	(0.002)
로그자산	-	-0.008***	-0.017***	-0.030***	-0.018***	-0.032***
		(0.002)	(0.001)	(0.001)	(0.001)	(0.001)
업력	-	0.007***	0.001***	0.001***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GDP성장률	+	0.015***	-0.000	-0.001***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원·달러절상률	_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		0.064***	0.388***	0.559***	0.367***	0.559***
		(0.020)	(0.020)	(0.010)	(0.023)	(0.011)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예
산업더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within R <sup>2</sup>		0.039	0.037	-	0.037	-
between R <sup>2</sup>		0.035	0.134	0.109	0.149	0.123
관측치		168,989	168,989	168,989	168,989	168,989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sup>2)</sup>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sup>3)</sup> 모형 (1)~모형 (3)는 각각 고정효과패널모형, 확률효과패널모형, 그리고 Pooled OLS를 적용함

<sup>4)</sup> 모형 (4)~모형 (5)는 KSIC 대분류기준 산업더미를 포함함

구분	(1)	(2)	(3)	(4)	(5)	(6)
자본잠식	0.014***					
	(0.002)					
완전자본잠식		0.014***				
		(0.003)				
이자보상 <del>불능</del>			0.035***			
			(0.001)			
부채비율1				0.005***		
				(0.001)		
부채비율2					0.0002***	
					(0.000)	
부채비율3						0.002
						(0.004)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예	예
within R <sup>2</sup>	0.033	0.034	0.045	0.033	0.043	0.037
between R <sup>2</sup>	0.028	0.026	0.028	0.028	0.026	0.026
관측치	168,989	168,989	168,989	168,989	152,673	167,295

〈표 Ⅲ-5〉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재무부실 확률

# 나. 산업별

기업은 자신이 속한 산업에 의해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의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산업별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노출 수준이나 유형이 상이한 반면, 동일 산업 내 기업들이 직면한 공통의 리스크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을 KSIC 대분류기준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았고 추정결과는 〈표 III-6〉과 〈표 III-7〉에 보고하였다. 추정결과, 보험수요 동기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부실리스크, 마진율, 평균법인세율 등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에서 재무부실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며, 숙박·음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sup>2)</sup>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적용함

<sup>3)</sup>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통제변수로 마진율, 평균법인세율, 성장기회, 감가상각비비율, 인건비비율, 유형자산비율, 로그자산, 업력, GDP성장률, 원·달러절상률,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sup>4)</sup> 기업의 재무부실 확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모형 (1)은 자본잡식더미. 모형 (2)는 완전자본자식더미, 모형 (3)은 이자보상불능더미, 모형 (4)∼(6)은 부채비율을 사용함

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마진율로 측정한 재 무부실비용이 높을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과 여가관련 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세율구조 누진성의 보험수요효과가 확인되었다.

전체표본의 추정결과와는 달리, 성장기회 변수는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 박 음식업, 부동산업 등에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성 장기회 변수는 전체 표본의 53.9%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실질GDP성장률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GDP성장률의 추정계수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숙박·음식업과 여가관련업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매출 액과 더불어 설비투자, 연구개발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며, 재무부실에 이를 경우 포 기해야 하는 직·간접적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숙박·음식업과 여가관련업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 면 매출액이 증가하겠지만, 매출액의 증가분만큼 유·무형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숙박·음식업과 여가관련업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면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도리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달러절상률의 추정계수는 제조업과 여가관련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제조 업의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할 수록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수출 및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되다. 반면, 여가관련업의 경우 워·달러절상률과 보 험수요는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보인다. 원·달러절상률이 증가할수록 여가관련업 내 기업의 보험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 내수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원·달러절상률이 기업 의 보험수요 결정에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표 Ⅲ-6〉 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산업별(1)

	(1)	(2)	(3)	(4)
구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부실리스크	0.019***	0.099***	0.034***	0.050***
	(0.004)	(0.008)	(0.009)	(0.017)
마진율	0.011**	0.043***	0.022***	0.032***
	(0.005)	(0.007)	(0.004)	(0.011)
평균법인세율	-0.023***	-0.056***	-0.023***	-0.048**
	(0.004)	(0.011)	(0.006)	(0.023)
성장기회	0.019	0.602*	1.016***	0.101**
	(0.015)	(0.308)	(0.262)	(0.045)
감가상각비비율	1.599***	0.432	0.170*	0.607**
	(0.111)	(0.408)	(0.094)	(0.286)
인건비비율	0.048	0.119***	-0.012	-0.072
	(0.045)	(0.033)	(0.017)	(0.147)
유형자산비율	0.071***	0.040**	0.069***	0.030
	(0.007)	(0.016)	(0.013)	(0.054)
로그자산	-0.012***	-0.004	-0.018***	-0.018
	(0.003)	(0.004)	(0.003)	(0.015)
업력	0.007***	0.006***	0.001	-0.017
	(0.002)	(0.002)	(0.003)	(0.012)
GDP성장률	0.013***	0.015***	-0.001	-0.033
	(0.004)	(0.004)	(0.006)	(0.025)
원·달러절상률	-0.001***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02)
상수	0.141*	-0.006	0.393***	0.977**
	(0.073)	(0.040)	(0.097)	(0.408)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within R <sup>2</sup>	0.057	0.059	0.05	0.058
between R <sup>2</sup>	0.006	0.066	0.149	0.036
관측치	91,018	17,862	22,770	2,284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sup>2)</sup>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sup>3)</sup> 모형 (1)~모형 (4)는 각각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Ⅲ-7〉기업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산업별(2)

	(5)	(6)	(7)	(8)
구분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
부실리스크	0.029***	0.095***	-0.009	0.093***
	(0.010)	(0.008)	(0.019)	(0.019)
마진율	-0.000	0.032***	0.010	0.003
	(0.005)	(0.004)	(0.008)	(0.009)
평균법인세율	-0.057***	-0.135***	-0.021	-0.038
	(0.013)	(0.017)	(0.022)	(0.034)
성장기회	0.155**	-0.135	0.054***	-0.809
	(0.073)	(0.811)	(0.019)	(2.289)
감가상각비비율	-0.020	-0.057	0.728*	-0.119
	(0.081)	(0.167)	(0.390)	(0.141)
인건비비율	0.010	-0.009	0.340***	0.167**
	(0.025)	(0.013)	(0.069)	(0.080)
유형자산비율	0.070***	0.060***	0.004	0.020
	(0.022)	(0.018)	(0.032)	(0.044)
로그자산	-0.016***	-0.003	0.009	0.030*
	(0.006)	(0.004)	(0.010)	(0.017)
업력	-0.010	0.014*	0.009	-0.018*
	(0.007)	(0.008)	(0.011)	(0.010)
GDP성장률	-0.023*	0.031*	0.029	-0.037*
	(0.014)	(0.016)	(0.023)	(0.022)
원·달러절상률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상수	0.754***	-0.162	-0.308	0.254
	(0.197)	(0.175)	(0.351)	(0.447)
연도더미	예	예	예	예
within R <sup>2</sup>	0.031	0.100	0.095	0.055
between R <sup>2</sup>	0.009	0.125	0.000	0.003
관측치	7,503	10,070	3,147	2,553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sup>2)</sup>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추정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

<sup>3)</sup> 모형 (5)~모형 (8)은 각각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 4. 소결

#### 가. 요약

본 연구는 1999~2017년 기간 동안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 불완전 요소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부석결과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보험수요의 시장불완전성 동기 이론 (Mayers and Smith 1982, 1987)을 대체로 지지하다. 구체적으로, 재무부실의 확률 및 비용이 증가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 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전체 표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는 과소투자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수요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수요의 시장 불완전성 동기 이론과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 등 거시 경제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부실 확률과 보험수요 간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Graham and Rogers(2002)에 따르면 재무부실 확률이 높을수록 헷징의 유인이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헷징기업일수록 재무부실 확률이 낮 아져 부채조달능력이 커지고 결국 재무부실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 고종권·김영철 (2012)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이용과 부채조달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에 따르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부채조달에 따른 추가적인 세 금효과가 크므로 부채조달을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자비용의 세금혜택을 얻기 위 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정책을 한다. 보험부문에서는 재무부실 확률과 보험수요 간 상호관계 존재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향후 추가연 구를 통해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 나. 시사점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 재무부실 확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험수요가 높다는 분석결과는 기 업이 보험을 이용하는 일부 동기가 재무부실에 이를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음을 시사 한다. 역으로, 부채조달을 늘림으로써 추가적인 이자비용의 세금혜택을 얻기 위해 보 험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의 재무부실 확률 감소 효과가 효율적으 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수준과 리스크유형을 파 악하여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세율구조상 절세동기가 강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전 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율구조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기업의 보험 이용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는 기업이 보험을 이용하는 동기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 다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기대세금부담을 절감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과표구간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2개(2억 워 이하와 2억 워 초과) 에서 3개(2억 원 이하, 2억 원~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로 확대되었다. 법인세 한계세율이 높거나, 과세표준이익이 과표구간에 근접한 기업일수록 보험비용의 절세 효과가 증가한다. 보험수요의 절세동기는 단순히 세부담이 높다고 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한계세율 적용의 동기에 기인한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과 표구간이 증가할수록 세금함수의 볼록성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 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개별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실질GDP성장률, 원·달러절상률 등 거시 경제화경 변화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총 산출액 또는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고,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제조업 내 기업의 리스크유형 및 노출규모와 리스크관리 전략은 거시경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Ⅳ.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II 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업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업경영분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및 특성을 검토하고, III 장에서는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이 보험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자료와 보험계약자료만으로 기업의 보험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II 장의 분석자료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신고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 총액과 산업별 지출보험료 총액을, III 장의 재무자료에서는 개별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 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기업이 가입한 보험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가 무엇인지, 기업이 어떠한 유형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보험회사에서 생성한 보험계약 및 손해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보험수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상품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필요보다는 규제에 의해 거래된 상품도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보장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재무자료나 보험계약자료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기업의 보험수요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II장과 III장에서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구입할까?'라는 질문에 답하였다면, IV장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가 무엇인지 답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보험에 대한 인식·태도·경험, 그리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 1. 설문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및 방법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 리스크관리 및 보험에 대한 인식·태도·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무 조사의 모집단은 상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10차 KSIC 대부 류 코드를 기준으로 농어업(A)과 광업(B)를 제외한 전체 산업군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예산 및 시간 제약으로 이하여.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팩스·온라인 방 식으로 조사하였다.29)

전체 조사 모집단인 기업체 가운데 실태조사 표본기업의 선정방법은 2단계 층화 추 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10차 KSIC 대분류기준 산업별로 1차 층화하고 4개 종사자 규 모별로 2차 층화를 실시하였다. 산업은 제조업(C),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 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 E),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유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I),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L, N), 전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P, R),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등 11개로 층화하였다. 기업규모는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등 4개로 층화하였다. 표본은 산업과 종사자규모별로 제곱근 비례 할당하였다. 전술한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조 사표본을 할당한 결과,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의 실사 표본집단은 〈표 IV-1〉과 같 은 분포를 가진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산출액의 48.5%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KSIC 중분류 기준 25 개의 세부산업으로 구분가능하며, 세부산업별로 리스크의 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성과 리스크특성 측면에 서 제조업 내 세부산업 간 이질성을 감안하여, 담배제조업을 제외한 중분류 기준 24개

<sup>29)</sup> 본 설문조사는 기업보험의 복잡한 상품체계상 대면조사가 최선이고, KSIC 중분류 기준 산 업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예산 및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조사방식과 표본수의 절충이 불가피하였음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 조사대상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대상기업에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고 회수하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온라인 조사방식은 조사대상자가 컴퓨터 화면 에 나오는 질문을 읽은 후 그 응답을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조사 방식이다. 조사는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표 Ⅳ-1〉 10인 이상 기업 실사 표본집단

(단위: 개사)

KCIC	KSIC		종사	자수		
코드	산업분류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전체
С	제조업	91	43	13	3	15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4	1	1	6
Е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4	9	0	0	33
F	건설업	88	16	7	2	113
G	도소매업	67	21	2	0	90
Н	운수 및 창고업	25	27	20	3	75
I	숙박 및 음식점업	17	11	9	3	40
J	정보통신업	36	17	2	2	57
L	부동산업	19	9	3	1	3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	28	4	1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6	24	18	14	72
P	교육서비스업	8	3	3	0	1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9	1	3	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3	2	0	22
	계	477	229	85	33	824

주: 제외된 산업군은 농·임·어업(A), 광업(B), 공공(O), 협회(S), 가구내 고용활동 등(T), 국제 및 외국기관(U), 금융 및 보험 업(K)임

# 나. 조사내용

우리나라 기업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 서는 크게 여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표 IV-2〉 참조). 먼저, 대표자의 성별, 기업의 업력·자산·매출액·상시종사자 수 등 기업일반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리스크관리 필 요성에 대한 인식과 친숙도,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사의 리 스크관리에 대한 평가 등 리스크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한다. 셋째, 리스크유 형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와 고려수준, 리스크인지·측정·평가 실패로 인한 경영위기 경험 여부 등 리스크측정 및 평가에 대해 조사한다. 넷째, 리스크관리를 위한 투자 및 조직, 리스크관리 기법(리스크통제, 리스크보유, 리스크전가), 리스크유형별 상대적 난 이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 다섯째, 보험·공제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인식 및 태도, 리스 크유형별 보험 및 공제의 적합성, 보험 및 공제 상품 공급의 충분성 등에 대해 조사한 다. 마지막으로, 보험·공제 구매 시 상품 내용 및 가격에 대한 분석 여부, 보험·공제 상 품별 가입 여부·연납입보험료·가입회사·가입경로·가입방법·인수방법·(비)가입이유· 의무보험 여부·정부 및 지자체 보험(공제)료 지워 여부, 보험·공제회사 선택 시 고려사 항, 보험·공제상품별 보험금수령 여부·수령 건수·수령한 보험(공제)금·발생손해액 대 비 보험금의 비율·보상기관, 보험거래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 리스크유형은 손해보험의 전통적인 부보가능 리스크(Insurable Risk)에 국 한하지 않고 전략리스크, 자산가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잠재된 모든 리스크를 포함한다. 재물리스크, 인적리스크, 배상책임리스크, 영업중단(기업휴 지)리스크 등 부보가능한 리스크 이외에도 금리 및 환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금융리 스크와 거래상대방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기업활동에 내재한 다양한 리스크를 포착하 고자 한다. 재물리스크는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와 인적재해로 인한 리스크로 구분 하여 조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정보파괴, 사생활침해, 기 업평판 훼손, 재무적 손실 등의 사이버리스크와 기업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 거나 제3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리스크를 별도로 조사한다. 거래상대방리스크는 공급자 파산, 공급자 재고 불충분, 외부공급 품질 부량, 공급가격 인상 등에 따른 공급자리스크,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등 구매자리스크, 그리고 경쟁사 의 약탈적 가격경쟁, 경쟁 기술 및 상품 출현, 경쟁구도의 변화 등 경쟁사리스크로 세 분하여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조사한다. 설문조사 대상 보험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업무상 또는 업무외 재해 및 질병 보험(산재보험 이외), 영업배 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임원)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보증보험, 제품회수비용보험, 기술보험, 사이 버보험, 지식재산권보험, 수출입관련 보험 및 보증, 매출채권보험 등을 포함한다.

〈표 IV-2〉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보험·공제 이용에 대한 조사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업일반 현황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별, 업력,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여부, 상시종사자 수, 공장보유 여부 및 보유형태, 최근 3년 경영실적*(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판매처별 매출액*, 국내/해외 판매비율*, 주된 위탁기업 유형, 협력거래단계, 자금사정, 경영상태, 애로사항
리스크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인식 및 태도 •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과거·현재·미래의 리스크관리 평가 및 예상
리 <u>스</u> 크측정 및 평가	• 리스크유형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와 고려수준 • 리스크인지·측정·평가 실패로 인한 경영위기 경험
리스크관리 방법	• 리스크관리를 위한 투자 및 조직 • 리스크관리 기법(리스크통제, 리스크보유, 리스크전가-보험 및 공제) • 리스크유형별 상대적 난이도
보험 및 공제에 대한 인식	보험·공제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태도     리스크유형별 보험 및 공제의 적합성     보험 및 공제 상품 공급의 충분성     보험 및 공제 전담 조직 및 인원 현황     보험·공제 구매 시 상품 내용 및 가격에 대한 분석 여부
보험 및 공제 거래 내용*	보험·공제 상품별 가입 여부·연납입보험료·가입회사·가입경로·가입방법·인수방법·(비)가입이유·의무보험 여부·정부 및 지자체 보험(공제)료 지원여부*     보험·공제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보험·공제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보험·공제상품별 보험금수령 여부·수령 건수·수령한 보험(공제)금·발생손해액 대비 보험금의 비율·보상기관*     보험거래(계약체결 시 서비스, 상품내용, 상품가격, 거래신뢰도,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후 보험가입 범위 및 대상 증감 여부와 이유*     보험계약 시 재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의 자격요건 특정 여부*

주: 1) 상세는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람

<sup>2) \*</sup>는 응답자의 답변 거부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임

# 다. 응답기업 속성

리스크관리 및 보험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유효응답 기준 총 824개 사이다. 실태조사 표본기업에 해당하여 설문지가 배포된 총 2만 6.075개 기업 중 유효 응답 기준 총 824개의 기업이 조사를 마쳤다. 동 설무조사는 적절한 응답자 탐색의 어 려움과 설무응답의 난이도로 인해 응답률이 3.2%에 불과하였다. 조사의 목적상 조사 대상 산업이나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 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응답자 탐색의 어려움은 불가피하였다.30) 다만, 기업 의 재무상태와 보험상품별 계약 및 지급 내역과 같이 응답의 난이도가 높거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진행 단계에서 해당 문항에 대해 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하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보험상품 별 계약 및 지급 내역과 관련된 분석을 생략한다.

응답기업의 업종, 상시종사자 수, 기업유형, 거래단계별 위상 등 속성별 구성분표를 보면 〈표 IV-3〉과 같다. 먼저 최종분석에 사용된 824개 기업 중 비상장기업이 약 98% 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외감기업이 22.4%를 차지한다. 상시종사자 수 면에서는 29인 이하가 57.9%로 소규모 기업의 응답 구성비가 가장 높으며, 30~99인 27.8%, 100~199 인 10.3%, 300인 이상이 4% 슈으로 높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 10년 미만 13.6%, 10~20년 미만 46.4%, 20년 이상 40.1%이다.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사슬상 위치, 즉 거 래단계를 보면 독립기업이 74.3%로 가장 많고. 그 외 25.7%가 수·위탁 거래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가운데 모기업에 대한 1차 벤더가 17.6%, 2차 벤더 6.43%, 3차 벤더 1.7% 로 역피라미드 형태를 취한다. 대표자가 남성인 기업이 86.3%로 압도적으로 많다.

<sup>30)</sup>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무작위 조사로, 대표번호를 통해 1차 연락 후 조건에 맞 는 응답자 탐색이 추가로 필요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보 험을 담당하는 근속연수 5년 이상 응답자를 찾기 어려웠음

〈표 IV-3〉 실태조사 응답기업의 주요 기초통계량

(단위: %)

		(UT)· /0)
구분	세부내용	기초통계량
	코스피	1.0
사가 서버	코넥스	0.5
상장 여부	코스닥	0.9
	비상장	97.7
이버리지레기 상비	외부감사	22.4
외부감사대상 여부	비감사	77.6
	소유	25.5
고기나 이 싫어	임차	12.3
공장보유 여부	소유 및 임차 병행	3.0
	공장없음	59.1
	10~29인	57.9
りりてりす 人	30~99인	27.8
상시종사자 수	100~299인	10.3
	300인 이상	4.0
	5년 미만	1.3
	5~10년 미만	12.3
업력	10~15년 미만	20.8
	15~20년 미만	25.6
	20년 이상	40.1
	1차 벤더	17.6
크] 크][푸].크]]	2차 벤더	6.4
거래단계	3차 벤더 이상	1.7
	모기업 없음	74.3
레고기 사버	남성	86.3
대표자 성별	여성	13.7

# 2. 설문조사 결과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태도, 리스크유형별 발생 가 능성·영향도·관리 기법 및 보험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다.

## 가.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1) 최고경영진의 인식 및 태도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기업규모와 업력에 따라 상이하다(〈표 IV-4〉 참조).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최 고경영진의 관심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6%이다.31) 최 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논의빈도가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윸도 24.3%에 불과하다.32) 그러나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보통 또는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6%로, 대부분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어도 낮지 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에 대한 논의빈도에 대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32.9%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빈도가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다.

경영위기를 초래한 리스크관리 실패경험 여부에 따라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 진의 인식과 태도는 상이하다(〈표 IV-5〉 참조). 최근 5년 동안 잠재하는 리스크를 사전 에 인지하지 못하여 또는 인지된 리스크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여 결국 경영상 어 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3.9%에 달한다. 리스크관리 실패경험이 있 는 기업의 44.7%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 면. 리스크관리 실패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28.9% 로 상대적으로 낮다.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논의빈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비율도 리스크관리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은 34.5%, 리 스크관리 실패경험이 없는 기업은 21.1%로 차이를 보인다.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은 상시종사자 수 기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 게 나타난다. 상시종사자 수가 30~99인 기업의 30.6%, 100~299인 기업의 36.5%, 300 인 이상 기업의 45.5%는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

<sup>31) &</sup>quot;귀사의 최고경영진은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up>32) &</sup>quot;귀사의 최고경영진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자주 논의하십니까?"

하였다. 반면, 업력 기준으로는 설립한지 10년 미만인 신생기업의 최고경영진이 리스 크관리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신생기업 41.1%, 10~20년 미만 기업 28.3%, 100~299인 기업 36.5%, 300인 이상 기업 45.5%로,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은 기업의 업력과 역U자 패턴을 보인다.

〈표 IV-4〉 최고경영진의 인식 및 태도

(단위: %)

	1	2	3	4	5	긍정
	전혀	턜	보통	대체로	매우	00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5.7	18.7	43.0	25.1	7.5	32.6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논의	8.9	24.0	42.8	21.1	3.2	24.3

주: 답변이 '전혀' 또는 '별로'이면 부정, '매우' 또는 '대체로'이면 긍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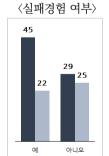
〈표 IV-5〉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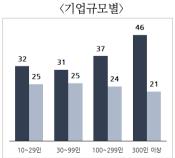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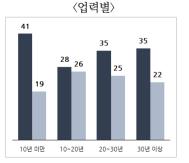
	실패	경험		기업규모				업	력	
구분	예	아니오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0년 미만	10~ 20년	20~ 30년	30년 이상
높은	44.7	28.9	32.1	30.6	36.5	45.5	41.1	28.3	34.6	35.4
낮음	21.8	25.2	24.5	24.9	23.5	21.2	18.8	26.4	24.8	22.4

주: 답변이 매우 또는 대체로 낮음이면 낮음, 매우 또는 대체로 높음이면 높음임

#### 〈그림 Ⅳ-1〉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주: 짙은 색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높음", 옅은 색은 "낮음"임

## 2)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직 내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한다(〈표 IV-6〉 참조). 특히 지난 10년 동안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61.7%가 중립의견에 해당하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리스크관리 의 필요성을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은 39%, 그리고 리스크관리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손실 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리스크관리를 기업경영 의 필수적 기능 또는 부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다.33)

경영위기를 초래한 리스크관리 실패경험 여부에 따라 조직 내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표 IV-7〉 참조). 리스크관리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의 57.4%는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리스크관리 실패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리스크관 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에 불과하다. 마차가지로, 리스크관리 실패경험 이 있는 기업의 63.5%는 리스크관리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응 답한 반면, 리스크관리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35.9%만이 이를 인정하였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경영에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리 스크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이 51.5%로 가장 높고, 10~29 인 기업 37.3%, 30~99인 기업 38.9%, 100~299인 기업 43.5% 슈으로 나타났다. 리스 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업력 사이에는 역U자 패턴이 관찰된다. 신생기 업(49.1%)과 설립 이후 30년 이상 기업(45.7%)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높은 비율로 공감하였다. 한편, 자사의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었 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1%가 동의하였고 중립의견의 비율이 61.7%로 높은 편 이지만, 이를 부정한 응답자는 6.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34) 지난 10년 동안 기업환 경이 급속히 변화하여 경영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up>33) &</sup>quot;귀사는 기업경영에서 리스크관리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사는 리스크 관리 부족으로 인해 손실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up>34) &</sup>quot;귀사의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표 IV-6〉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단위: %)

	1	2	3	4	5	
설문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리스크관리 필요성	4.6	16.8	39.7	25.5	13.5	39
리스크관리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	4.4	13.7	39.4	34.1	8.4	42.5
지난 10년 동안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0.6	5.6	61.7	30.8	1.3	32.1

주: 답변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음이면 높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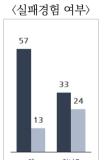
## 〈표 IV-7〉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실패	경험	기업규모				업력			
구분	예	아니오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0년 미만	10~ 20년	20~ 30년	30년 이상
높음	57.4	33.2	37.3	38.9	43.5	51.5	49.1	32.2	42.1	45.7
낮음	13.2	23.9	22.0	22.3	18.8	12.1	17.0	23.3	20.6	20.7

주: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또는 대체로 높음이면 높음임

## 〈그림 IV-2〉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주: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짙은 색은 "높음", 옅은 색은 "낮음"을 나타냄

## 3)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비율이 3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표 Ⅳ-8〉 참조). 자사의 리스크관리 업무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9.9%에 불과하다.35) 리스 크관리 수준에 대해 중립적인 답변("보통")을 선택한 비율이 53.4%로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자사의 리스크관리 업무가 대체로 또는 매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응답도 36.7%를 차지한다. 리스크관리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담당자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갖추 기업은 14.4%에 불과하다. 또한 리 스크관리를 위한 시설, 도구, 제도, 조직운영 등에 투자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7%로, 투자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한 비율(32.9%)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리스크관리 수준은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보다는 최고경영진의 관 심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및 논의빈도와 리스크관리 업무의 체계성 간 상관관계계수는 각각 0.54, 0.6으로 나타난 다. 또한,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및 논의빈도와 리스크관리를 위한 투 자 가 상관관계계수는 각각 0.35, 0.41로, 최고경영진의 관심은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바면,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관리 업무의 체계성 및 리 스크관리를 위한 투자 간 상관관계계수는 각각 0.32, 0.21로 최고경영진의 관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향후 리스크관리 업무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향후 리스크관 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은 28.6%에 불과하다.36 이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비 율에 미치지 못한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신생기업과 30년 이상 기업일수록 향 후 리스크관리 업무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였다(〈표 IV-9〉 참조).

<sup>35) &</sup>quot;귀사의 리스크관리 업무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sup>36) &</sup>quot;향후 귀사가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리스크관 리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비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리스 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조직의 인식이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의 주요 요건인 것으로 나 타난다.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 간 상관관계계수는 0.6,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 간 상관관 계계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표 IV-8〉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단위: %)

설문	1	2	3	4	5	높음
· · · · · · · · · · · · · · · · · · ·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立古
리스크관리 수준	7.2	29.5	53.4	9.3	0.6	9.9
리스크관리를 위한 투자수준	7.9	25	50.7	13.7	2.7	16.4
향후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	3.6	18.9	48.9	24.3	4.3	28.6

주: 답변이 매우 또는 대체로 높음이면 높음임

〈표 Ⅳ-9〉향후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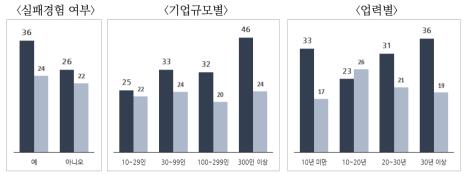
(단위: %)

	실패	경험	기업규모				업력			
자료	예	아니오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0년 미만	10~ 20년	20~ 30년	30년 이상
높음	35.5	26.3	24.7	32.8	31.8	45.5	33.0	23.3	31.3	36.2
낮음	24.4	22.0	22.2	24.0	20.0	24.2	17.0	26.4	20.6	19.0

주: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또는 대체로 높음이면 높음임

#### 〈그림 IV-3〉향후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

(단위: %)



주: 짙은 색은 향후 자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옅은 색은 "낮음"을 나타냄

## 나. 리스크 측정 및 평가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의 발견 및 규명, 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 리스크관 리 방법의 선택, 그리고 리스크행정의 네 단계를 거친다.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후 발견·규명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활동에 내재된 리스크를 〈표 IV-10〉에 게시된 총 15개로 구분하고, 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그리고 고려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리스크는 전통적인 부보가능 리스크에 국 한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대부분의 리스크를 포함한다.

〈표 IV-10〉 설문조사 대상 리스크유형

구분	세부항목	정의						
재산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리스크	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해 건물, 기계, 수용동 산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세선 천단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리스크	화재, 붕괴, 폭발, 화학물질유출, 테러, 차량사고 등으로 인해 건물, 기계, 수용동산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근로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리스크	근로자의 업무수행상의 과정에서 재해 및 질병이 발생힐 리스크						
관련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리스크	업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망, 질병, 장애 등 건강과 관련한 리스크						
	영업배상책임리스크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초래할 리스크						
배상책임 관련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초래할 리스크						
	환경오염리스크	기업의 경제활동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 타인의 신처 및 재물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자연을 훼손할 리스크						
영업중단 관련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화재 등 사고로 인해 기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고 정비 및 수익상실의 리스크						
무형자산	사이버리스크	정보통신기술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정보파괴, 사생활 침해, 기업평판 훼손, 재무적 손실 등의 리스크						
관련	지식재산권리스크	당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그 0 리크	금리리스크	이자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						
금융 관련	환율리스크	환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						
-1-11 11-11u1	공급자리스크	공급자 파산, 공급자의 재고 불충분, 외부공급 품질불량, 공급가격 인상 등에 따른 리스크						
거래상대방 관련	구매자리스크	구매자(기업)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b>T</b> U	경쟁사리스크	경쟁사의 약탈적 가격경쟁, 경쟁 기술 및 상품 출현, 경쟁 구도의 변화 등에 따른 리스크						

# 1) 리스크유형별 발생 가능성

경쟁사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28.3%로 조사대상 리스크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7.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IV-11〉 참고). 응답자의 28.3%는 경쟁사의 약탈적 가격경쟁, 경쟁 기술 및 상품 출현, 경쟁구도의 변화 등에 따른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고 인식하였다. 경쟁사리스크가 낮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24.2%에 불과하였다.

발생 가능성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다는 응답비율은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4.9%),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22.7%), 구매자의 채무불이행(20.5%), 영업배 상책임(18.4%),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17.9%), 공급자(17.8%), 자연재해로 인 한 재산손실(17.2%), 금리(16.5%), 환율(14.4%), 기업휴지(14.1%)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기업은 경쟁사, 구매자, 공급자 등 거래상대방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의 가능성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기업은 자연재해보다는 화재나 붕괴와 같은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과 근로자의 재해 및 질병리스크의 발생 가능 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은 차입금 의존도나 매출액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금리 및 화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금리 및 환율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는 응답비율은 14% 이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보다는 낮지만 기업휴지리스 크 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생산물배상책임(10.8%), 지식재산권(8.4%), 환경오염(7.9%), 사이버(7.2%) 등 배상책임 및 무형자산 관련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14.1%)보다도 낮 은 수준이다. 특히, 지식재산권·환경오염·사이버리스크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 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약 60%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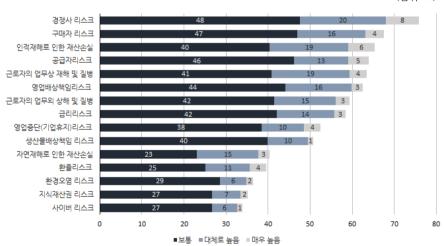
## 〈표 IV-11〉 리스크유형별 발생 가능성

(단위: %)

		1	2	3	4	5		
	리스크유형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낮음	쏦
1	경쟁사리스크	11.3	12.9	47.6	20.4	7.9	24.2	28.3
2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리스크	13.7	21.0	40.4	18.6	6.3	34.7	24.9
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12.7	23.8	40.8	18.6	4.1	36.5	22.7
4	구매자리스크	16.0	16.5	47.0	16.1	4.4	32.5	20.5
5	영업배상책임리스크	13.4	24.3	44.1	15.8	2.6	37.7	18.4
6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13.5	27.2	41.5	14.6	3.3	40.7	17.9
7	공급자리스크	17.8	18.3	46.1	12.9	4.9	36.1	17.8
8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0.3	39.6	23.1	14.6	2.6	59.9	17.2
9	금리리스크	21.7	19.8	42.0	13.7	2.8	41.5	16.5
10	환율리스크	41.1	19.4	25.1	10.6	3.8	60.5	14.4
11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23.9	23.7	38.4	10.1	4.0	47.6	14.1
12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24.8	24.5	39.9	9.6	1.2	49.3	10.8
13	지식재산권리스크	41.3	23.7	26.7	6.8	1.6	65.0	8.4
14	환경오염리스크	40.5	23.1	28.5	6.4	1.5	63.6	7.9
15	사이버리스크	41.0	25.1	26.7	6.0	1.2	66.1	7.2

주: 1) "귀사의 기업활동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답변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음이면 높음임

## 〈그림 IV-4〉 리스크유형별 발생 가능성



주: 1) "귀사의 기업활동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답변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음이면 높음임

## 2) 리스크유형별 영향도

리스크의 발생이 이윤이나 매출의 극대화 등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쟁사,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구매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공급자, 기업휴지,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영업배상책임, 금리, 자연재해 로 인한 재산손실, 환율, 지식재산권, 사이버, 환경오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쟁사리스크가 매출・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목적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편이 라는 응답비율과 낮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24.1%, 25.5%로, 대부분의 기업은 경 쟁사리스크의 영향도가 적어도 낮지는 않다고 인식하였다(〈표 IV-12〉 참조). 산업 내 경쟁은 손실빈도뿐만 아니라 손실규모 측면에서도 기업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인식되 고 있다. 경쟁사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공급자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목표달성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도 각각 19.4%, 1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경쟁사, 구매 자, 공급자 등 거래상대방리스크가 기업의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도는 조사대상 리스 크 중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높다.

한편, 생산물배상책임, 지식재산권, 환경오염, 사이버공격 관련 리스크의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기업은 생산물배상책임(8.6%), 지식재산권 (7.6%), 사이버(6.2%), 환경오염(6.0%) 등 배상책임 및 무형자산 관련 리스크의 영향도 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결함 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인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할 가능성이다.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책임을 제 조업체가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은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가 낮 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3%, 46.4%로 절반 가까운 기업이 동 리스크를 대체로 낮 게 인식하고 있다.

Viscusi et al.(2005)은 일반적으로 실제 리스크(Actual Risk)와 개인이 인식하는 리스 크(Perceived Risk)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토네이도와 홍수처럼 발생빈도가 낮은 리스크의 경우에는 실제 사망자 수보다 개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리스크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암이나 심장질환 등 발생빈도가 높은 리스크의 경우에는 실제 사망자 수보다 개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망자수가 더 적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Viscusi et al.(2005)이 설명한 객관적리스크와 주관적리스크 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본 조사에서는 적어도 피해규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사고 의 발생 가능성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리스크와 관련하여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비율은 17.2%로 조사대 상 리스크 중 8번째로 높고, 동 리스크의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비율은 12.5%로 조사 대상 리스크 중 10번째로 높다. 기업은 사이버리스크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영향도, 즉 피해규모를 화경오염리스크 다음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 〈표 IV-12〉 리스크유형별 영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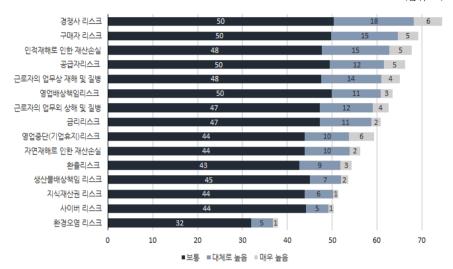
		1	2	3	4	5		
	리스크유형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del>높음</del>	매우 <del>높음</del>	낮음	높음
1	경쟁사리스크	13.5	12.0	50.4	17.8	6.3	25.5	24.1
2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7.1	15.3	47.7	15.1	4.9	32.4	20.0
3	구매자리스크	17.0	13.8	49.8	14.8	4.6	30.8	19.4
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16.6	18.3	47.5	13.5	4.1	34.9	17.6
5	공급자리스크	18.9	14.7	49.5	12.1	4.7	33.6	16.8
6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24.6	16.0	43.8	10.0	5.6	40.6	15.6
7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17.8	19.5	47.2	11.8	3.6	37.3	15.4
8	영업배상책임리스크	18.1	18.5	49.9	10.9	2.7	36.6	13.6
9	금리리스크	23.3	15.9	47.3	11.4	2.1	39.2	13.5
10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4.4	19.3	43.8	10.1	2.4	43.7	12.5
11	환율리스크	30.1	15.5	42.7	9.1	2.6	45.6	11.7
12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	27.9	18.5	45.0	6.9	1.7	46.4	8.6
13	지식재산권리스크	30.2	18.3	43.8	6.4	1.2	48.5	7.6
14	사이버리스크	30.5	19.3	44.1	5.0	1.2	49.8	6.2
15	환경오염리스크	43.8	18.3	31.9	4.9	1.1	62.1	6.0

주: 1) "다음의 각 리스크가 귀사의 이윤이나 매출의 극대화 등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sup>2)</sup> 답변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음이면 높음임

#### 〈그림 IV-5〉 리스크유형별 영향도

(단위: %)



- 주: 1) "다음의 각 리스크가 귀사의 이유이나 매출의 극대화 등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 2) 답변이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음이면 높음임

#### 3) 리스크유형별 고려수준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리스크를 자주 또는 항상 고려하는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모든 리스크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IV-13〉 참조).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2.7%. 17.6%인 데 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리스크를 자주 또는 항상 고려한 다는 응답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이버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 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7.2%, 6.2%이며, 동 리스크를 자주 또는 항상 고 려한다는 응답비율은 9.4%로 보다 높다. 비록 특정 리스크에 대해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낮게 평가할지라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동 리스크를 신중하게 검토하 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계획 수립 시 보통 이상으로 고려하는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리스크가 77%로 가장 높고, 경쟁사리스크,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 병, 영업배상책임리스크, 구매자리스크,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공급자리스크, 금 리리스크,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 환율리스크 등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사이버, 지식재산권, 환경오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환율리스크 등에서 는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 이상을 차지한다. 상기 5개 리스크 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비율이 모두 60% 이상이고 동 리스크가 발생하더 라도 손실규모가 작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43% 이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중 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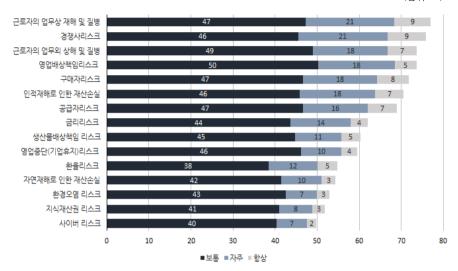
〈표 IV-13〉 리스크유형별 고려수준

괴사고오현	1	2	3	4	5	ㅂ저	그저
리스크유형	전혀	별로	보통	자주	항상	부정	긍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7.3	15.7	47.3	21.1	8.6	23.0	77.0
경쟁사리스크	10.2	14.0	45.5	21.2	9.1	24.2	75.8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8.3	18.1	49.0	17.8	6.8	26.4	73.6
영업배상책임리스크	9.3	17.0	50.2	18.3	5.1	26.3	73.6
구매자리스크	13.5	14.7	46.6	17.7	7.5	28.2	71.8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9.8	19.7	45.8	18.0	6.8	29.5	70.6
공급자리스크	14.3	16.8	46.6	15.5	6.8	31.1	68.9
금리리스크	18.6	19.4	43.7	14.3	4.0	38.0	62.0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18.2	21.5	44.8	10.9	4.6	39.7	60.3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19.2	21.2	46.2	9.6	3.8	40.4	59.6
환율리스크	25.0	20.3	38.4	11.7	4.7	45.3	54.8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6.3	29.4	41.5	9.5	3.4	45.7	54.4
환경오염리스크	22.2	24.9	42.6	7.4	2.9	47.1	52.9
지식재산권리스크	23.5	24.6	40.9	8.0	2.9	48.1	51.8
사이버리스크	25.1	25.1	40.4	7.2	2.2	50.2	49.8

주: 1) "귀사는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2) 답변이 전혀 또는 별로이면 부정, 보통·자주·항상이면 긍정임

#### 〈그림 IV-6〉 리스크유형별 고려수준

(단위: %)



주: 1) "귀사는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2) 답변이 전혀 또는 별로이면 부정, 보통·자주·항상이면 긍정임

## 다. 리스크관리 기법 및 보험이용

리스크관리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리스크통제와 리스크재무다. 리스크통제는 손실 빈도 및 규모를 감소시키는 활동으로, 리스크회피, 분산 또는 다양화, 결합, 전가, 손실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스크재무는 경상비처리, 특별적립, 기금적립, 자가보 험, 종속보험회사 등의 리스크보유와 보험 및 공제와 같은 리스크전가로 구분한다.

## 1) 리스크유형별 관리 기법

경쟁자, 구매자, 공급자 등 거래상대방리스크의 경우 보험이나 공제와 같은 리스크 전가보다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손실규모를 줄이는 리스크통제 기법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표 Ⅳ-14〉 참조). 특히 공급자리스크의 경우 손실발생 가능성을 줄 이는 노력을 취한다는 응답이 32.5%, 보험 및 공제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7.0%에 불과 하다. 또한 거래상대방리스크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를 비교적 높게 인 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 이 약 4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는 거래상대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인적재해로 인한 재 사손실, 영업배상책임리스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사손실,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의 경 우 보험 및 공제를 이용하여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리스크관리 기법으로서 보험 및 공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50.1%).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40.1%).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39.2%). 영 업배상책임리스크(35.6%),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30.7%), 생산물배상책임(22.9%) 수으로 높게 나타난다. 근로자의 재해 및 질병,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영업배상책 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 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동 리스크를 보험 및 공제로 관리한다는 응답 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과 영향도가 높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10.8%, 8.6%에 불과하지만, 이를 보험 및 공제를 통해 적극적 으로 관리한다는 응답비율은 22.9%에 이른다.

반면, 환율·사이버·지식재산권·환경오염·금리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기대손실을 줄 이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45% 이상을 차지한다. 동 리스크 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를 낮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 IV-14〉 리스크유형별 관리 기법

(단위: %)

리스크유형	손실발생 가능성 줄이기	준비금 적립	보험·공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음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8.0	3.5	30.7	35.0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31.8	3.3	39.2	24.6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32.4	3.0	50.1	17.2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29.2	2.9	40.1	24.6
영업배상책임리스크	30.9	2.7	35.6	24.6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	28.2	2.4	22.9	37.4
환경오염리스크	29.4	1.9	8.9	47.6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30.6	3.3	8.1	43.6
사이버리스크	29.0	1.2	5.1	49.9
지식재산권 리스크	29.4	1.3	5.8	47.7
금리리스크	27.2	4.2	4.5	46.5
환율리스크	26.1	2.3	4.7	50.5
공급자리스크	32.5	2.5	7.0	41.0
구매자리스크	32.0	2.4	7.2	39.2
경쟁사리스크	31.9	2.1	4.7	40.7

주: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2) 리스크수준별 보험·공제 이용

기업이 특정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가 대체로 또는 매우 높다고 인식하 더라도 이를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관리하는 비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리 스크(58.1%)를 제외하고는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V-15〉 참조). 예 를 들어, 영업배상책임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 중, 동 리스크를 보험이나 공제로 관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에 불과하다. 그나마, 근로 자의 재해 및 질병,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영업배상책임과 생산배 상책임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기업 중 보험이나 공제로 이를 관리하는 기업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기업휴지·환경오염·사이버·지식재산권·금리·환율·거래상대방리스크에 대해서는 기 업이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를 높게 인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험・ 공제로 관리하는 비율은 15%를 하회한다. 특히, 금리리스크나 경쟁사리스크의 경우 그 리스크수준를 높게 인식한 기업 중 동 리스크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3.3%, 2.0%에 불과하다. 경쟁사의 약탈적 가격경쟁, 경쟁 기술 및 상품 출현, 경쟁구도의 변화 등에 따른 리스크의 경우 보험상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의 리스크가 아니기 때 문에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손해보험에서 이자 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손실이나 경쟁사 관련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 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 및 공제로 관리되는 리스크는 특정 리 스크유형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재해 및 질병, 인적재해 및 자연재해 로 인한 재산손실, 영업배상책임 및 생산물배상책임 등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상품의 영역으로 공급이 워활하다. 이에 기업도 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 및 공제로 관리하 는 것이 대체로 또는 매우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반면 거래상대방리스크, 환경오염, 기업휴지, 사이버, 지식재산권, 금리, 환율 등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공 제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비율이 15% 이하로, 낮은 편이다. 이는 보험상품 의 공급현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리스크나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제한적이다.37) 금리나 환율리스크의 경우, 보험보다는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다. 기업이 높은 리스크수준를 감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공제 이용이 낮은 리스크유형에 대해서는 보험상품개발 측면에 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일수록 동 리스 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험 및 공제 이용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 산손실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42.5%가 보험 및 공제를 이용한 반면, 동 리스크가 낮다고 인식한 기업 중 보험 및 공제를 이용한 기업 은 27.0%에 불과하다.

<sup>37)</sup> 상세는 IV장 3절에서 논의함

## 〈표 IV-15〉 리스크유형 및 수준별 보험·공제 이용

(단위: %)

리시그이허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도			
리스크유형	매우 또는 대체로 높음	매우 또는 대체로 낮음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42.5	27.0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49.2	34.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58.1	45.5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47.6	36.0		
영업배상책임리스크	49.4	29.8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	45.5	16.5		
환경오염리스크	15.0	7.1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11.3	5.8		
사이버리스크	8.6	3.2		
지식재산권리스크	8.3	4.5		
금리리스크	3.3	3.5		
환율리스크	7.9	3.3		
공급자리스크	6.6	5.5		
구매자리스크	6.9	6.3		
경쟁사리스크	2.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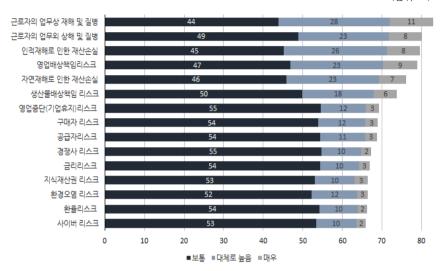
## 〈표 IV-16〉 리스크유형별 보험·공제의 적합성

리스크유형	1	2	3	4	5	H저하	저하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부적합	적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1.9	5.7	43.8	28.2	10.9	7.6	39.1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3	7.7	45.2	26.0	8.4	10.0	34.4
영업배상책임리스크	3.4	7.0	46.8	23.4	8.7	10.4	32.1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2.4	7.2	48.8	22.9	8.4	9.6	31.3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4.3	8.4	45.9	23.3	6.9	12.7	30.2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5.6	8.4	49.9	18.1	5.8	14.0	23.9
구매자리스크	6.2	10.8	53.9	11.9	3.2	17.0	15.1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6.0	10.9	54.5	11.5	3.3	16.9	14.8
공급자리스크	6.8	10.7	54.4	11.3	3.0	17.5	14.3
환경오염 리스크	6.9	13.4	52.3	11.5	2.6	20.3	14.1
지식재산권 리스크	8.0	10.7	53.0	10.1	3.3	18.7	13.4
경쟁사 리스크	6.3	12.1	54.7	10.1	2.4	18.4	12.5
금리리스크	7.8	10.9	54.4	9.8	2.7	18.7	12.5
사이버리스크	8.4	11.0	53.4	10.1	2.4	19.4	12.5
환율리스크	8.6	10.4	54.3	9.6	2.4	19.0	12.0

주: 1) "귀사는 보험 및 공제 가입이 다른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답변이 전혀 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음이면 부적합, 대체로 또는 매우 적합함이면 적합임

#### 〈그림 IV-7〉 리스크유형별 보험·공제의 적합성

(단위: %)



주: 1) "귀사는 보험 및 공제 가입이 다른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답변이 전혀 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음이면 부적합, 대체로 또는 매우 적합함이면 적합임

## 3) 기업 특성별 보험·공제 이용

기업규모와 보험 및 공제 이용률 간 관계는 대체로 역U자 패턴을 보인다. 상시종사 자 수 기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보험 및 공제 이용 비율이 증가하여 30~99인 기업에 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V-17〉 참조). 리스크유형에 상관없이 보험 및 공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응답비율은 10~29인 기업에서 58.1%, 30~99인 기업에서 68.1%로 증가하다가 100~299인 기업에서 58.8%, 300인 이상 기업 에서 45.5%로 감소한다. 이는 2장의 기업경영분석통계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한다.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보험・공제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표 IV-18〉 참조). 리스크유형에 상관없이 보험·공제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은 30 년 이상 기업이 69.8%로 가장 높고, 10~20년 60.0%, 20~30년 59.4%, 10년 미만 기업 54.5%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 〈표 IV-17〉 리스크유형·기업규모별 보험·공제 이용

(단위: %)

리스크유형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8.1	38.9	28.2	18.2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38.6	43.2	38.8	21.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48.0	57.2	47.1	39.4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38.8	47.6	34.1	21.2
영업배상책임리스크	32.9	41.9	35.3	30.3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22.6	24.0	24.7	15.2
환경오염 리스크	8.8	10.0	8.2	3.0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9.0	7.9	7.1	0.0
사이버 리스크	5.7	3.5	7.1	3.0
지식재산권 리스크	6.1	5.7	7.1	0.0
금리리스크	5.2	2.6	7.1	0.0
환율리스크	5.7	2.6	7.1	0.0
공급자리스크	6.9	7.0	8.2	6.1
구매자리스크	7.8	6.1	8.2	3.0
경쟁사리스크	4.6	4.8	7.1	0.0
전체	58.1	68.1	58.8	45.5

주: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표 IV-18〉 리스크유형·업력별 보험·공제 이용

리스크유형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28.6	30.4	29.0	37.1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31.3	38.2	37.9	52.6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41.1	49.0	50.5	62.1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40.2	40.6	37.9	42.2
영업배상책임리스크	26.8	36.7	36.9	37.9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22.3	23.0	22.0	25.0
환경오염 리스크	9.8	8.9	7.0	11.2
영업중단(기업휴지)리스크	8.9	8.1	6.5	10.3
사이버 리스크	5.4	3.9	5.6	7.8
지식재산권 리스크	7.1	5.5	4.2	8.6
금리리스크	6.3	3.4	3.7	7.8
환율리스크	7.1	3.7	3.3	8.6
공급자리스크	10.7	5.0	7.0	10.3
구매자리스크	9.8	5.2	7.9	9.5
경쟁사리스크	6.3	2.9	5.1	8.6
전체	54.5	60.0	59.4	69.8

주: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4) 리스크관리 인식·태도·경험별 보험·공제 이용

리스크관리 기법으로서 기업의 보험·공제 이용도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 도, 그리고 경험에 따라 상이하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자인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 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빈도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인식은 보험·공제 이용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 중 보 험·공제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68.8%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7.1% 더 높다. 특히, 보험 및 공제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태도는 보험·공제 이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표 IV-19〉 참조).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보험·공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은 15.5%, 긍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은 23.4%이 다. 최고경영진의 보험·공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기업의 보험이용률은 85.5%로 그 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37.1%p 더 높다.

조직 내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기업의 보험이용률은 70.1%로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9%p 더 높다. 리스크관리 업무가 체계적인 기업 중 리스크관 리 방법으로 보험을 이용한다는 기업의 비율은 69.5%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9.6% 더 높다.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경영위기를 경험한 기업 중 보험을 이용한다 는 응답비율이 68.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0.3%p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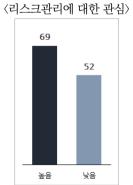
## 〈표 IV-19〉 리스크관리 인식·태도·경험별 보험·공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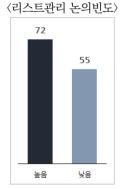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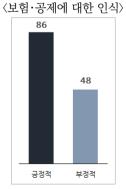
	설문	응답	보험·공제 이용률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	노으	68.8
	니스크랜디에 대한 편집	낮음	51.7
최고경영진	리 & 그리니에 비중L 노이버트	노이	72.0
최고경영선	리스크관리에 대한 논의빈도	낮음	54.6
	H 칭. 고계에 미칭 이시	긍정적	85.5
	보험·공제에 대한 인식	부정적	48.4
리스크관리 필요성		노으	70.1
		낮음	47.2
리스크관리 업무의 체계성		체계적	69.5
		비체계적	59.9
리스크관리 투자 수준		높음	70.4
		· ' 구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한 경영위기 경험		있음	68.7
		없음	58.4

주: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그림 IV-8〉 리스크관리 인식·태도·경험별 보험·공제 이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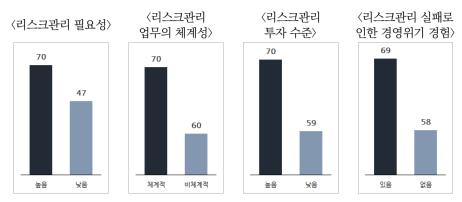




주: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그림 IV-9〉 리스크관리 인식·태도·경험별 보험·공제 이용(2)

(단위: %)



주: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3. 소결

#### 가. 요약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 보험의 영역인 재물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 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다. 특히, 자 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타 리 스크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 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 대비 보험이용 도는 매우 낮다. 공급자리스크와 기업휴지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도가 높다 고 인식한 기업의 비율은 14% 이상으로, 동 리스크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비율 은 각각 7%, 8%에 불과하다. 해당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공급자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의 6.6%, 기업휴지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의 11.3%만 동 리스크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물 손실, 인적손실, 배상책임리스크의 경우 리스크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기업의 42% 이 상이 보험으로 동 리스크를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셋째, 재산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 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가 높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10.8%, 8.6%로 타 리스크에 비해 낮지만, 이를 보험으로 관리 한다는 응답비윸은 22.9%에 달한다.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 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에 한해서는 45.5%가 동 리스크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래상대방·인적손실·재물손실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 식한 기업의 비율은 생산물배상책임·지식재산권·환경오염·사이버리스크에 비해 높 다. 생산물배상책임·지식재산권·환경오염·사이버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도 가 높다는 응답비율은 10.8% 이하로, 조사대상 리스크 중 가장 낮은 집단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진의 인식과 태도, 실패경험, 조직 내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은 기업의 리스크관리 수준뿐만 아니라 보험이용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나. 시사점

# 1) 기업의 보장공백(Protection Gap) 확대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급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자연재해, 사이버공 격, 지식재산권 분쟁, 금리·환율 변동, 각종 배상책임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 성보다 높게 평가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중 공급망리스크 와 기업휴지리스크는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4위와 8위를 차지한다. 기업의 17.7%는 공급망리스크가 '대체로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의 14.1%는 기업 휴지리스크가 '대체로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동 리스크를 보험으로 관 리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7%, 8%에 불과하다. 해당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공급자리스 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의 6.6%, 기업휴지리스크의 발생 가 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의 11.3%만 동 리스크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적어도 동 리스크에 대한 낮은 보험이용률이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에 대한 기업의 과소평가가 아닌 것은 명확하다. 38) 기업이 심각한 리스크로 받 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리스크를 보험으로써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상품의 공급측면에 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기업보험은 전통적인 '부보가능성(Insurability)' 요건을 강조하며 전통적 인 보장영역에 머물러 있다. 전통적인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연성 및 발생 가능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으로,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발생시기, 손해규모가 객관적으로 불확정적인 것 이어야 한다. 만약 이미 발생한 사고이거나 혹은 발생할 수 없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요소 가운데 우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특정성이란 보험사고의 범위를 기간, 지역, 손인, 보험의 목적 등의 특정 기준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법 에 대한 기업의 니즈는 변하고 있다. 기업을 위협하는 손실유형이 유형의 물리적 손실 에서 비물리적 손실로 확대되고, 리스크사고유형은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에서 지정학 적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이 2019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 상위 3개 리스크는 모두 지정학적 요소로, 주요 파워 간 경제적 충돌 및 마찰 91%, 다자간무역규칙 및 협상의 파기 88%, 주요 열강 간 정치적 충돌 85% 순으로 나타난 다.39) 이러한 지정학적 요소는 기업의 공급망 실패를 초래하고 결국 기업의 생산중단

<sup>38)</sup> Smidt and Botzen(2018)는 네덜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낮은 사 이버보험 가입률이 피해규모에 대한 기업의 과소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sup>39)</sup> World Economic Forum은 공공·민간부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자 약 1천 명 을 대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및 영업이익손실 등 비물리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처럼 기업은 전통적인 부보가능리 스크에 해당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동산 등 유형의 물리적 자산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상실이나 평판손실, 신용등급 하락 등 비물리적 손해에 대한 우 려가 크다. 또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와 같이 우연한 사고뿐만 아니라, 제품 면허 및 승인 취소, 생산설비 폐쇄 명령, 공급망 실패, IT 중단, 사이버 공격, 정치적리스크, 테 러, 정전, 제품리콜, 물류·교통 중단 등도 기업에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비 물리적 손해나 지정학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경영활 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2) 부보가능범위 확대 필요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와 공급망의 복잡화 및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 라, 기업의 공급망·기업휴지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 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하지 위하여 기업의 부가가치사슬에서 핵심 분야 가 아닌 분야는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실제 거 래내역을 살펴보면, 외부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금융리스크・국가리스크・ 환리스크를 가진 공급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공급 망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Dun & Bradstreet와 Cranfield School of Management는 분기별로 유럽 소재 구매기업과 150개국 이상에 소재한 공급기업간 거래자료를 이용하 여 공급망리스크를 분석하였다(Dun & Bradstreet 2019). 분석에 사용한 거래 건수는 2017년 4분기에는 약 60만 건, 2019년 1분기에는 18만 4,620건이다. 2017년 3분기부 터 2019년 1분기 기간 동안 공급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래 건수의 비율은 34~44%로, 구매자의 공급자 의존도는 30%를 상회한다. 동기간 공급자의 금융리스크가 높은 거래 건수의 비율은 20~23%, 공급자의 국가리스크가 높은 거래 건수의 비율은 7~29%, 공급자의 환리스크가 높은 거래 건수의 비율은 29~36%이다.

세계화된 공급망의 운영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은 그 정도의 심 각성에 관계없이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급망 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리드타임(Lead Time), 재고 및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의 현 금흐름을 악화시키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40)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기업의 공급망리스크를 더욱 확대시킨다.

특히, 공급망 실패는 기업휴지를 초래하는 여러 트리거 중 하나로, 공급망리스크는 기업휴지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청업체로부터 원재료나 부품의 공급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재해나 사고로 인 해 생산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일본 소재 공급 업체의 부품공급이 중단되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소재 완성차 기업들도 생 사활동을 중단하였다(U. 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최근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정치적인 요소는 기 업의 공급망 중단과 그로 인한 기업휴지리스크를 초래한다. Allianz(2019)의 조사에 따 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8%는 공급망 실패를 기업휴지의 트리거로 인식한다. 동 조사 에 따르면, 기업휴지의 트리거는 사이버 관련 재해가 50%로 가장 높고, 화재 및 폭발 40%, 자연재해 38%, 공급망 실패 28%, 기계결함 28% 순으로 높다. 4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도 경영활동에 내재된 공급망 및 기업휴지리스크 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llianz가 2001년부터 매년 86개 국 22개 산업 내 2,415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스크 바로미터 설문조 사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 중단 및 기업휴지를 가장 우려한다(〈표 IV-20〉 참조). AoN(2019)의 글로벌 리스크관리 설문조사에서는 공급망리스크와 기업휴지리스크가 각각 2016년 19위와 8위에서 2018년 12위와 4위로 상승한다.

<sup>40)</sup> 리드타임(Lead Time)은 주문 후 납품까지의 소요 기간을 의미함

<sup>41)</sup> 해당 문항에 대한 중복응답이 가능함

#### 〈표 IV-20〉 세계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단위: 건)

Allianz 설문조사			AoN 설문조사			
리스크유형	2018년 순위	2017년 순위	리스크유형	2018년 순위	2016년 순위	
공급망중단·기업휴지	1	1	경기침체	1	2	
사이버 관련 손실	2	2	평판·브랜드리스크	2	1	
자연재해	3	3	시장요소 변화	3	38	
법제변화(무역전쟁, 관세, 경제조치, 보호주의 등)	4	5	기업휴지	4	8	
시장요소(경쟁, M&A 등)	5	4	경쟁증가	5	3	
화재, 폭발	6	6	사이버 관련 손실	6	5	
신기술	7	7	상품가격리스크	7	11	
기후변화	8	10	현금흐름·유동성리스크	8	12	
평판·브랜드 가치 하락	9	8	혁신 및 고객 니즈 충족 실패	9	6	
우수인재 확보	10	신규	규제변화	10	4	
			우수인재 확보	11	7	
			공급·유통망 중단	12	19	

주: 보험중개회사인 AoN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기업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2018년의 경우 60개국 33개 산업 내 리스크담당자 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Allianz(2019); AoN(2019)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재물손해로 인해 발생한 기업휴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화재·기계보험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의 형태로 제공한 다.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 이하 'BI'라 함)보험은 화재, 폭발, 전기적·기계적 사고 등에 의해 기업이 직접적으로 재산손해를 입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단됨으 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한다. BI담보는 화재보험이나 기계보험의 특약 의 형태 또는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담보, 배상책임담보, 기계담보와 함께 하나 의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간접기업휴지(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이하 'CBI'라 함)보험은 화재, 지진, 홍수, 기계 파손 및 기타 부수리스크로 발생되는 공급기업의 휴지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는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한다. 재산종합보험 의 BI담보에 공급자로 인한 기업휴지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담보리스크는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재물손해를 수반하는 자연재해 화재 기계결함 등으로 제한적 이다. 즉, 수출규제, 통상마찰 및 통관지연, 관세부과 등 정치적 요소로 인한 공급망 중 단과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공급망 실패로 인한 기업휴지손실을 담보하는 CBI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할 것으 로 추정된다. BI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과 함께 재산종합 통합보 험증권의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가입 건수, 보험료, 책임한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BI담보가 포함된 재산종합보험의 계약 건수는 약 1만 건으로, 법인세 신고 기업이 60만 개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BI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공급자의 재물손해로 인해 발생한 CBI담보는 재산종합보험의 BI담보에 특약으로 추가한다. CBI담보 가입은 일부 대형 제조업체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재산종합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재물손해, 배상책임, 기업휴지손해 등을 포괄적으 로 담보하며, 기업휴지담보는 재산종합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이나 기계보험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기도 한다.

〈표 IV-21〉 재산종합보험 실적

(단위: 억 원, 건, %)

기업의	기 보험료	:	손해보험 내 재산종합	해보험 내 재산종합보험		
구분	총보험료(A)	계약 건수	원수보험료(B)	재산종합보험의 비중(B/A)		
2011년	91,390	14,964	10,625	11.6		
2012년	101,295	12,688	9,983	9.9		
2013년	107,306	13,134	11,316	10.5		
2014년	116,762	59,475	11,994	10.3		
2015년	127,663	19,947	10,130	7.9		
2016년	134,566	16,768	10,323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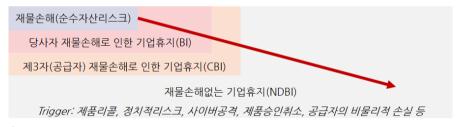
자료: AoN(2019)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재물손실을 동반하지 않는, 비물리적 손실 관련 기업휴지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 이하 'NDBI'라 함) 손실에 대한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NDBI 보장을 통해 기업휴지보험의 담보범위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BI보험이나 CBI보험은 화재, 폭발, 기계결함, 자연재해로 인한 피보험 자 또는 공급자의 재물손실로 생산활동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재물손실을 동반하 지는 않지만 기업의 이익 및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하지 않는다(〈그림 Ⅳ-10〉 참조). NDBI의 트리거는 제품 면허 및 승인 취소, 생산설비 폐쇄 명령, 핵심 공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물리적 손실로 인한 기업휴지, 핵심 공급자 의 파산, IT 중단, 사이버 공격, 정치적리스크, 테러, 정전, 제품리콜, 물류·교통 중단 등이 될 수 있다.

기업활동에 잠재된 리스크의 변화와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보가능리스 크의 확대와 더불어 보상기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갈등 등 지 정학적리스크는 사고의 우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부보가능리스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리스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실손보상에 연연하기 보다는 패러매트릭 기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실제로 발생 한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워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합 의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보험으로 인덱스보험(Index)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자연재해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활용된다.

〈그림 Ⅳ-10〉 부보가능성의 범위 확대



자료: Holzheu et al.(2017)

# V. 결론

본 연구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 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 업별·사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Ⅱ장의 부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기업의 보험수요가 GDP 또는 가계부문의 보험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한 반면 가계 부문의 보험수요와 GDP는 연평균 3.9%, 4.5%씩 증가하였다. 가계보다는 산업의 보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수요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37% 에 달한다. 둘째, 지출보험료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순으로 높게 나 타난다. 제조업이 전체 보험료의 약 34%를 차지하고, 건설업이 24%, 도소매업과 유수 창고업이 각각 약 10%를 차지한다. 셋째,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며,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 불과하다. 넷째, 기업보험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보험의존 도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 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 를 차지한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Ⅲ장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 나, 보험수요의 시장불완전성 동기 이론을 대체로 지지한다. 재무부실의 확률 및 비용 이 증가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전체 표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과 소투자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수요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수요의 시장불완 전성 동기 이론과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 등 거시경제 환경이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 된 리스크의 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보험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 였다. IV장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의 영역인 재물 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재산 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은 중소기업의 재무부실 확률과 세금부담을 낮추고 건설업·도소매업·운수창고업 등에서는 기업이 성장성 있는 투자기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유 형·발생 가능성·영향도 등이 변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니즈에 대응한 상품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 의 재물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 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 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개 선과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보험 공급 현황 및 문제 점을 파악하고 부보가능범위 및 보상기법을 탐색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 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관리 기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되, 향후에는 기업이 우려하는 손실의 유형과 각 리스크의 트리거(Trigger)를 구체화하 고, 부보위험별 보험가입 의향과 규제의 영향도 살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종권·김영철(2012),「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징과 부채조달간의 상호관련성」,『한국 회계학회 기타자료집』, 4호
- 김경환·박정희(2014),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김대식·전상경·최진영(2005), 「파생상품 사용과 재량적 발생에 관한 연구: 이익유연 화 정책의 관점에서」, 『금융공학연구』, 제4권 제2호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연도
- 송윤아(2019), 「산업경쟁도가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2호 이경룡(1995), 「건설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과제」, 『리스크관리연구』, 제5권
- 이경룡·김사용(2007),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발전과제」, 『리스크 관리연구』, 제18권 제1호
- 이현복·정홍주·오태형(2009), 「기업성보험의 성장과 산업발전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 증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20권 제2호
- 통계청(2018), 「기업생멸 행정통계」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_\_\_\_\_, 「산업연관표」, 각 연도 (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허연·송재두(2014), 「한국의 주요산업 성장률이 기업보험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25권 제2호
- 허연·허성수(2003), 「기업보험의 수요에 대한 실증 연구」, 『보험학회지』, 제64집
-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ity(2019), *Allianz Risk Barometer: Top Business*Risks for 2019
- Altman, E.(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23(4)
- Altman, E., Eom, Y., and Kim, D.(1995), "Failure Prediction: Evidence from Korea,"

-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Accounting, 6(3)
- AoN(2019), Global Risk Management Survey 2019
- Ashby, S. G. and Diacon, S. R.(1998), "The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A Strategic Perspective",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Issues and Practice*, 23(86)
- Culp, C. L.(2001), *The Risk Management Process: Business Strategy and Tactics*, John Wiley and Sons, New Jersey
- Dun & Bradstreet(2019), The Global Supply Chain Risk Report
- European Communit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2009),

  Systems of National Account 2008
- Graham, J. R.(1996), "Debt and the Marginal Tax Rat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1(1)
- Graham, J. R., and Rogers, D. A.(2002), "Do Firms Hedge in Response to Tax Incentives?", *The Journal of Finance*, 57(2)
- Holzheu, T., Fan, I., Lechner, R., and Tamm, Kulli(2017), "Commercial Insurance: Innovating to Expand the Scope of Insurability", *Swiss Re Institute Sigma*, No. 5
- Hoyt, R., and H. Khang(2000), "On the Demand for Corporate Property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7
- Liu, Zhiyong and Jung, Hae Won(2011),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mimeo
- MacMinn, R. D(1987), "Insurance and Corporate Risk Manage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4)
- Mayers, D. and Smith, C. W.(1987), "Corporate Insurance and the Under-investment Problem",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1)
- \_\_\_\_\_(1982), "On the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Journal of Business, 55(2)

- Michel-Kerjan, E., Raschky, P., and, Kunreuther, H.(2015),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New Evidence from the U.S. Terrorism and Property Markets", *Journal of Insurance and Risk*, 82(3)
- Modigliani, F. and Miller, M. H.(1958),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48(3)
- Nance, D. R., Smith, C. W., and Smithson, C. W.(1993), "On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Hedging", *The Journal of Finance*, 48(1)
- Nguyen, H. and Faff, R.(2002), "On The Determinants of Derivative Usage by Australian Companies", *Australian Journal of Management*, 27(1)
- Purnanandam, A.(2008), "Financial Distress and Corporate Risk Management: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7(3)
- Regan, Laureen and Hur, Yeon(2007), "On the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The Case of Korean Non-financial Firm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4(4)
- Seog, S. H. (2006), "Strategic Demand for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3(2)
- Shapiro, A. and Titman, S.(1985), "An Integrated Approach to Corporate Risk Man-agement", *Midland Corporate Finance Journal*, 3
- Skogh, Goran(1989), "The Transactions Cost Theory of Insurance: Contracting Impediments and Cost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6(4)
- Smith, C. W. and Stulz, R. M.(1985), "The Determinants of Firms' Hedg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0(4)
- Smidt, G. D. and Botzen, W.(2018), "Perceptions of Corporate Cyber Risks and Insurance Decision-Making",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Issues and Practice*, 43(2)
- U. 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1), "The Motor Vehicle Supply Chain:

  Effects of the Japanese Earthquake and Tsunami"
- Viscusi, W. K., Harrington, J. E., Sappington, D. E. M(2005),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Fifth Edition, The MIT Press World Economic Forum(2019),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18-2019

# 부록.

### 〈부록 표 1〉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보험료/매출액	1.000														
2. 부실리스크	0.121	1.000													
3. 자본잠식	0.049	0.561	1.000												
4. 완전자본잠식	0.022	0.562	0.689	1.000											
5. 이자보상불능	0.122	0.287	0.367	0.276	1.000										
6. 부채비율 2	0.043	0.249	0.368	0.306	0.396	1.000									
7. 마진율	0.197	0.114	0.040	0.017	-0.050	-0.046	1.000								
8. 평균법인세율	-0.077	-0.273	-0.357	-0.273	-0.340	-0.195	0.016	1.000							
9. 성장기회	0.032	0.029	0.001	-0.008	0.007	-0.026	0.026	-0.031	1.000						
10. 감가상각비비율	0.143	0.102	0.105	0.059	0.065	0.032	0.137	-0.048	0.024	1.000					
11. 인건비비율	0.092	0.014	0.008	0.006	-0.054	-0.041	0.072	0.046	0.007	0.302	1.000				
12. 유형자산비율	0.157	0.080	0.044	-0.025	0.193	0.111	0.067	-0.136	-0.011	0.027	-0.110	1.000			
13. 로그자산	-0.169	-0.111	-0.090	-0.054	-0.079	-0.105	0.041	0.128	-0.021	-0.152	-0.200	0.010	1.000		
14. 업력	-0.006	-0.076	-0.160	-0.108	-0.075	-0.235	-0.034	0.090	-0.019	-0.081	0.006	0.050	0.229	1.000	
15. GDP성장률	-0.015	-0.001	0.041	0.009	0.007	0.027	-0.003	0.077	-0.002	0.097	0.034	-0.025	-0.008	-0.054	1.000
16. 원달러절상률	-0.012	-0.002	0.004	-0.007	-0.032	-0.004	0.004	-0.006	0.002	0.014	0.003	-0.008	0.002	0.003	0.103

### 〈부록 그림 1〉「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보험·공제 이용에 대한 조사」설문조사서

####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보험공제 이용에 대한 조사 ID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보험.공제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수치화하여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오니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기업경영 전반을 파악하고 계시는 관련 책임자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태영, 조우철

※ 작성하신 설문조사서는 다음 연락처로 팩스 또는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문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이나리 차장(Tel. 02-3415-5176)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최지혜 선임(Tel. 02-3415-5124)

□ 회신처. FAX: 0505-342-5100 / Mail: nrlee@kric.com

주관기관 < ○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iri.or.kr/ :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 담당자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여의도동 35-4)

조 · 사기관

KRi 2 BEIOISIMAI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ic.com

● 담당자 : 사회여론조사본부 연구 2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허바허바빌딩 주소

### 컨택원 기록 및 확인

List ID		업체명				
대표자 성명			설립연도			년
산업분류	(KSIC코드	: )	제조업일 경우 중분류	·		
종사자 규모	① 10인 이상 29인 이하 ② 30	인 이상 99인 0	하 ③ 100인 이상	1 299인 이	하 ④ 3009	인 이상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정보 성명: 소속/직위:	휴대폰변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본 조사 진행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 조사에 참여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귀하께서 위에서 응답한 성명, 휴대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모바일 상품권'을 대행하는 제3자에게 발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인 정보는 '모바일 상품권' 발송 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동의시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귀하께서는 본 조사의 응답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용(전화,	① 동의함 (서명: )						
문자)으로 위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② 동의하지 않음						
※ 귀하께서는 향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수행하는 조	① 동의함 (서명: )						
사대상 선정 시, 위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②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 I. 기업 일반 현황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별	① 남성	성 ② 여성				
상장여부	① 코스피 ② 코	1넥스 ③ 코스닥	④ 비상장	대표자 연령		년생				
외부감사대상	① <b>예</b>	② 아니오		상시종사자수 (2018. 12. 31 기준)						
공장보유여부	① 소유 ②	임차 ③ 소	유 및 임차 병행	④ 공장 없음						
	201	6년	20	17년	20	18년				
자산		만원		만원		만원				
	201	6년	20	17년	20	18년				
자본		만원		만원		만원				
	201	6년	20	17년	20	18년				
부채		만원		만원		만원				
	201	6년	20	17년	20	18년				
매출액		만원		만원		만원				
	201	6년	20	17년	20	18년				
당기순이익		만원		만원		만원				
판매처벌 매출액 (2018년)	일반소비자 판매액	위탁기업 (모기업) 납품액	공공 및 정부 납품액	매출구성 (2018년)	국내판매액	수출액				
(합계 100%)	%	%	%	(한계 100%)	%	6 %				
주된 위탁기업 (모기업)유형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위탁기업(	모기업) 없음(전량 :	소비자 판매)					
협력거래 단계	① 1차 벤더	② 2차 벤더	③ 3차 벤더(	기상 ④ 모기	업 없음					

1. 귀사의 현재 자금사정은 어떠하십니까?	1.	귀사의	현재	자금사정은	어떠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어렵다 ② 대체로 어렵다

-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다 ⑤ 매우 좋다

### 2. 귀사의 전년 대비 경영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크게 악화되었다 ② 악화되었다

- ③ 변동 없다 ④ 호전되었다 ⑤ 크게 호전되었다

#### 3.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 2순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내수부진 ② 과당경쟁 ③ 환율불안 ④ 인건비상승 ⑤ 원자재확보 곤란 ⑥ 기술력 저하 ⑦ 주력산업 성장한계 ⑧ 신규사업 진출곤란 ⑨ 설비노후화 ⑩ 노사관계 불안 ⑪ 기업활동 규제과다 ② 자금조달 곤란 ③ 금융비용 과다 ④ 기타(\_\_\_\_\_\_

### ■ 용어 설명 ■

※ 리스크란 기업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	세부 항목	정의						
재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해 건물, 기계, 수용동산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관련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화재, 붕괴, 폭발, 화학물질유출, 테러, 차량사고 등으로 인해 건물, 기계, 수용동산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근로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근로자의 업무수행상의 과정에서 재해 및 질병이 발생할 리스크						
관련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업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망, 질병, 장애 등 건강과 관련한 리스크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초래할 리스크						
배상책임 관련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결합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초래할 리스크						
	환경오염 리스크	기업의 경제활동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초래 하거나 자연을 훼손할 리스크						
영업중단 관련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화재 등 사고로 인해 기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고정비 및 수익상실의 리스크						
무형자산	사이버 리스크	정보통신기술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정보파괴, 사생활침해, 기업평판 훼손, 재무적 손실 등의 리스크						
관련	지식재산권 리스크	당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금융	금리 리스크	이자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련	환율 리스크	환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						
	공급자 리스크	공급자 파산, 공급자의 재고 불충분, 외부공급 품질불량, 공급가격 인상 등 에 따른 리스크						
거래상대방 관련	구매자 리스크	구매자(기업)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경쟁사 리스크	경쟁사의 악탈적 가격경쟁, 경쟁 기술 및 상품 출현, 경쟁구도의 변화 등에 따른 리스크						

※ 리스크관리의 과정
 ③ 리스크의 발견 및 규명 → ② 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 → ③ 리스크관리 방법의 선택 → ④ 리스크행정

#### ※ 리스크관리의 방법

리스크	손실발생 가능성 방지	손실발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력 ex: 화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건축시부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자재 사용			
통제	손실규모 축소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사고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 ex: 화재로 인한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설치			
리스크 준비금 적립 손실발생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					
보유	보험자회사 설립	모회사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회사가 보험회사 설립			
리스크 전가	보험 및 공제	보험 및 공제에 가입			
리스크 수용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또는 영향도를 줄이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2					

## ш. 리스크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4. 귀사는 리스크관리라는	용어에 얼마나 익숙하십니	<i>ካ</i> ት?		
① 전혀 익숙하지 않다	② 약숙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ul><li>④ 약숙하다</li></ul>	③ 매우 약숙하다
5. 그렇다면, 귀사는 리스=	크관리라는 용어를 업무 중	얼마나 자주 시	용하십니까?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사용하는 팬이다	⑤ 매우 자주 사용한다
6. 귀사는 기업경영에서 리	스크관리가 얼마나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	<i>ነ</i> ም?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7. 귀사는 리스크관리 부족	으로 인해 손실이 증가하기	서나 이익이 감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	-  <i>ग</i>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귀사의 최고경영진은 리	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어느	=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및	별로 관심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 있는 편이다	사 ⑤ 매우 관심 있다
@ E 1 E B B 1 @ 1	== E0 8/E E-1-1 @	-0-1-1 0	-11-11- 20 ME C-1-	1 @ 41 EU M 1
9. 귀사의 최고경영진은 리	스크관리에 대한 문제를 일	얼마나 자주 논의	니하십니까?	
①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논의하지 않는 편이	다 ③ 보통	④ 대체로 논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자주 논의한다
	크관리 업무는 질적·양적 측			
	② 별로 체제		③ 보통 <sup>(</sup>	이다
④ 대체로 체계적이다	⑤ 매우 체계	<b>계적이다</b>		
11. 귀사의 리스크관리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1	0년 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크게 악화되었다 ②	대체로 악화되었다 ③ 변	·화 없다 ④	) 대체로 개선되었다	⑤ 매우 개선되었다
12. 향후 귀사가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것으로 예상하십	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Ⅲ. 리스크 측정 및 평가

13. 귀사의 기업활동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4. 그렇다면, 다음의 각 리스크가 귀사의 이윤이나 매출의 극대화 등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	3. 발생가	능성		문14. 영향도					
리스크유형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보통 이다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매우 작다	대체로 작다	보통 이다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1	2	3	4	(5)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1	2	3	4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1	2	(3)	4	(5)	1	2	3	4	(5)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1	2	3	4	(5)	1	2	3	4	(5)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환경오염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사이버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지식재산권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금리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환율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공급자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구매자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경쟁사 리스크	1	2	3	4	(5)	1	2	3	4	(5)	

<sup>\*</sup>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의 경우, 선택지에 제시된 유형 외 어떠한 배상책임 리스크가 있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15. 귀사는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문15. 고려수준		
리스크유형	전혀 고려하지 않음	별로 고려하지 않음	보통	자주 고려함	항상 고려함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1	2	3	4	(5)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1	2	3	4	(5)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환경오염 리스크	1	2	3	4	(5)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1	2	3	4	(5)
사이버 리스크	1	2	3	4	(5)
지식재산권 리스크	1	2	3	4	(5)
금리 리스크	1	2	3	4	(5)
환율 리스크	1	2	3	4	(5)
공급자 리스크	1	2	3	4	(5)
구매자 리스크	1	2	3	4	(5)
경쟁사 리스크	1	2	3	4	(5)

16. 귀사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잠재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신 경 취이 이스니까?

엄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6-1번으로	② 없다 <mark>☞ 문17번으로</mark>

16-1 (문16의 ①용답자만) 그렇다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몇 번 정도 겪으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17. 귀사는 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②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③ 보통 ④ 대체로 노력한다 ⑤ 매우 노력한다

18. 그렇다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귀사는 인지된 리스크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여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② 없다 📴 **문19번으로** ① 있다 🖙 분18-1번으로

18-1 (문18의 ①응답자만) 그렇다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몇 번 정도 겪으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IV. 리스크관리 방법

19. 귀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시설, 도구, 제도, 조직운영 등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② 별로 투자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투자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많이 투자하고 있다

20. 귀사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인원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명)

21. 귀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이는 영업으로 된다아고 있으십니까? (복구중입 기중) 리스크관리 기법									
	리스크	통제	리스크 보유	리스:	크전가	4.0				
리스크유형	손실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손실 발생에 대비해 준비금 적립	보험 가입	공제 가입	아무 노력도 취하지 않음	•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6	7	()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6	7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1	2	3	4	(5)	6	7	()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1	2	3	4	(5)	6	7	()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6	7	()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6	7	()		
환경오염 리스크	1	2	3	4	(5)	6	7	()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6	7	()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1	2	3	4	(5)	6	7	()		
사이버 리스크	1	2	3	4	(5)	6	7	()		
지식재산권 리스크	1	2	3	4	(5)	6	7	()		
금리 리스크	1	2	3	4	(5)	6	7	()		
환율 리스크	1	2	3	4	(5)	6	7	()		
공급자 리스크	1	2	3	4	(5)	6	7	()		
구매자 리스크	1	2	3	4	(5)	6	7	()		
경쟁사 리스크	1	2	3	4	(5)	6	7	()		

### 22. 귀사의 리스크관리 시 다음 중 가장 관리가 어려운 <u>두 가지</u>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②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③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④ 근로자의 업무의 상해 및 질병 ⑤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⑤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③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⑩ 사이버 리스크 ① 지식재산권 리스크 ② 금리 리스크 ① 구매자 리스크		1순위 2순위
	④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⑤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⑦ 환경오염 리스크 ⑧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 ⑩ 사이버 리스크 ⑪ 지식재산권 리스크	⑥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⑨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⑫ 금리 리스크

- ④ 근로자:
- ⑦ 환경오염 리스크
- ⑩ 사이버 리스크
- (3) 환율 리스크
- ⑥ 경쟁사 리스크
- ① 지식재산권 리스크 ② 공급자 리스크

#### 23. 그럼, 귀사의 리스크관리 시 다음 중 가장 관리가 쉬운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④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⑦ 환경오염 리스크 ⑩ 사이버 리스크 ⑬ 환율 리스크 ⑯ 경쟁사 리스크	②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⑤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⑧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 ⑪ 지식재산권 리스크 ⑭ 공급자 리스크	⑥ 생산들	

#### V. 보험 및 공제에 대한 인식

- 24. 귀사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써 보험·공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귀사의 최고경영진은 긍정적입니까? 혹은 부정적 입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 25. 귀사는 보험 및 공제 가입이 다음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 및 공제의 적합성					
리스크유형	매우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편이다	보통이다	적합한 편이다	매우 적합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1	2	3	4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1	2	3	4	(5)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1	2	3	4	(5)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환경오염 리스크	1	2	3	4	(5)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	1	2	3	4	(5)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1	2	3	4	(5)	
사이버 리스크	1	2	3	4	(5)	
지식재산권 리스크	1	2	3	4	(5)	
금리 리스크	1	2	3	<b>4</b>	(5)	
환율 리스크	1	(2)	3	4	(5)	
공급자 리스크	1	2	3	4	(5)	
구매자 리스크	1	2	3	4	(5)	
경쟁사 리스크	1	2	3	4	(5)	

- 26.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보험-공제상품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부족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 26-1. (문26의 ①, ②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품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리스크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 ② 인적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 ③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 ④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⑤ 영업배상책임 리스크
- ⑥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 ⑦ 환경오염 리스크
- ⑧ 기타 배상책임 리스크
- ⑨ 영업중단(기업휴지) 리스크

- ⑩ 사이버 리스크
- ⑪ 지식재산권 리스크
- ② 금리 리스크

- ① 환율 리스크
- Ø 공급자 리스크
- ⑥ 구매자 리스크

- ⑥ 경쟁사 리스크
- ⑪ 기타 리스크(
- \* 문26-1에서 ⑪ 기타 리스크에 대비하는 상품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신 경우, 제시된 유형 외 어떠한 리스크를 대비할 상품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 VI. 보험 및 공제 이용실태

27.	귀사는 보험 및 공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	인원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u>B)</u>	② 없다
28.	귀사는 보험-공제상품 -	구매 결정 시 상품내용	에 대해 어느 정도 분석하는 편이십니까?
1	전혀 분석하지 않는다	② 분석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분석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자세히 분석한다
29.	그럼, 귀사의 보험-공제	상품 구매 결정 시 상	품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분석하는 편이십니까?
(1	)전혀 분석하지 않는다	② 분석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분석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자세히 분석한다
30.	귀사는 리스크관리 수단	단으로 보험이나 공제를	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으십니까?
(1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학	한만 이용	② 주요리스크에 대해서만 이용
(3	대부분의 리스크에 대형	해 이용	④ 모든 리스크에 대해 이용

- 31. 귀사는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보험이나 공제를 이용하고 있으십니까?
  - ① 있다 <mark>☞ 분32번으로</mark> ② 없다 <mark>☞ 분34번으로</mark>

32. (문31의 ①응답자만) 귀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상품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각 보험·공제상품별 연납입 보험·공 제료를 말씀해 주시고,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가입한 보험·공제회사(보기1), 가입경로(보기2), 가입방법(보기3), 그리 고 인수방법(보기4)을 선택해주십시오.

표 단구하십도기위을 전국에구입시조.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문32의	① 응답지	마만	
	보험·공제상품 종류	문32. 가입여부	연납입보험· 공제료	보함 공제회사 (보기1)	가입경로 (보기2)	가입방법 (보기3)	인수방법 (보기4)
	재물(태풍, 화재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재산 종합 보험	기계위험(고장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오험	배상책임	<ol> <li>가입</li> <li>비가입</li> </ol>	만원				
	영업중단(기업휴지)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화재보험(공	공제)	<ol> <li>가입</li> <li>비가입</li> </ol>	만원				
해상보험(공	공제): 선박, 적하, P&I	<ol> <li>가입</li> <li>비가입</li> </ol>	만원				
자동차(택/	시·화물차·버스 포함) 보험(공제)	<ol> <li>가입</li> <li>비가입</li> </ol>	만원				
(산재보험 질병 보험(	이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공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보험(공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영업배상책임	<ol> <li>가입</li> <li>비가입</li> </ol>	만원				
	생산물배상책임	<ol> <li>가입</li> <li>비가입</li> </ol>	만원				
배상 책임 보험 (공제)	전문직업인(임원)배상책임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공제)	재난배상책임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기타 배상책임 (상품이름: <u>)</u>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영업중단(2	기업휴지) 보험(공제)	<ol> <li>가입</li> <li>비가입</li> </ol>	만원				
보증보험(공	용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제품회수비	용보험(공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기술보험(	공제): 건설공사, 토목공사, 기계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사이버보험	(공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지식재산권	보험(공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수출입 관	련 보험 및 보증(공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매출채권보	'험(공제)	① 가입 ② 비가입	만원				
	가 1년 동안 지출하는 보험료(공제 상품 금액의 총 합계를 기입해 참공제상품 종료에서 기타 배상				71714	<b>*</b>	만원

\*문32의 보험·공제상품 종류에서 '기타 배상책임' 보험·공제를 가입하신 경우, 보험상품의 이름을 기재해 주십시오.

E 25-4 T		기막 배경국는 프림중세를 가입어	1건 경구, 포함경품의 의	음을 기세에 구입시고.
		(보기1) 보험 및 공	제회사	
민영 보험 회사	<ol> <li>다케이손해보험</li> <li>서울보증</li> <li>홍국화재</li> <li>KB손해보험</li> </ol>	<ol> <li>롯데손해보험</li> <li>에이스아메리칸화재</li> <li>AIG손해보험</li> <li>NH농협손해보험</li> </ol>	<ul> <li>③ 메리츠화재</li> <li>⑦ 한화손해보험</li> <li>④ AXA손해보험</li> </ul>	<ul><li>④ 삼성화재</li><li>⑧ 현대해상</li><li>② DB손해보험</li></ul>
공제 회사	<ul><li>(5) 건설공제조합</li><li>(9) 우체국</li><li>(2) 한국해운조합</li></ul>	⊗ 새마을금고 ② 전기공사공제조합 ② 기타 공제조합-공제회-협	① 수협 ② 전문건설공제조합 회(	® 신협 ② 중소기업중앙회 )
	⊘ 신용보증기금	❷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기타(	)
		(보기2) 가입경	로	
① 보험회 ④ 보험중 ⑦ 기타(_	사 임직원 >개사	<ul><li>② 공제조합(공제회) 임직원</li><li>③ 보험대리점</li></ul>	<ul><li>③ 한국무역보험공시</li><li>⑥ 보험설계사</li></ul>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보기3) 가입빙	쎕	
① 입찰경	쟁계약	② 수의계약		
		(보기4) 인수빙	뻡	
① 2개 이	상의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인수	② 단독인수	

33. (문32의 ①응답자만) 귀사가 보험·공제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3-1. (문32의 ①응답자만) 귀사가 가입하신 보험(공제)이 의무보험(공제)에 해당 되는지요? 33-2. (문32의 ①응답자만) 귀사가 가입하신 보험(공제)의 보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지요?

33-2. (문32의 ① 8	등납자만) 귀사가 가입하신 모염(공세)의	모염료들 성무	빛 시사제가 시원해	수는지요?
	보험-공제상품 종류	33. 가입이유 (보기5)	33-1. 의무보험(공제) 여부	33-2.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공제)료 지원여부
	재물(태풍, 화재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재산 종합	기계위험(고장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보험	배상책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영업중단(기업휴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화재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해상보험(공제): 선택	박, 적하, P&I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자동차(택시·화물차·	버스 포함) 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산재보험 이외) 근	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근로자의 업무의 성	하 및 질병 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영업배상책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배상	생산물배상책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책임	전문직업인(임원)배상책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공제)	재난배상책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기타 배상책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영업중단(기업휴지)	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보증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제품회수비용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기술보험(공제): 건설공사, 토목공사, 기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사이버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지식재산권보험(공재	지식재산권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수출입 관련 보험	및 보증(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매출채권보험(공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보기5) 가입이유

- ①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 ③ 채권자 또는 은행이 요구해서
- ⑤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⑥ 마케팅 차원에서
- ⑦ 법에서 가입을 강제하기 때문에(의무보험)
- ⑨ 정부에서 보험(공제)료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⑩ 기타(
- ② 보험료에 대해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 ④ 사고발생시 사고조사나 손해사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 ⑧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 34. (문32의 ② 응답자만) 귀사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6을 참조해 주세요.

	보험-공제상품 종류	비가입이유 (보기6)		
	재물(태풍, 화재 등)			
재산 종합	기계위험(고장 등)			
모임 보험	배상책임			
	영업중단(기업휴지)			
화재보험(공제)				
해상보험(공제): 선박, 적하, P&I				
자동차(택시·화물차·버스 포함) 보험(	공제)			
(산재보험 이외) 근로자의 업무상 자	해 및 질병 보험(공제)			
근로자의 업무외 상해 및 질병 보험	(공제)			
	영업배상책임			
배상	생산물배상책임			
책임	전문직업인(임원)배상책임			
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			
(공제)	재난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			
영업중단(기업휴지) 보험(공제)				
보증보험(공제)				
제품회수비용보험(공제)				
기술보험(공제): 건설공사, 토목공사, 기계				
사이버보험(공제)				
지식재산권보험(공제)				
수출입 관련 보험 및 보증(공제)				
매출채권보험(공제)				

#### (보기6) 비가입이유

(3)	소시비	ᆘ쌔ᄀ	나노선이	낮아서
w	~ = =	20 /	000	ㅈ이시

- ②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규모가 작아서
- ③ 보험(공제)료가 높아서
- ④ 보험(공제)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해서
- ⑤ 보험(공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 ⑥ 당사에 맞는 약관 및 상품구성이 없어서
- ⑦ 보험(공제)에 가입하더라도 적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서
- ⑧ 기타(\_\_\_\_\_
- 35. 귀사가 보험-공제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 2순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약관 및 보험상품 구성	② 낮은 보험료(공제료)	③ 보험·공제회사의 재무건전성
④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사정	⑤ 보험·공제회사와의 친밀도	⑥ 손실방지프로그램 등 각종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
⑦ 기타(		

36. 귀사는 가입한 보험·공제상품을 통해 지난 5년(2015~2019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② 없다 < 문37번으로</p>

36-1. (문36의 ①용답자만) 그렇다면, 귀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상품을 통해 지난 5년(2015~2019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은 모두 몇 건 정도 되십니까? 또한, 실제 수령한 보험(공제)금은 얼마 정도 되시며, 수령한그 보험(공제)금은 실메 발생한 손해액의 몇 % 정도 되는지요? 또한, 보기(7)에서 어느 보상기관이 보험(공제)금을 지급하였는지요?

	보험-공제상품 종류	36-1-1. 수령건수	36-1-2. 수령한 보험(공제)금	36-1-3. 발생손해액 대비 보험(공제)금	36-1- <i>A</i> 보상기관(보기7 (복수응답)
	재물(태풍, 화재 등)	()건	만원	%	, ,
재산 종합 보험	기계위험(고장 등)	()건	만원	%	, ,
	배상책임	()건	만원	%	, ,
	영업중단(기업휴지)	()건	만원	%	, ,
화재보험(공제	)	()건	만원	%	, ,
해상보험(공제	): 선박, 적하, P&I	()건	만원	%	, ,
자동차(택시·호	├물차·버스 포함) 보험(공제)	()건	만원	%	, ,
(산재보험 이외 보험(공제)	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건	만원	%	, ,
근로자의 업무	·외 상해 및 질병 보험(공제)	()건	만원	%	, ,
	영업배상책임	()건	만원	%	, ,
배상	생산물배상책임	()건	만원	%	, ,
책임	전문직업인(임원)배상책임	()건	만원	%	, ,
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	()건	만원	%	, ,
(공제)	재난배상책임	()건	만원	%	, ,
	기타 배상책임()	()건	만원	%	
영업중단(기업	휴지) 보험(공제)	()건	만원	%	, ,
보증보험(공제	)	()건	만원	%	, ,
제품회수비용.	제품회수비용보험(공제)		만원	%	, ,
기술보험(공제): 건설공사, 토목공사, 기계		()건	만원	%	, ,
사이버보험(공	사이버보험(공제)		만원	%	, ,
지식재산권보험(공제)		()건	만원	%	, ,
수출입 관련 .	보험 및 보증(공제)	()건	만원	%	, ,
매출채권보험(	(공제)	()건	만원	%	, ,

\*문36-1의 보험공제상품 종류에서 '기타 배상책임' 보험공제 지급 경험이 있으신 경우, 보험상품의 이름을 기재해 주십시오.

	(보기7) 보상기관						
민영 보험 회사	<ol> <li>더케이손해보험</li> <li>서울보증</li> <li>흥국화재</li> <li>KB손해보험</li> </ol>	② 롯데손해보험       ③ 메리츠화재         ⑥ 에이스아메리칸화재       ⑦ 한화손해보험         ⑩ AIG손해보험       ⑪ AXA손해보험         ⑭ NH농협손해보험	<ul><li>4 삼성화재</li><li>8 현대해상</li><li>2 DB손해보험</li></ul>				
공제 회사	<ul><li>⑤ 건설공제조합</li><li>⑥ 우체국</li><li>② 한국해운조합</li></ul>	<ul><li>⊗ 새마을금고 ⑰ 수협</li><li>② 전기공사공제조합 ② 전문건설공제조합</li><li>② 기타 공제조합·공제화·협회(</li></ul>	® 신협 ∅ 중소기업중앙회 )				
	②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기타(	)					

### 37. 만약 귀사께서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귀사의 경영성과는 지금과 비교해서 어떠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① 경영위기 직면

② 매우 악화

③ 다소 악화

④ 별 변화 없음

⑤ 오히려 개선

⑥ 최근 5년 동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적이 없음

#### 38. 귀사의 보험거래와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보험-공제회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문32의 ①용답자만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1	2	3	4	(5)
	상품내용	1	2	3	4	(5)
	상품가격	1	(2)	(3)	4	(5)
	거래신뢰도	1	2	3	4	(5)
보상서비스	☞ 문36의 ①용답자만	1	2	3	4	(5)

#### 39. 귀사는 향후 보험 및 공제 가입 범위 및 대상을 줄이거나 늘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39-1. 그렇다면, 줄이려는 이유(보기 8번) 혹은 늘리려는 이유(보기 9번)를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9. 향후 보험공제 가입 범위 및 대상			39-1. 이유		
	보험-공제상품 종류	무보험 유지· 전환한다	줄인다	현상태 유지	놀린다		(B, 9) 답기능)
	재물(태풍, 화재 등)	1	2	3	4		,
재산 종합	기계위험(고장 등)	1	2	3	4		,
보험	배상책임	1	2	3	4	,	,
	영업중단(기업휴지)	1	2	3	4		,
화재보험(공	제)	1	2	3	4	,	,
해상보험(공	제): 선박, 적하, P&I	1	2	3	4	,	,
자동차(택시	화물차-버스 포함) 보험(공제)	1	2	3	4	,	,
(산재보험 이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보험(공제)		1	2	3	4	,	,
근로자의 업	무외 상해 및 질병 보험(공제)	1	2	3	4	,	,
	영업배상책임	1	2	3	4	,	,
배상	생산물배상책임	1	2	3	4		,
책임	전문직업인(임원)배상책임	1	2	3	4		,
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	1	2	3	4		,
(공제)	재난배상책임	1	2	3	4	,	,
	기타 배상책임	1	2	3	4	,	,
영업중단(기	업휴지) 보험(공제)	1	2	3	4		,
보증보험(공	제)	1	2	3	4	,	,
제품회수비용보험(공제)		1	2	3	4	,	,
기술보험(공제): 건설공사, 토목공사, 기계		1	2	3	4		,
사이버보험(공제)		1	2	3	4		,
지식재산권보험(공제)		1	2	3	4		,
수출입 관련 보험 및 보증(공제)		1	2	3	4	,	,
매출채권보험	범(공제)	1	2	3	4	,	,

## 문39의 ①② 용답자만 » (보기8) 향후 보험 및 공제 가입 범위 및 대상을 줄이려는 이유 ① 관련 리스크가 감소하여서 ② 관련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③ 보험료(공제료)가 부담되어서 ④ 보험공제 가입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⑤ 채권자 또는 은행이 요구해서 ⑥ 기타( \*⑥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제시된 선택지 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문39의 ④ 응답자만 » (보기9) 향후 보험 및 공제 가입 범위 및 대상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 ⑤ 관련 리스크가 커져서 ◎ 보험료(공제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⑤ 채권자 또는 은행이 요구해서 ☼ 재무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 보험·공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 관련 법규가 변하여서 😡 기타(\_ \* 🗇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제시된 선택지 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40. 귀사는 보험·공제 계약 체결 시 재보험사를 특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② 없다 있다 41. 귀사는 보험·공제 계약 체결 시 재보험사의 자격요건(신용등급 등)을 특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② 없다 42. 보험 및 공제와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5	보고서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
	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신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 · 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혜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 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헌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구) \_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 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 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 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화·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 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 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유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 동향부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5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⑩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
	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5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
	정승연 2016.4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

## ■ 조사보고서\_\_

김동겸 2016.5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

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2009-1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2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2009-6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화·이민화· 2009-8 윤건용·최 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은·김세환·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2010-1 최형선·최 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워·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2010-6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2010-7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2011-1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2011-2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2011-3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은·변혜원·이승준· 김경화·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 이상우·최 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
	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
	황진태 2013.12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
	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
	김혜란 2015.2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
	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상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 이슈보고서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유성휴 2020.1

###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7 호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 영문발간물

제 12호

제 7 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1호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4호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6호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0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O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
	전성주·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I ):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Pi$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
	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
	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sup>※ 2008</sup>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300,000원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li>연구보고서</li> <li>기타보고서</li> <li>연속간행물</li> <li>보험금융연구</li> <li>보험동향</li> <li>KIRI 포커스 모음집</li> <li>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ul> <li>연구보고서</li> <li>기타보고서</li> <li>연속간행물</li> <li>보험금융연구</li> <li>보험동향</li> <li>KIRI 포커스 모음집</li> <li>KIRI 이슈 모음집</li> <li>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ul> <li>연구보고서</li> <li>기타보고서</li> <li>연속간행물</li> <li>보험금융연구</li> <li>보험동향</li> <li>KIRI 포커스 모음집</li> <li>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02) 3775 - 9113 팩스: (02) 3775 - 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 저 자 약 력

### 송윤아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knuckleball@kiri.or.kr)

### 한성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cindysungwon@kiri.or.kr)

### 연구보고서 2020-1

##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24-2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